

1998年度  
國政監查

教育委員會會議錄 (附錄)

國會事務處

被監查機關 教育部

日時 1998年10月23日(金)  
場所 教育部會議室

【서면질의·답변서】

(답변서)

○教育部長官 李海瓚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부분)

(威鍾漢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학교운영위원회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금이 차등지급된 사유와 자금의 차등지원을 통해 사립학교의 학운위 설치를 초법적으로 강행하는 의도는?

(답 변)

- 방과후 교육활동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국가 교육과정 이외에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적성과 소질을 계발시켜 주기 위한 활동임
- 방과후 교육활동의 이러한 목적과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는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유용한 강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임
-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 안된 학교의 경우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은 물론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임
-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과 참여의 교육체제 구축을 통한 단위학교의 교육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치기구로서 사학의 경우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2)

학교발전기금제도

- (1) 발전기금으로 인한 지역간 격차에 대한 대책
- (2)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 추가적 부담에 대한 견해
- (3)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
- (4)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대책
- (5) 학교장 교사의 능력이 발전기금조성에 따라 평가될 가능성

(답 변)

○발전기금으로 인한 지역간 격차에 대한 대책

－학교발전기금이 학부모에 대하여 수업료 이외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운영지침을 통하여 학부모로부터 발전기금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어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부모로부터는 적극적인 모금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학부모로부터 자발적인 금품을 조성할 경우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각출금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각출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각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단위학교의 자치기구로 자리매김하여 학교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제도화된 것입니다.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도 있을 것이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학교의 서무책임자 등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위한 연수를 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대책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없어 종래의 「각급학교기부금품관리요령」에 따라 자발적인 기부금품의 접수만 가능하며 적극적인 기금의 조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장 교사의 능력이 발전기금조성에 따라 평가될 가능성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집행의 주체는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기금운용계획은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공개되고 집행결과도 공개되어 교사들이 동원되는 일은 억제될 것입니다. 또한 발전기금의 조성 결과를 학교장 교사 평가와 연계시키는 일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학교발전기금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학교 등 교육관계자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염려해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15일부터 시행된 학교발전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보완 문제는 어느 정도의 시행과정을 살펴본 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3)

교육재정 관련

○조세개편으로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바, 교육세 폐지에 대한 장관의 대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 변)

○지방교육재정중 6.2조원인 약 32.5%를 차지하는

교육세는 목적세란 이유 하나로 폐지할 경우에 지방교육자치가 위협받게 되고, 교원의 보수마저 지급하지 못할 위기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대책없이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운영비의 대폭 감축과 교육개혁의 추진이 불가하며,  
－신도시지역 등의 학교 미신설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현재 조세체계 개편으로 교육세의 폐지가 논의되고 있으나,

－우리 부에서는 교육세의 폐지를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하거나 국세의 일부세목을 교육양여금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99년이후에도 시·도세 2.6% 해당액이 계속 전입되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 고등학교까지 급식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도 개정하였고,  
－일반회계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입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자구노력 강화를 위해 기구개편·인원감축, 사업비 및 시설비 삭감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의 4)

교원정년단축 관련

○교원정년 단축 문제는 일률적인 단축보다는 명예퇴직 활성화와 엄정하고 객관적인 교원평가 제도의 개발과 현직연수 강화를 통하여 교직의 전문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적격 교원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답 변)

○최근 국가적 경제위기에 처하여 범 정부적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교원 정년단축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제도의 개선, 수습교사제의 도입, 현직연수 강화 등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교사 문제 개선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의 5)

문화의 세기에 대비한 전통문화 교육실태

- (1) 교육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나 의미는 무엇인가?
- (2) 현재 시행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별 전통문화 교육 시간과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
- (3) 전통문화 교육에서 유형문화는 현장 중심으로, 무형문화는 체험중심으로 교육해야 효과적일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복안은 무엇인가?
- (4) 일본의 청소년에 대한 패권주의적 전통문화 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교육 체계 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답 변)

○ 우리의 전통문화란 오래 전부터 조상 대대로 전래되어 오고있는 우리의 윤리관, 예술, 사상, 역사, 언어, 풍속 등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총체적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민족 문화를 의미함.

○ 전통문화를 독립교과로 편성하여 지도하고 있지는 않으나, 범교과적 측면에서 전교과에 반영, 전통문화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 교과는 아래와 같음.

<u>학교별</u>	<u>관련 교과목</u>
------------	---------------

초등학교	도덕, 국어, 사회, 즐거운 생활, 체육, 음악, 미술
중 학교	도덕, 국어, 한문, 사회, 음악, 미술, 가정, 영어
고등학교	윤리, 국어(상), 한문, 사회(공통사회, 사회·문화, 국사 : 상·하), 음악, 미술, 실업, 가정(가사), 외국어(공통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 현재 각급 학교별로 특별 활동과 재량 활동 시간을 통하여 전통 문화에 대한 현장학습과 체험 활동을 실시하도록 운영지침에 명시하여 적극 권장하고 있음.

역사 유적지, 박물관등을 견학하여 학생들이 직접 보고 확인케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유산과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줄 수 있으며, 전통음악의 공연 및 연주회등에 참석하는 등 체험을 통한 전통 예술의 감상은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길러 주는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도 적극 권장 할 방침임.

○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 제시되어 있음.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우리 교육의 당면 과제는 정체성을 갖춘 경쟁력있는 인간을 육성할 수 있는 국적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임. 이의 실현을 위하여 범교과 차원에서 교육 목표, 교육과정 운영지침 및 교과서 편찬 지침에 우리 전통 문화의 애호사상을 반영하도록 하여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족의 주체성 확립과 문화 시민의 긍지를 높이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질의 5)

문화의 세기에 대비한 전통문화 교육 실태

- (5) 일본문화의 개방에 따른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파괴에 대한 교육부의 보호대책은?
- (6) ‘한·일 문화교류 심의위원회’에 교육계의 참여 비중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이는 대책은?

(답 변)

○ 문화관광부의 일본대중문화에 대한 단계적 개방 방침 발표로 즉시 개방 부문으로 선정된 비디오, 영화, 일본어판 만화/만화잡지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부는 우선 개방후 호기심에 의한 탐닉현상의 일반화의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 학생들이 외래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 수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 관련 교과, 혼화, EBS/edunet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에 대한 정보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 교원연수의 논의 주제로 포함하는 등 교원 및 학부모에 대한 연수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 자율적 정화활동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만화방 등을 정비하고

- 학생회 주관으로 유해매체물 접하지 않기 등 토론활동을 활성화하며

-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주관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해 나갈 것임(※'98.7 현재 651교 참여)

○ ‘한·일문화교류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육계 인사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질의 6)

지식산업 정보산업시대에 대비한 정보화교육의 문제점

- (1) 각급학교 PC 보급률이 학생 16.6명당 1대에 불과하고, 그나마 실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컴퓨터 활용예산의 부족으로 자연노후화로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한 데 대한 장관의 견해는?
- (2) 수량위주의 하드웨어의 보급도 문제지만, 프로그램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보급 및 활용에 대한 대책은?
- (3) 정보화교육을 위한 컴퓨터 교사 연수에 대한 대책은?

(답 변)

1)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대비한 초·중등학교 컴퓨터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 컴퓨터 관리 강화, 소프트웨어 보급 및 교육정보화 연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신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함
- 우리 부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정보화 하드웨어기반을 구축하여 21세기 정보화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생 및 교원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 '97~2000까지 전국 초·중등학교(실업계는 별도 추진)에 1교당 2학생실습실(36학급미만교는 1실)용 PC 433,500대를 보급
  - '97~2002까지 1교원 1PC를 보급
  - '97~2002까지 전국 초·중등학교 일반 학급 200,000개 교실에 PC, 영상장치, VCR, 실물화상기 등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단선진화 사업을 추진
  - '97~2002까지 전국 모든 초·중등학교에 인터넷을 연동한 학내 전산망(LAN)을 구축함으로써 실용적인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컴퓨터 보급 완료 후에는 노후화된 컴퓨터 등 교육정보화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 및 장비유지보수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음

2)

- 교육용 S/W개발·보급을 '88년부터 꾸준히 추진, '97년까지 공공부문(교원공모전, 교육청,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에서 총 2,550여종을 개발하여 CD, 에듀넷을 통해 보급하고 있음

- 올해에는 공공부문의 S/W를 총 180여편 증편하여 보급할 예정이며, '99년 이후에는 매년 120여편씩 증편하여 보급할 예정임. 특히 교사가 직접 제작하여 실제 수업이나 교육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현장감 있는 S/W 발굴을 확대하기 위하여 '98년 교원 대상 「교육용 S/W 공모전」의 공모분과와 공모편수를 대폭 확대하였고,

- 또한 민간개발 S/W 보급·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모든 초·중·고교에 학교평균 100여만원의 구입비를 지원하고, 전국 6개지역에서 S/W전시회 및 활용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매년 10%씩 예산을 증액 지원할 예정임

- 이와 함께 점차적으로는 직접 수업을 하는 교원의 자체 제작S/W비율을 높이기 위해 교원 정보화 연수를 강화하고 있음

3)

- 우리 부는 교원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우수해야 정보화교육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교원연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효율적인 연수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 교원 PC활용을 위한 교원정보화 연수는 '88년부터 '97년까지 기본소양과정 311,510명, 개발요원과정 4,803명, 장학요원과정 2,543명, 국외연수 425명 등 각종 연수를 실시해 왔음

- 구체적 목표수준을 보면, 교원 정보화연수 단계를 1~3단계로 나누어 1교원 1PC 보급이 79.1% 완료되는 '99년까지 모든 교원들이 교단선진화 장비 등 컴퓨터 조작능력을 확보하는 1단계 수준까지 끌어 올리고,

- 교원의 PC 보급률이 100% 완료되는 2002년부터는 대부분의 교원들이 저작도구 등을 활용하여 교단선진화 장비용 교육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3단계 수준의 정보화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이며,

- 이를 위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전체 교원수의 25% 수준에 해당하는 85,000명의 교원에 대한 정보화연수를 실시중에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연수비는 매년 지방비로 충당하여 왔으나, '99년도에 처음으로 국고예산 1,907백만원을 증액 확보하여 학교별 정보화 전문요원을 양성하는데 지원하여 학교에서의 자체적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 컴퓨터 활용능력 활성화에 노력할 방침임



(질의 7)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성급히 추진하기 보다는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살리면서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에 충실하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 변)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주민통제의 원리를 강화하고, 사회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부응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하여 '98.8.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조창현 한양대 지방자치행정대학원장)에 연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98.10.15.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날 발표된 안에 의하면,

- 지방교육자치를 기초단위로 확대하고
- 시·도에서는 일반자치와의 연계를 통한 일반자치로부터의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지방자치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합의제집행기관”으로 하여 의결기관을 지방의회로 일원화하고, “일반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동 위원회에서 공청회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결과를 제출하여 오면,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주민통제의 원리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의 8)

청소년 주변환경 정화대책

(답 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주변환경”의 문제점과 정화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크게 공감하는 바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주변환경”의 통제와 관련된 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 「청소년기본법(문화관광부 소관)」에 의하여,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청소년보호법(청소년보호위원회 소관)」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미성년자보호법(경찰청 소관)」에 의하여, 미성년자의 흡연·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보호·선도 육성을 위하여, 경찰서장은 유흥가 및 율락 행위 우려지역을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 행정자치부는 '97년1월 전국 시·도부시장·부지사회의를 열고 행정지침을 시달, 시·군·구별로 학교폭력 발생빈도가 높은 우범지역을 “폭력 없는 안전지역(Blue-Zone)”으로 지정('97년말 현재 1,993개소), 동 지역내 약국·문방구·수퍼마켓 등을 ‘청소년지킴이’로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비행청소년의 선도 및 위협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동행귀가 등)하고,

- 「학교보건법(교육부 소관)」에서는, 전국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2만여개의 각급학교 주변(학교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미터이내)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영향을 주는 공해 및 혐오·위험시설, 유흥·오락·풍속시설 등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여 자라나는 2세 국민의 교육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의 주변환경은 일류병과 소비병·환락병에 오염되어, 범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학교와 사회 환경 전반에 대한 정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각종 규제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흥업소 영업시간제한 해제」 및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허용」 방침 등으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어려움이 많으며,

- 우리 부에서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해업소에 대한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의 실질적인 단속권한 미비, 유해업소측의 생존권 및 사유재산 보호차원의 보상요구 등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이전·폐쇄 정비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 한편,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청소년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중앙점검단」을 설치(검사를 단장으로 관계부처 공무원 10여명으로 구성 : '98.7월부터 가동)·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물리적 환경을 합리적으로 통제·관리하기 위하여 “유해업소 블록화”를 추진하겠다는 국정감사 보고('98.10.27자 경향신문 보도 : 덧붙임 참조)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연대하는 “청소년 주변환경 정화위원회” 설치에 대한 견해는, 청소년 관련 부처별로 다양한 감시기구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보다는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교육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정책의 조정 등 효율성 면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유해환경 정화 대책으로, 정화구역 관련 위반자에 대한 벌칙중 벌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98.4.29, 법률개정안 국회제출, 계류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및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 운영,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실시, 초·중·고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교외 학생생활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9)

교육계의 사기저하문제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사기진작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지?

(답 변)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이미 '91년에 지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과 국무총리 지시사항인 교원예우에 관한지침에 따라 교원에 대한 예우, 교원보수의 우대, 교원의 신분 보장 등의 입법취지 구현에 계

속 노력하겠습니다.

-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는 국가경제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교원에게만 '98년도 교직수당을 월 2만원 인상하였으며, 앞으로 교원의 처우개선은 국가경제 형편상 획기적 개선은 어려운 실정이나 업무량과 업무성과에 따른 보수체제 개편으로 실질적인 교원처우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의 활용 및 각종 불필요한 공문서 유통의 억제, 교무실 사무보조원 배치 등으로 교원의 잡무를 경감시키며, 교원의 교사연구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충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질의 10)

지방교육조직 구조조정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조조정은 지역여건과 실정을 반영한 교육현장 지원기능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전문직을 증원하고 보임부서를 확대하는 대신 불필요한 기능의 축소조정, 일반직 공무원의 감축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추진내용 및 경과를 말씀드리면

- 지방교육자치제의 활성화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정원제 및 기구정수제를 도입하여 하부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시·도교육청의 기구 및 정원을 감축코자 하며
- 지난 '98.7.29 시·도교육청에 업무추진지침을 통보하였으며, 조직개편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98.10.16 공포한 바 있으며
- 앞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조례와 규칙 등을 제정한 후 기구 개편 및 인력 감축 등을 '98.12월 말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감축계획을 말씀드리면

- 인원 감축은 감축전 총정원 69,881명의 9.4%인 6,570명을 감축할 계획이며
- 기구 감축은 16개 시·도교육청 본청의 경우 총 50국/실 217과/담당관중 21.3%인 16국/실 41과/담당관을 감축하고, 지역교육청은 총 532과중 3.8%인 20과를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당해 지역여건과 실정을 반영한 교육현장 지원기능 강화, 불필요한 기능

축소조정 등을 감안하여 자체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기구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원 감축계획도 교육전문직 감축비율(△9.1%) 이 일반직 등 전체 감축비율(△9.4%)보다 적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시·도교육청의 구조조정이 그 동안 교육청별로 추진해 온 조직진단에 더하여 기구/인력 감축, 기능 재편 및 인력관리 개선방안 등 여러

가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지난 '98.9.12 충남대학교에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모여 “지방교육행정체제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도교육청 구조조정과 더불어 필요한 지원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 및 인식 제고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인원 감축계획

구 분	감축전정원	감축인원	감축후정원	감 축 륜(%)
일 반 직 · 기 타	65,825	△6,201	59,624	△9.4%
교 육 전 문 직	4,056	△369	3,687	△9.1%
합 계	69,881	△6,570	63,311	△9.4%

※기구 감축계획

-시·도교육청(16) : 16국/실 41과/담당관 감축 (21.3%)

\* 총 50국/실 217과/담당관 ⇒ 34국/실 176과/담당관

-지역(시·군·구)교육청(180) : 20과 감축 (3.8%)

\* 총 532과 ⇒ 512과(국은 감축없음 : 72국)

(질의 11)

교장임기제 폐지

○교장임기제의 폐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입장은 무엇이며 대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교장임기제는 교직사회의 신진대사 촉진을 위해 '9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교장임기제에 대하여는 그간 ①대부분의 교장이 중임되는 등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②교장의 고령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교장의 고령화 문제는 정년이 조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지만,

-임기제가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능한 교장이 중임될 수 있도록 중임심사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부에서는 임기제의 폐지보다는 새로운 교장평가방법의 도입을 통한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95.8월 1차 임기만료자 및 중임자

-임기만료자 3,819명

-중 임 자 3,749명(98.2%)

(李源馥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사립대학의 분규가 지속되는 이유와, 분규내력 중 교육부가 기능적으로 잘못 다루어왔던 정책적 과오와 오류는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와 IMF시대에 수반되는 각종의 학내분규, 갈등사태를 어떻게 예단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사립대학의 분규지속이유는 분규의 종류 및 성질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사학의 공공성에 대한 사학설립자의 인식 부족, 법인의 학교경영권에 대한 교수·학생들의 인식 부족, 학내구성원들의 자율해결능력 및 상호 신뢰부족, 각자에게 주어진 본분일탈 및 준법의지 부족, 지역사회의 적극적 협조 부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학의 분규가 제도나 법적문제에 기인하는 것보다 운영문제에 기인하는 것이 많았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질의 2)

<교수 재임용제도>가 본 제도 도입 당시의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여러 가지 형태로 악용하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바,

(1) 현재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교수재임용제도의 잘못된 시행관행

(답 변)

○기간제 임용의 취지

-대학교원의 기간제 임용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계약제 임용의 한 형태로서, 임용기간 만료시 교수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평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임용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연구 동기 자극과 교수의 능력향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실시되고 있는 것임

○기간제 임용제 잘못된 시행 관행

-기간제 임용제가 교수의 임용기간 만료시 어떤 기준이나 절차의 준수 등의 의무를 지지 않고 손쉽게 교수의 임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점에 착안, 일부 대학에서 교수의 징계나 문책의 대체 수단으로 오용 또는 악용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하고 있음

-교육부 자료를 통해서 보면 '76년이래 재임용 탈락 교수는 총 226명이며, 최근 5년간('94~'98)의 사유별 재임용탈락 현황은 아래와 같음

탈락사유	'94	'95	'96	'97	'98	계
자질부족	28	0	5	2	6	41(34.7%)
연구실적미달	5	5	4	10	9	33(28.0%)
품위손상	2	0	4	2	6	14(11.9%)
기타	1	3	4	5	17	30(25.4%)
계	36	8	8	19	38	118(100%)

○교육부의 대책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기간제 임용시 적정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적정한 임용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용의 하자로 보아 재심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자의적 임용배제를 방지함

(질의 2)

(2) 각 대학의 인사관련 내규가 교육공무원법, 동 임용령, 교육부장관 훈령, 교수인사관리지침과 맞지 않게 운용되는 실제 사례에 대해서 교육부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답 변)

○대학교원인사관련 법령 및 교육부훈령, 지침 등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대학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만을 규정해 놓은 것이며, 각 대학들은 개별 대학의 사정과 의지에 따라 요건을 좀더 강화시켜 놓고 있는 것이 상례임

○대학별 교원임용과정(심사절차 및 심사 구성요소별 비중, 배점 등)은 대학의 교수임용 방향과 의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임

○교육부는 교원인사는 대학 자율성의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대학별 특성과 방향에 따라 임용기준 및 절차가 다양한 것은 인정하나, 교원 임용 심사과정에서 주관적 요인이 과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관적 평정요소를 축소하고, 심사과정의 객관성·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 내부의 규정 등을 정비할 것을 공문, 회의자료를 통해 행정지도하고 있음

(질의 2)

(3) 임용심사 <재심위원회>를 대학내에 둘 경우 재심조차도 형식적 절차로 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심위원회의 경우 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은 제3의 기관에 맡겨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부장관의 판단은 어떠한가?

(답 변)

○교육부는 대학교원 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 제고 장치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교수임용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교원임용체제의 틀은 대학이 특성화 의지나 중점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용하는 현행 체제를 기조로 하고 있음

○제도 개선안에서는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2개월전 임용심사결과 및 임용계약 갱신여부를 당해 교원에게 통보하고, 본인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대학내에 설치하는 교원임용재심위원회를 통하여 재심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동 위원회에는 외부심사위원을 포함하는 등 임용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임.

(질의 2)

(4) 교수제임용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의한 교수의 <연구 및 수업현상평가>가 중요한 판단자료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부의 이에 대한 입장은?

(답 변)

- 교수 기간제 임용제도를 본래의 취지대로 교수 자질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 교육과 연구의 질을 제고시키려면, 교수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업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교원인사에 반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용 관행이 확립되어야 함
- 교수업적평가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짐
  - 연구실적의 경우 계량적 실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학술지 평가 기준과 특

○교수업적평가제 실시 현황

- 허 등 실질적인 판단기준을 수립하여 질적 평가를 함으로써 양질의 연구를 유도하여야 함
- 교육실적의 경우 대부분 강의담당수, 석·박사 지도 및 배출인원 등을 평가하고 학생들에 의한 강의평가제는 일부 대학 일부교수들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 강의평가제는 직접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을 통해 수업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수요자 대응성을 제고하고, 교수로 하여금 교수방법 등의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어 바람직함.
  - 다만, 강의평가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강의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강의의 대응성(Responsiveness)을 높일 수 있도록 강의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질문지 및 평가의 틀을 개발하는 것이 향후 과제임.

- '98.4.1 현재, 131개 4년제 일반대학 조사 -

구 분	계	국·공립	사 립	교수업적평가제 활용현황			
				인사에반영	성과급지급	연구비 차등지급	연구년제 심사에 반영
현 황	82/131	12/26	70/113	80/131	39/131	39/131	36/131
비 율	62.6%	46.2%	61.9%	61.1%	29.8%	29.8%	27.5%

(질의 3)

○예·체능계열 불법과외 및 부정입학 등에 대한 대책은?

(답 변)

- 예능계열의 불법과외 등과 관련한 대책을 현재 검토중이며, 곧 발표할 예정임
- 체육계열의 부정입학 방지대책으로써 우선 동일계열 모집단위에만 입학 허용
  - 2000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의 경우도 다른 특기자처럼 동일계열에만 입학할 허용하는 '95년 예고 사항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일반 학과 편법 진학을 위한 과열 현상 해소
  - '99학년도에 정원 조정을 통하여 경기지도과, 생활체육과 등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만 특기생 모집 가능
  - 지방 사립대는 정원 조정을 자율 결정. 단, 수도권 소재 대학은 자체 정원의 조정으로 신·증설 가능(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모든 종류의 특기자는 동일계 진학 이후 다른 모집단위로의 전과는 제한되어 있으나 복수전공 등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
- 또한 체육계열의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체육특기생 제도 개선방안은
  - 운영비 투명화와 사전 스카웃 금지
    -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반드시 학교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
    - 감독 또는 코치를 통한 학부모의 기부금품 모금은 불법이므로 금지
    - 사전 스카웃을 통하여 음성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스카웃비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 관행이므로 이를 금지
  - 체육특기자 공개선발 원칙 준수
    - 음악·미술 특기자처럼 반드시 공개지원과 심사위를 통한 선발
    -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선

- 발기준과 절차는 대학에 일임  
 -최소한의 학업능력 배양을 위한 노력 권장
- 지·덕·체의 조화로운 체육인 양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수업참여를 학교의 장이 정하여 학생들의 최소 학력 구비를 위해 노력
  - 대학은 특기자의 최소학력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기본적 학력을 요구

(질의 4)

- 우리 나라의 외국어 교육은 영어 일변도이며, 학습내용 또한문법·독해 중심으로 되어 있음. 영어 교육은 회화 중심의 생활영어가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는?
- 동북아 경제권 시대에 대비하여 중국어, 일본어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며, 회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은?

(답 변)

-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6차 교육과정(1995년 시행)부터는 영어와 다른 외국어와의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과정별 필수과목”으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를 함께 편성하여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였으며,
- 제7차 교육과정(2001년 시행)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 “생활 외국어” 과목을 신설하여 학교 재량 활동 시간에 학생이 원하는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 기회를 크게 확대하였음.
  - 생활 외국어 과목 :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 외국어 교육이 문법, 독해 중심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종래의 문법 중심 교육 과정을 “의사소통 중심 교육 과정”으로 개정하여 외국어 교육에서 회화와 실용적인 측면을 크게 강화하였음. 또한 외국어 수업시 원어민 교사와 멀티미디어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음.

(질의 5)

<학교운영위원회> 문제와 관련하여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도입의 근본 목적과 취지는 무엇이며 현재 학운위 운영이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지?
- 학교운영의 최종 책임기관인지 아니면 심의기관일 뿐인지?
- 개별학교 학교 운영상 나타난 각종 문제나

사태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교장이 지는지 아니면 학교운영위원장이 지는지?

- 현 학교운영위원들이 사실상 학부모,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정통성과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 교장을 학교운영위원장 밑의 운영위원중 한 사람에 불과하게 만든 현행체제가 과연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답 변)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한 목적과 취지는 교육의 주민자치정신 구현과 참여의 교육체제 구축을 통한 학교공동체 형성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단위학교의 교육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데 있음
- 제도를 도입한 지 만 2년이 경과한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단위학교의 자치기구로 학교현장에 완전히 정착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빠른 속도로 제도도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됨
-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이 교무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운영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은 당해 학교장에게 있다고 판단되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순수 심의기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되었으므로 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할 수 있는 정통성과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지역인사 및 일반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학교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도입 취지를 흐리게 할 우려가 있어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을 맡도록 한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6)

- 단설대학교, 소규모 특성화 대학교 설립을 설립 준칙주의라는 이름하에 시행하여 얻은 결론은 33개 설립인가 대학 중 자그만치 50%에 해당하는 17개 종교대학(신학대 포함)을 대폭 허용한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
  - 본래 이 제도를 도입코자 했던 근본 취지

가 각 종교 군소 교단들의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대학을 대거 허용하자는 취지였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이런 결과적 현상이 나오게 됐는가.

-이 제도를 도입했던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정책결정, 집행 관계자의 명단을 밝혀 달라.

-가뜩이나 <거품학력주의>의 폐해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고비용 저효율 교육구조>에 설립준칙주의는 더한층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장관의 견해를 밝혀 달라.

-이 제도 <설립준칙주의>를 당장 중단할 용의는 없는가.

가 요구하는 다양한 자질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자율경쟁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96.7월 이후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거 설립된 일반 4년제 대학은 21개교(대학원대학 12개교를 포함할 경우에는 33개교)이며, 이 중 종교계 대학은 10개교이고, 이들 10개교 중 9개교는 기존의 각종학교가 일반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대학설립인가를 신청하여, 현재 심사 중인 일반 4년제 대학은 2개교이며, 이는 예년에 비하여 그 수가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대하여, 대학설립에 대한 국가통제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요즘과 같이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구조적 전환기에는 매우 적절한 제도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한 지 이제 2년여의 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동 제도를 더욱 연구·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우리의 고등교육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답 변)

○대학설립준칙주의는 '95.5.31 발표된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안되어, '96.7월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시행함으로써, 대학설립에 관한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한 주요 취지는 대학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정기준을 충족하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성화된 다양한 소규모의 대학들이 설립되어 사회 각 분야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당시 관계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 속 및 직 위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교 육 부 장 관		박 영 식	'95. 5.16~'95.12.20
"		안 병 영	'95.12.21~'97. 8. 5
교 육 부 차 관		이 천 수	'93. 3. 4~'95.12.25
"		이 영 탁	'95.12.21~'98. 8. 7
대 학 교 육 지 원 국 장	이 사 관	김 명 곤	'94.12.31~'95. 8. 31
"	"	금 승 호	'95. 9. 1~'95.12.31
"	"	이 원 우	'96. 1. 1~'96. 7. 7
고 등 교 육 실 장	관 리 관(겸)	장 오 현	'96. 7. 8~'98. 2.21
대 학 교 육 행 정 심 의 관	부 이 사 관	차 현 직	'94.12.31~'95.12.31
"	"	조 성 종	'96. 1. 1~'96. 7. 7
대 학 교 육 정 책 관	"	"	'96. 7. 8~'97. 1.14
대 학 행 정 지 원 과 장	부 이 사 관	김 영 식	'94. 3. 4~'96. 7. 6
대 학 지 원 총 팔 과 장	"	정 석 구	'96. 7. 8~'97. 1.14
대 학 행 정 지 원 과 장	사 무 관	맹 정 호	'95. 5. 8~'96. 7. 6
대 학 지 원 총 팔 과 장	"	"	'96. 7. 7~'97. 1.28
대 학 행 정 지 원 과 장	행 정 주 사	이 인 철	'95. 5.27~'96. 7. 6
대 학 지 원 총 팔 과 장	"	남 상 문	'96. 7. 7~'97.11.10

(질의 7)

(1) 서울대 치과대 교수임용을 둘러싼 금품수수 비리는 한국대학 교수사회가 안고 있는 대표적인 비리구조의 일각에 불과한 것 아닌가. 교수직이 거액을 쥐야만 채용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광범하다면 이는 한국교육이 근본적으로 부패 타락했다는 얘기 아닌가. 교육부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답 변)

- 교육부는 교수임용 비리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수임용을 통해 우수 교수를 확보하고 교수능력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 교수임용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장치 마련
  - 교수임용기준 및 평정요소의 객관화
  - 임용심사시 외부심사제 도입 등 심사과정과 절차의 객관화·투명화
  - 심사결과 공개 및 심사자료 열람
  - 임용기간 만료후 임용심사결과 및 임용계약 갱신여부를 본인에게 통보/재심청구 인정 : 대학별임용재심위원회를 객관적으로 구성하여 재심 실시
- 개방적 임용풍토 정착기반 마련
  - 쿼터제 실시로 출신대학과 관계없이 실력있는 인재가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구축
- 교수 임용비리 발생대학에 대해서는 관련자 엄중 문책, 대학 당국에 대한 행·재정 제재를 단호하게 적용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수업적평가를 기초로 엄정하게 운영되는 계약 임용제 실시 추진
  - 임용심사결과 및 자료의 공개/열람 ▶ 임용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 임용계약 갱신여부에 대한 재심 인정
    - ▶ 능력과 실적에 의해 평가받는 대학 분위기 정착 유도

(질의 7)

(2) 대학교 교수직이 기득권 교수들에 의한 동문간(둘러나뉘먹기) 구조로 타락한 지는 꽤 오래된 얘기이다. 대학교수진 신규임용, 채용제도와 관련한 교육부의 명확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답 변)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교수 임용시 임용후보자의 객관적 능력, 실적과 상관없이 정실, 연고 등에 의

해 임용여부를 결정하는 폐쇄적이고 불공정한 임용관행이 자행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학문적 수월성과 대학발전을 저해하는 인적 요인이 됨

- 교육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수임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추진 중임
  -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 정비 및 대학평가 등 정책수단을 통하여 대학의 자율적 노력 유도
- 아울러 교수임용비리 발생시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문책은 물론, 비리 양태가 구조적 비리인 경우 당해 대학에 대하여도 행·재정적 제재로 비리가 발붙일 수 없는 풍토 조성
  - <교수임용제도개선방안 주요 내용>
    - 임용에서의 기준과 절차 명시/준수
    - 임용심사결과 공개, 임용심사자료 열람
    - 개방적임용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쿼터제 도입
    - 교수업적평가제 도입 및 결과 활용으로 객관적 인사풍토 확립
    - 임용계약 갱신 여부 사전 통보 및 재심요구 인정

(질의 7)

(3) 많은 사립대학이 저임금의 시간강사를 중심으로 학과운영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규제할 방안은 무엇인가. 더불어 박사학위까지 받고도 몇 년간을 최저임금의 시간강사로 생활하고 있는 대학시간강사들에 대한 시간당 강의료의 최소보장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

(답 변)

- '98년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고등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등)의 시간강사수는 60,811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53,846명인 전임교원의 수를 상회하고 있음
- 각 대학들은 교육과정상 필요하지만 전임교원이 충원되지 않았거나, 시간수가 적은 다양한 선택 과목 운영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가 어려운 예·체능 등 실기 분야, 또는 전임교원의 휴직, 해외 유학 등의 경우 시간강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 대학의 시간 강사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위 과정에 있는 고학력자로서 전임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연령상 가정을 이루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라 볼 수 있음. 더욱이 이들이 시간으로 강의



를 담당함으로써 한 대학만 적을 둘 수 없는 실정임

○교육부는 시간강사료 현실화 노력을 계속하여 시간강사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대학 교원 예비 인력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학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 대학의 경우, 전임 교원 확보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며, 국립 대학의 경우 전임 교원 담당시수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여 시간 강사 대체수업 증가를 방지하여 대학 교육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또한 교육부는 전임교원확보율이 낮은 대학에 대하여 교원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 대학에 대한 행·재정 지원에 있어 전임교원 확보율을 중요한 기준으로 함으로써 대학의 전임교원확보 노력을 유도하고 시간강사의 의존도를 축소하도록 하겠음

(질의 7)

(4) '98년9월17일자로 구속된 태철도, 김봉균, 김덕현씨(교육부 감사관실 관계자들)의 명확한 구속사유 및 이 사태와 관련 장관의 견해는?

(답 변)

○구속사유는 다음과 같음.

-태철도(60세) : 뇌물수수 3,500만원

-김봉균(51세) : 뇌물수수 1,500만원

-김덕현(43세) : 뇌물수수 500만원

○이들은 '98.9.14 구속 수감되었으며, 김봉균, 김덕현 2명은 '98.10.21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 결과통보에 따라 동일자로 직위해제 하였으며, 현재 행정자치부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임.

-태철도 전. 한국교과서연구소장은 '98.10.19 면직처리됨.

○앞으로 감사관실 근무자는 청렴도, 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임자를 배치, 일정기간후 순환근무토록 하고, 특히 행·재정, 인·허가 관련부서 및 사립대학 지도 감독 부서 근무자 등이 감사관실에 바로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 철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능도 학교의 자율성이 존중되도록 하면서 정책유도, 제도개선, 평가위주로 개선해 나가겠음.

(질의 7)

(5)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당시 교육부의 의도는 무엇이며, 이 제도가 여러 형태로 왜곡되거나 도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왜 고려하지 못했는가?

-교육부장관<안병영, 이명현 장관시절>은 작년도 국회와 국정감사에서 현재 특목고 3학년 학생들에 대해 서울대가 내신성적을 반영함에 있어 절대평가를 하면 분명 문제가 없고, 또 서울대가 그 방향으로 같것이라고 증언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답 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목적은

-교육의 수월성 추구

-특수 재능아의 조기 발굴과 육성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개성 중시 교육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 등에 있음.

○현재 특목고 3학년 학생들은 「새 대입전형제도('95.12.19)」시행에 따라 비교 내신제가 폐지되고,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이 대학에 일임됨을 알고 입학하였음.

○서울대가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함에 있어 절대평가성적(수·우·미·양·가)을 반영하느냐 상대평가 성적(교과별 석차)을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서울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봄.

(金貞淑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대학입시 제도개선 문제

(1) 모든 대학이 학교장추천제에 의한 무시험전형을 택할 경우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지나치게 서둘러 새 입시제도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3) 대학들이 고교등급화를 도입할 경우 대책은?

(4) 새 입시제도는 무시험 전형제 도입으로 대학생의 학력저하를 유발하고 이에 따라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측면을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

(5) 학교장추천제에 있어서 교장이나 교사 등이 결국 학생의 성적위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닐까?

(6) 충분한 연구검토와 준비기간을 거쳐 현 초등 6년생이 대입을 치르는 2005년부터 실시할 의향은?

(답 변)

○모든 대학이 학교장 추천제를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것은 대입전형의 다양화·특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음  
-다만, 추천제 전형이 일반화될 경우를 대비하

여 다양한 공정성·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

- 추천의 기준이나 내용을 명확히 마련하여 논란 예방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기준과 절차를 심의하고, 최종 추천 결과를 공개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사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은 다음 표와 같음

일 시	의 견 수 렴 내 용	수 렴 대 상 자
'98. 4.~7.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고형일 등 교수 3인
'98. 5.	○입시전문가 13명에 자문	○대학측 9인 ○고교측 2인 ○학부모측 2인
'98. 6.~9.	○대교협 연구 8회 참석	○대학측 4인 ○대교협측 1인
'98. 7.14.	○사교육비특별대책위원회 3차회의 상정	○학부모측 2인 ○시민단체측 1인 ○교원측 3인 ○언론측 2인
'98. 8.12.	○사교육비특별대책위원회 4차회의 상정	○산업측 1인 ○법조계 1인 ○문화·예술계 2인 ○학계·연구기관 6인
'98. 8.26. '98. 9. 4.	○새 학교문화창조 추진위원회 2회협의	○교원대표 4인 ○교육전문가 2인 ○학부모측 2인
'98. 9.1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선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98. 9.10. '98. 9.16.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대학위원회 2회 상정	○대학위원회위원 10인
'98. 9.18.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전체회의 1회상정	○새교위위원 40인
'98. 9.18.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개선시안 공청회	○대학측 서강대입학처장 ○고교측 대기교 교사 ○학부모측 참교육학부모회장 ○언론측 조선일보기자
'98. 9.23.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의 입장	○학부모연대
'98.10. 1.	○전교조 입시제도 토론회	○전교조 위원 3인

- 지난 9.18일에 있는 공청회의 개선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은 물론 공청회 이후에도 이들 여러 의견들을 세밀히 검토함

- 그 결과 이들 각계 의견의 상당 부분은 교육부 정책방향과 일치하여 이번 개선안에 반영함

○고교등급제는 위헌소지까지 야기되므로 금지

- 이번 새 제도는 오로지 성적위주 전형을 지양하고 무시험 전형을 활성화하는 것이므로 성적으로 고교를 등급화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음

- 중학교까지 새로운 입시과열이 일어날 수 있어 대학문제를 고교로 전가

- 수능성적으로 전국 수준의 성적 가능 가능

- 전국 학생을 고루 선발하도록 노력함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

- 정부는 대학별 학생선발 방법을 평가하여 재정지원에 반영함으로써 책무성 제고

○무시험 전형제는 전혀 시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험성적 위주의 전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

- 따라서 무시험 전형제 도입으로 학생의 적성·특기 등을 살릴 수 있어 오히려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봄

- 그 동안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지·덕·체가 조화로운 교육 실현으로 21C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 양성 가능

○학교장추천제 전형 실시에 있어 학교장 및 교사들이 학생의 성적위주로 추천하지 않도록

- 고교는 다양한 추천기준·내용 및 절차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명확히 마련하고,

- 대학도 학생의 성적을 위주로 추천을 실시하는 고교에 대해서는 차후 추천인원의 배정 등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노력 필요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은 이미 확정·발표되었으므로 번복은 불가능하고 동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의한 선발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습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 제고로 전형방법의 다양화 유도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은 시급한 것이었음

- 또한 현행 시험성적 올리기 위주의 교육으로 21세기 인재 양성에 대비할 수 없어 가능한 조속히 도입해야 함

- 다만, 충분한 예고를 위하여 2002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대학별 선발 주요사항을 금년 10월말까지 집계하여 발표할 예정

(질의 1)

(7) 서울대 특별 지원과 관련 무시험 전형제와 서울대 구조조정을 8월말까지 끝내도록 교육부에서 서울대를 압박하지 않았는가?

(답 변)

○서울대 발전계획과 관련, 우리 부와 서울대 간의 협의는 진행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압력의 행사는 없었음.

(질의 2)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교운영위원회 성격은 자문기구로 하고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교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야 함

○사립학교 경우 사학자울협의기구에서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선택하여 운영토록 해야 함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위원 선출, 위원들의 연수 강화 및 회의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상기 제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답 변)

○학운위의 성격에 대하여 자문기구, 심의기구, 의결기구 등 입장에 따라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자문기구 및 의결기구는 학운위 제도 도입취지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학교교육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학교장에게 맡겨야 한다고 볼 때, 현행과 같이 심의기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학교장은 학교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교무를 통할하고 있으므로 직접 학운위에 참석하여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의사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학교운영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교감의 경우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여 교사들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면 교원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미 제도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교감을 학교장 대신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됨

○사학의 경우 학운위 기능이 법인이사회 기능과 일부 중복되고 사립학교의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사학의 판단과 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 학교운영위원회는 정부기구도 아니고, 학교구성원인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학교 및 교육발전을 위한 제안과 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단위학교 자치기구이므로 수요자 중심의 학교운영 측면에서 사학에도 학운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며

- 특히, 현재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되어 있고, 실제로 사립학교가 교육과정·교육내용 등에 있어서 국·공립학교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학교발전을 위한 최선책을 구성원이 상호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제도, 연수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회의와 그 결과에 대한 공개 문제는 이미 각 시·도의 조례에서 공개토록 의무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의 열람까지 허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3)

대학평가의 실태와 개선점

- (1) 대학평가가 경쟁력 제고보다는 교육부의 선심정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한 견해는?
- (2) 재정지원과 연계된 대학평가는 시장경제 논리를 앞세운 새로운 대학통제방식이라는 비판에 대한 견해는?
- (3)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대학에 얼마나 진출하고 있고, 재정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 (4) 대학평가를 민간단위의 전문적 대학 평가기구를 육성하고 이 기구를 통해 평가하며, 교육부는 그 결과만 받아 재정만 지원해 줄 의향은?

(답 변)

1. 대학평가가 경쟁력 제고보다는 교육부의 선심정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 교육부가 최근 교육개혁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국가적 육성의 필요성에 따라 각계인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대학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일반지원사업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대학평가는 예산사업 목적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 교육개혁을 하는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대학간 경쟁분위기 조성을 통한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원칙을 계속 고수해 나가야 할 것이고, 특성화된 대학/학과에 집중지원할 계획입니다.

2. 재정지원과 연계된 대학평가는 시장경제 논리를 앞세운 새로운 대학통제방식이라는 비판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 대학 평가에 따른 재정차등지원은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의 기능 분화 및 다양화·특성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 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국책공대사업,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학간 선의의 경쟁풍토 조성을 통해 대학의 자율역량 제고, 대학교육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대학평가는 대학통제가 아니라 자율성에 따른 재정지원 효율성 극대화 정책입니다.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대학을 도와주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3.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대학에 얼마나 진출하고 있고, 재정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 교육부출신 공무원의 진출대학은 경산대학교(차관), 광운대학교(장관), 대진대학교(차관), 순천향대학교(차관), 영동대학교(실장), 위덕대학교(장관), 중부대학교(차관), 호남대학교(실장)로 총 8명이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 '98 교육개혁추진우수대학(30교), 국책공대(8교), 지방대특성화재정지원사업(28교)중 지방대특성화사업에서 호남대만이 유일하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97: 9억원)

4. 대학평가를 민간단위의 전문적 대학 평가기구를 육성하고 이 기구를 통해 평가하며, 교육부는 그 결과만 받아 재정만 지원해 줄 의향에 대하여

○ 대학에 대한 평가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하는 평가인정제가 있고, 행·재정지원을 위한 행정심사가 있으며,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사회평가가 있으며 목적과 기능이 모두 다릅니다.

○ 교육부가 예산을 배정하기 위한 평가는 행정심사로서 '94년 이후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교육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등 지원하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 교육부의 행·재정 지원을 위한 행정심사는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평가와는 달리 국고가 대학에 지원되는 근거이므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민간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추진하기 곤란하며,
- 다만 평가항목중 일부를 대학교육협의회 평가 인정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4)

학교폭력의 실상과 대책

- 가치 '학교폭력방지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의향이 있는가?
- 종교단체나 민간차원에서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의향이 있는가?
- 교도교사 자격연수제도를 부활하는 등 상담교사 연수를 강화할 의향은?

(답 변)

- 학교폭력 피해는 우리부 설문조사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17% 감소('98.9 현재)하였지만 위원님의 지적대로 아직도 일부학생의 폭력과 집단괴롭힘 등이 잔존하고 있는 바,  
\*대검찰청 발표는 20.3% 감소
- 우리 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안학교(특성화학교)의 설립·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 '97.9월부터 시행중인 「설립 준칙주의」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 시·도교육청 평가시 특성화학교 설립·지원실적을 반영하여
    - 시·도교육청별 특성에 맞는 대안학교의 설립을 촉진하며
  - '98.3월부터 특성화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등 운영비를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도교사자격 연수제도 문제는 교도교사 제도를 폐지한 것이 아니고 전문상담교사제도의 시행으로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을 변경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 우리 부는 전문상담교사제 정착을 위하여 '99학년도까지 양성체제를 정비하고, 전문상담교

사의 수업시수를 연차적 축소 또는 예산확보를 전제로 상담만 전담토록 하는 방안 강구중이며

- 새학교문화(교육비전2002) 창조 운동으로 전교사의 담임제와 상담교사화를 추진하여 학생들에 대한 개별지도 강화하고, 전교사의 상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질의 5)

학교내 성희롱 근절 및 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

- 교육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교사에 의한, 또는 남녀 교우간의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 적합한 '성희롱 방지 지침서'를 개발할 용의는?

(답 변)

- 학교 성교육은 가치관 중심의 인간교육에서 출발하여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상호간의 인격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남녀 공학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추는 가치관의 정립과 책임있는 남녀 교우 관계를 자각하도록 하는 등 성적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학교 성교육은 교육부의 행정지침으로 불충분하고, 다각적인 교육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부는 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11월 중 『성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성교육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방침임.
- 이와 함께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에 즈음하여 선포할예정인 『학생인권선언』에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

(질의 6)

여성의 교육행정직 진출을 위한 여성할당제 도입의 필요성

- 여교원이 전체 교원의 47.4%에 달하지만 초등학교 교장은 4.9%, 교감은 7.5%, 보직교사는 32.0%, 중학교 교장은 7.1%, 교감은 7.0%, 보직교사는 23.4%, 고등학교 교장은 4.1%, 교감은 1.4%, 보직교사는 8.2%로 매우 저조함. 이와 관련하여 승진제도의 개정 및 여성할당제 도입 용의는?

(답 변)

○여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직사회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의

사 결정직에 여교원을 참여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음.

○여교원 현황

구	분	계	초	중	고
전	체 교 원 중 여 성 비 율	47.4	60.3	52.3	26.0
50	세 미 만 교 원 중 여 성 비 율	55.9	72.1	62.3	30.7
50	세 이 상 교 원 중 여 성 비 율	18.5	28.2	12.5	6.5
55	세 이 상 교 원 중 여 성 비 율	13.2	20.6	8.9	4.4
보	직 교 사 중 여 성 비 율	24.4	33.4	27.9	9.2
교	감 중 여 성 비 율	6.3	7.5	7.0	1.4
교	장 중 여 성 비 율	5.3	4.9	7.1	4.1

-여교원 비율은 47.4%이나 교장·교감·보직교사 진출은 각각 5.3%, 6.3%, 24.4%로 매우 낮은 편임. 이는 무엇보다도 승진 연령대인 50세 이상 여교원은 전체교원의 18.5%에 불과하여 남교원에 비해 승진 대상자가 적은 것과 관련됨. 다만, 여 교장·교감 비율이 55세 이상 여교원의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여교장·교감의 비율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최근 여교장, 여교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 '90년에는 교장·교감·보직교사 여교원 비율이 12.3%였으나 '96년에는 18%, '98년에는 2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경력평정 하향조정, 통합평정, 직위별 평정 개정은 작년 7월에 인사규정이 개정된 이후 시행·적용한 회수가 얼마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여교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움.

○앞으로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력평정기간 재하향조정, 남녀구분 평정, 여성할당제 실시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겠음.

(질의 7)

학교급식 및 결식학생 실태와 대책

○고등학교 급식 추진계획과 결식학생 중식지원 대책은?

(답 변)

1. 고등학교 급식 추진계획

추진 배경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 봉사정신과 협동정신 등 공동체의식 함양의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은 여성의 사회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93년부터 크게 확대되어 올해 '98년부터는 전국 5,688개 초등학교중 98.9%인 5,625개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자 중등학교 급식도 조기에 확대하자는 의견이 높았으나, 초등학교와 같이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는 형태로의 중등학교 급식을 확대하기에는 교육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많아, 외부 운반급식 또는 민간인 등도 교내에 급식시설을 설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96.12월 학교급식제도를 개선하고, 중등학교 급식은 위탁급식을 위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97.12월 중학교 급식률은 8.6%, 고등학교 급식률은 9.8%에 불과하며 여전히 급식을 희망하는 여론은 높아, 우리 부에서는 중등학교 급식확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98.2월 전국 80개교의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원 6,400명을 대상으로 「중등학교급식 확대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계 고등학생의 57.1%가 점심은 물론 저녁까지 집 밖에서 해결하고 있었으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

두 급식실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학생 83.9%, 학부모 81.0%, 교원 77.0%)

실시형태로는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급식비도 2,000원 이하로 저렴하고 양질의 위생적인 급식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선 고등학교부터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중학교급식은 99년 하반기부터 2001년까지 전면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급식확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급식확대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청소년기의 균형잡힌 영양섭취는 평생건강의 밑거름이 되므로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건강 측면에서도 학교급식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성장기 학생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물을 재료로 생합성하여 새로운 세포와 필요한 물질을 만들고, 연소시켜 에너지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올바른 식생활이 우리 건강과 직결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입맛대로 식사를 하여, 에너지 과잉섭취,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 우리의 식생활 현실이며, 현대인 들에게 비만, 당뇨병, 동맥경화증, 심장병, 고혈압 등 성인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IMF의 영향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가계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가정에서의 식생활비 지출도 감소하고 있으며, 결식학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민건강 수준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책적으로 학교급식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양질의 급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급식 확대시 학부모의 가계부담 경감 효과도 있습니다.

중전의 외부운반급식 등 위탁급식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1식당 2,500원이었으나, 급식확대시 거의 전 학생이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식당 급식비를 1,500원~1,700원으로 권장하고 있으므로 고등학교 234만명 급식시 연 4,68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운영함에 따라 1교당 약 10명의 조리원이 필요하므로 약 2만명 여성인력 고용이 기대되며, 급식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주방설비 관련 산업과 건설인력의 고용도 필요하여 약 6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 실업대책에도 기여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학생 중식지원 방법에 있어 지원대상 학생임이 노출되지 않아 지원받는 학생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예산도 약 40%인 1식당 1,000원정도가 절약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급식확대 추진경과

○우리 부에서는 효율적인 고등학교급식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98.4월 부터 시·도보건관계관회의 개최, 서울·경기·인천지역 급식실태조사, 부교육감회의, 교육감회의 등을 개최하여 학교현장의 의견과 시설을 조사하여 시·도별 급식확대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위탁급식업체도 방문하여 회사의 이익보다는 공익적인 교육사업에 동참하는 자세로 현행 1식당 2,500원 상당의 양질의 급식을 1,500원~1,700원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줄 것을 전제로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98.7.21~22 양일간에는 전국에서 중·고등학교 급식실시율이 제일 높은 제주도 중앙여고 등 8개교의 급식시설 현장을 16개 시·도 교육청의 행정과장, 시설과장, 보건과장이 합동으로 견학하며, 효율적인 급식시설 설치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중앙여고의 경우는 '97.10월부터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심은 1,256명 전원이, 저녁은 전교생의 42%인 527명이 급식을 하여 1일 총 1,781명이 급식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1식당 급식비는 1,450원~1,500원이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급식확대 재원확보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 구역안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경비만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고등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98.9.17 대통령령 제 15,891호)

□급식확대 계획수립 및 예산지원

○'98.8월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고등학교 급식 확대계획을 수합, 올해안에 고교급식 70% 실시를 위한 「'98 고등학교급식 확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월 현재 전국 1,922교중 18.6%인 358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 급식학교중 시설보완이 필요한 163개교를 포함하여, 올해안에 1,090교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99 전반기에는 642교, '98~'99 총 1,732교에 급식을 확대하여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98년 2,192억, '99년 1,485억 총 3,677억원으로 올해 소요예산 2,192억원중 약 50%인 1,109억원은 우리부 특별교부금으로, 약 20%인 472억원은 시·도교육청 자체부담(시·도 자구노력비 지원비 1,500억원 활용)으로, 나머지는 611억원은 운영위탁 받고자하는 민간인 등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99년도 소요예산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약 50%는 지원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현욱 위원님께서 '99년까지 급식 시설에 필요한 비용 3,677억과 민자유치가 예상되므로 되지 않을 경우 민자분 611억을 포함하여 총 4,288억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총 소요액은 611억을 포함하여 3,677억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98년도 지원 기준은 학교에서 급식시설을 직접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소요액 전액을 우리 부와 교육청에서 7:3으로, 운영위탁하고자 하는 학교는 급식실 건축 및 개축비용, 전기·수도·가스 등 기본시설은 우리 부와 교육청이 7:3으로 지원하고, 급식실내부설비인 국술, 밥술 등 주방기구류는 수탁자가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재 규모는 적지만 구내식당이 있는 학교는 기존시설을 개선 및 확충하고, 학생수가 적으며 인근 초등학교 등 급식시설이 있는 학교는 이들학교와 공동조리급식을 하며, 이러한 여건이 안되는 학교에는 급식시설을 신축토록함을 원칙으로하여, 구내식당 개선의 경우는 교당 2억원, 인접시설 활용은 0.5억원, 신축은 2.5억원을 소요액으로 산정하

였으며, 급식시설 설치를 이유로 학부모에게 후원금 등을 별도로 모금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급식확대 추진 실태조사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조치

○우리 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급식 확대 추진실태를 점검, 독려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내실있는 급식확대의 실현을 위하여 '98.10.13~17일에 1차로 서울, 부산 등 8개 시·도교육청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였고, 10.26~30일에 경기, 충남 등 나머지 8개 시·도교육청의 추진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또한 10.31일에는 시·도 급식담당관회의를 개최하여 급식확대실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차 급식확대 추진실태 점검결과 고등학교 급식이 단기간내에 전국의 70%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관계로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확대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급식실시에 대한 홍보등 학교의 자발적인 노력이 부족하고, 학교장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98.9월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새로이 급식을 시작한 대구외곽의 한 종합고등학교 교장에 의하면 “학교급식 실시 이후 결석학생이 크게 감소(1일 30명→12명)하고, 결석학생 파악 및 지원이 용이해짐 등 기대한 것 이상의 효과가 있어 급식을 실시하기를 잘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직영하는 경우는 물론 운영위탁하는 경우에도 1,500원~1,700원의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급식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실시하여 일부 학생만이 아닌 대다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감면과 공유재산사용요율 인하 등 식품비 외적인 비용을 줄이도록 제도적 개선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위탁급식의 경우 그 시행목적과 기본방향, 업체선정 절차, 학교의 지도·감독 사항, 급식운영 내실화를 위한 학교의 노력등을 규정한 시행요령을 마련, 시·도교육청에 '98.10월 시달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급식확대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건강,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기간내 급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1년후, 5년후, 10년후에는 역시 진정한



교육수요자 중심의 정책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랍니다.

2. 결식학생 중식지원 대책

□중식지원 개요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사업은 학생들간의 위화감 해소와 건전한 심신발달을 목적으로 지난 '89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 결손가정 등 빈곤가정 학생중 점심을 먹지 못하고 오후수업을 계속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에는 IMF의 영향 등으로 실직자가 크게 늘어나고, 이번여름 수해 등으로 빈곤가정의 결식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식지원 방법은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주관하여 1식당 2,500원 상당의 식사를 구내식당 또는 인근 식당을 이용하여 연간 180일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초등학교 전면 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관계로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에게는 학교자체에서 급식비를 면제해 주거나, 교육감이 급식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1식당 1,000원~1,300원 정도의 지원을 연간 180일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학생 선정은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가장 잘 아는 담임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98 중식지원 경과

○당초 '98중식지원 대상 학생은 10,263명(중 6,898명, 고 3,365명)분 4,618백만원(국고 2,257백만원, 나머지는 지방비)을 지원하였으나,

○IMF의 영향으로 실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결식학생 현황을 재조사하고 새로이 지원이 필요한 9,698명분 38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98.4.23)

○8월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여름 수해 등의 영향으로 결식학생수가 크게 증가하여, 학교자체적으로 급식비 면제 또는 교육감이 지원하던 초등 결식학생을 포함하여 중식지원 대상학생을 새로이 파악하고 부족액을 추가지원하였습니다.

-초등생 69,088명, 중·고생 43,760명 총 112,848명

-112,848명 지원에 필요한 230억중 기확보

한 208억을 제외한 부족액 22억 추가지원 ('98.10.10)

□겨울방학등 향후 지원 대책

○우리 부에서는 학교에서만 굶는 학생이 없도록 재차 11월 중으로 결식학생 현황을 파악, 지원할 계획이며, 추운 겨울방학 동안의 지원문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우리 부와 기획예산위원회,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원대책을 마련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8)

교육여건과 학교주변 환경실태와 문제

○교육여건과 학교주변 환경실태와 문제중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하여

- 금년도 사업은 계획(1조원)대로 추진되는지
- 내년도 예산은 계획대로 반영되었는지
- 교육부에서는 예산만 배정하고 사업집행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제2건국 교육기획단」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포함시켜줄 수 있는지

(답 변)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교및 특수학교의 시설개선과 교원편의 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96~2000(5개년) 사이에 매년 1조원씩 총 5조원(교부금 : 3조5,000억원, 자부담 : 1조5,000억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음

○'98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국고지원분 7,000억원과 자체부담금 3,000억원 합계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시·도교육청 재정형편상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계획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99 경우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국고지원분 7,000억원에 대하여는 정부예산에 편성 되었으나, 시·도교육청 자체부담금 3,000억원은 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려워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세부사업별 추진에 관하여는 시·도교육청의 실정에 따라 사업물량 및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정·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다만 우리 부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질적개선을 위하여 가능한 사업의 종합화로 예

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지도하고 있음

-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끝나는 2001년 이후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추진당시에 조사된 총사업비 11조7,000억원중 제외되었던 6조7,000억원 및 여건변화에 따른 추가 소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시행기간 연장 또는 예산확보방안 등을 마련하여 교육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질의 9)

교원노조 허용문제

-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듯이 교사를 일반 “근로자”로서가 아닌 존경받는 “스승”으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고, 그에 따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 관련법에서 교사의 지위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교원은 현재 관련법에서 정년 등 특별한 신분보장을 받아왔으나, 교원노조 허용시 노조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학경영자측의 주장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그럴 경우 교직은 안정성을 잃고 교원의 신분은 극도로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군사부일체”라는 정서가 존재해왔고 지금도 스승공경의 미덕은 국민 가슴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한국의 교원은 그간 노조없이도 사회적·경제적으로 높은 대우를 받아 왔습니다.
  - OECD 내에서도 높은 보수수준이며, 정년도 65세까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서 교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부장관과 년2회 교섭·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적이나마 단결권과 교섭·협의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교원노조를 허용할 경우 사학경영자측의 정리해고제, 고용계약제 보장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단위학교에서의 노조결성 및 교섭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므로 교원들에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권익이 침해되거나 교직안정성이 저해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질의 10)

촌지 근절 대책 추진 실태 및 문제점

- 촌지수수의 근본 원인
- 촌지 근절에 대한 견해
- 스승의날에 대한 견해

(답 변)

- 촌지수수는 스승존경의 책거리 문화가 잘못된 관행으로 변질되어 일부 학부모가 자기자녀에 대한 이기적인 과욕과 피해 의식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특정지역의 극히 일부 교사가 학부모에게 금품 기대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그릇된 의식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촌지문제는 물리적 방법으로 문제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들이 촌지를 근절하려는 의지와 자성이 있어야 하겠으며, 학교운영위원회와 민간단체 등을 통해 학부모들을 계도하고, 교사들에게는 촌지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용히 촌지추방운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 \* • 최근 여론조사(한국교육개발원 '98.6)의하면 학부모 대부분(63.1%)이 “촌지가 줄어들었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 신문클럽조사('98.8)에 의하면 “촌지를 안줬다”에 87.4%로 반응되어 촌지가 격감되고 있습니다.

-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고자 하는 기본취지가 촌지수수 관행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지 아니합니다.

한 학년을 마치는 학기말인 2월에 지난 한해의 배움을 마무리 하면서 스승의 고마움을 기림으로써 우리 조상의 책걸이 문화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스승의 날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스승의 날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李在五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교육정책 10대과제

1. 교육부는 대학입시제도에 개입하지 않을 용의가 있는가?

(답 변)

- 정부는 다양한 전형자료 개발과 대학 및 고교에 관련 정보제공에 노력하는 등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대학진학 희망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기

능 이외에는 대입전형 관리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을 것임

○새 제도는 사실상 대학의 자율권 보장 조치임

(질의 2)

교육정책의 10대과제

(2-1)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교육 정책의 한 기본축으로 삼아야 함.

(답 변)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함.

○우리 부는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 비전 2002: 새 학교 문화창조'를 내놓았음.

- 지금까지 사교육이 성행하게 된 것은 상당 부분 성적 위주의 한 줄 세우기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입학전형제도에 그 원인이 있었음. 그러나 2002학년도부터는 대학들이 무시험 전형을 확대하기로 공표함에 따라, 그 동안 대입제도에 예속되어 일부 과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초·중등 교육이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계발하는 등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음.

- 앞으로 교과 성적보다는 개인의 특기, 품성, 사회 봉사 등 인성의 비중을 강화하겠으며, -수습교사제 도입, 우수교원에 대한 유인체제 강화, 교과연구공모제 및 교원연수를 통한 자질 향상 등 공교육의 내실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고교 신입생부터는 보충수업과 타율적 자율학습을 폐지하고, 현장 체험학습 강화 등으로 교과 수업 부담을 경감시키며, -기초학력책임제·수업모니터링제 등을 도입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욕구를 해소하겠음.

-또, 방과후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위성교육 방송의 프로그램 질 제고 및 쌍방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교육 욕구를 최대한 흡수하도록 하겠음.

○아울러, 사교육 문제는 교육 문제이자 사회적인 문제임을 감안, 범정부적·범사회적 협력 체계를 구축, 산업계의 능력 위주 고용 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학부모의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사교육을 최대한 없애도록 하겠음.

(질의 1)

교육정책의 10대 과제

(2-2) 과외활동에 대한 철저한 과제로 교육환경에 기여

○사교육활동(과외활동)에 대한 세금부과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답 변)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운영중인 학원은 매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 별도의 목적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학원생 개개인에게 별도의 목적세를 부과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학비조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과외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과외대상자 및 금액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는 법률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목적세 부과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우리 부에서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사교육비가 경감되는 만큼 공교육비에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교육세 대책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질의 1)

교육정책의 10대과제

(3)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정책분야를 분화시켜 전문화”하여야 하며,

(10) “스스로 구조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는?

(답 변)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필요성 및 교육부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생각하며, 향후 교육부 조직개편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의 경우 교육자치제의 실시 취지에 따라 초·중등교육중 주요 집행기능은 점차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부는 학제, 교육자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등 국가차원에서 관리·운영하여야 할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틀과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및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배분 등에 그 기능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부의 조직개편 및 기능의 배분에 있어서는 국가의 교육정책 방향, 교육관련자·교육관

련기관·단체 및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교육정책 10대과제

(4) 중등교육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초급대학으로 전환 또는 병설시켜라

(4-1) 실업계고 학생수 감소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를 5년제 초급대학으로 전환 또는 전문대학 2개년 과정을 병설운영 함으로써 전문직업 훈련기회를 활성화하고 인문고 지원자를 대량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 의견은?

(답 변)

- 위원님께서 실업계 고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라의 실업계고 교육은 인문승상과 사·농·공·상의 잘못된 사회 인식과 실업계고에 진학한 학생도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의하기 보다는 일반계고에 진학치 못해 실업계 학교를 선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장단기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대학에 진학하여 고등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실업계고 학생을 위해 전문대, 산업대의 문호를 개방하여 동일계 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대학 특별전형의 경우 1998학년도에는 전국 148대학이 106,512명의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진학을 보장하였고, 1999학년도에는 158대학에서 36,000명이 증가된 14만여명에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1998학년도 실업계 고교생의 전문대 탈락자가 12,000명임을 비추어 볼 때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4년제 대학도 실업계고 동일전형이 '98학년도 25대학 1,890명에서 '99학년도 56대학 3,7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그리고 무시험 전형제가 실시되는 2002년에는 학교장 추천제, 자격증 전형제, 동일계 진학확대 등을 통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은 실업계고 학생에게는 충분한 대학진학기회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보편화 된다면 2류라고 낙인찍힌 실업교육에 대한 이미지가 차츰 개선되

리라 생각됩니다.

-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직업교육의 축을 고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 확대하여, 고등학교에서는 기초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에서는 전공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학생개개인의 자기발전과 우수 산업인력을 양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 산업계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실업계고교 형태를 다양화하여야 한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우리 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실업계고에 2년제 과정의 병설 운영은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어려운 점이 있어 곧 바로 정책화되기 어렵지 않은가 사료됩니다.
-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설치되는 2년제 과정의 병설 운영 (즉 5년제 과정)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전문대학이 158개, 교육대학, 산업대를 포함한 4년제 대학이 190개가 있으며, 기능대학 등 다른 부처가 관할하는 대학을 포함하면 약 400여개에 가까운 대학이 전국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설치되는 2년제 전문대학과정을 병설·운영한다면, 실업계고교를 졸업한 학생 중 우수한 학생은 좀 더 나은 교육여건을 찾아 다른 전문대나 산업대, 또는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 실업계고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2년제 병설 전문대학 과정은 큰 인기를 끌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재정문제입니다. 전문대 과정의 여러 시설·설비·기자재 등을 구비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1개교 당 100억원 이상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며, 학생 학비감면, 교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학교 운영비 등 추가 비용이 수십억원에 이르러 10개 학교만 5년제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1,200~1,300억원 이상이 들 것입니다(현재 운영 중인 경기 여주자연농고 부설 농업전문교육원은 설립시 시설·설비비에 100억원, 연간 운영비로 매년 25여억원이 소요). 이러한 예산을 부담하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위원님이 제안하신 실업계고교의 5년제가 쉽게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부에서는 실업계고와 전문대학의 연계(2+2)를 통해 중복 교육과정 탈피, 직업교육의 역할 분담,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실업계고 졸업생에 계속교육 기회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현재 2+2 과정에는 16개 전문대학과 81개 고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4년제 대학을 포함한 2+2+2체제 도입 등 직업교육기관간의 연계를 확대·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한다면 위원님이 제안하신 5년제 초급대학으로 전환 또는 전문대학 2개년 과정을 병설운영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 우리 부에서는 위원님의 실업계고교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앞으로 실업계교육의 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질의 1)

교육정책 10대과제

(4-2) 교원인력의 수요는 현재 한국의 고학력 잠재인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충족할 수 있음. 현재 실업자를 위한 단기대책을 장기적 직장창출로 전환하여야 함.

(답 변)

- 현재 교원 수급상황을 살펴보면 초등은 매년 약 4,000정도 양성되고 임용률은 90% 정도로써 안정적인 수급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등의 경우 매년 약 25,000명정도 양성 대비 20% 정도의 임용률로 공급과잉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학력 잠재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원 정원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재정수요가 수반되는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
-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수교원 확보,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력 강화 뿐만 아니라 실업대책 차원에서도 보다 많은 신규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1)

교육정책 10대과제

(4-3)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올바른 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교의 정책과 연계시켜야 함

(답 변)

-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교육부 및 노동부 등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각종 사업 및 연구개발기능을 통합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부 및 노동부가 공동으로 설립('97.10)한 연구기관입니다.

- 그 주요한 기능으로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개발, 직업능력인증제도의 개발 및 평가·인정, 자격제도의 기준 등 정책연구 개발 및 정보공개,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 민간자격제도에 대한 평가·인정과 그 결과의 공시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위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실업계 고교의 직업교육 정책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기능이 밀접히 연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4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방향 설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고, 6월에는 '교육체제 개편에 관한 고교 직업교육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 부와 공동으로 교육과정 자율 실행 운영모형 개발 및 실업계고 교원의 현장적응력 제고 등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한 사업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부에서는 실업계고 직업교육 실태 분석 및 평가, 실업계고 직업교육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분야에 대해 직능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직능원의 역할 강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1)

교육정책 10대과제

(5) 교원정책은 획기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 교원 정책의 획기적 개선(사대, 교대 폐지 및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들 중 교사자격시험 실시, 강사제도 도입, 부적격교사의 합리적인 퇴직 권유, 모범교사에 대한 사기 진작, 능력에 따른 보수제, 교원자격체제 개편, 교장 별정직 임기제, 석·박사 학위소지자 교원자격 부여 등) 방안

(답 변)

-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지자들에게 교사 자격을 부여하여 초·중등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은 우수교원 확보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볼만한 사항임. 사대·교대의 폐지는 현행 교원양성체제의 기본적인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대학원 수준에서 교원을 양성하는 계획과 같은 선상에서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한시적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우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강사제도는 기간제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제와 함께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98.7월 현재 강사의 수는 4,945명입니다.
- 교원의 명예퇴직은 신청자 중 상위직급자, 장기 근속자 순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부적격 교원의 퇴직 권유와 모범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능력에 따른 교사 연봉제에 관하여는 교사평가제와 함께 심층 연구·검토하겠습니다.
- 교장의 보직제와 교사 직급의 단단계화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통한 교원자격제도의 개편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많은 예산이 수반됨. 그러나 교단 교사를 우대하고, 지나친 승진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교육계의 여망임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질의 1)

교육부 정책의 10대과제

(6) “정보화 교육정책”은 “교육행정의 정보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6-1) 정보화교육은 각급학교의 자율적 필요와 실제적이고 기초적인 지원요구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함.

(6-2) 교육행정업무를 전산화하여 학교에서 공문서 생산, 보고와 관련한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학교통계(성적처리포함)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부가 학교운명을 위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지 않는가?

(답 변)

1. 정보화 교육의 성패는 유능한 교원, 질 높은 S/W, 충분한 정보화기기를 여하히 확보하는가에 달려 있음

○이 중 학교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할 분야는 교원의 자율연수, 수업에 활용할 S/W의 제작, 그리고 정보화기기의 교내 배치 등 이라고 보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 자율연수를 공적 연수로 인정
- S/W 공모전 장려
- 학교장에게 자율배치권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

○다만, 물적기반 구축 사업인 학생실습용PC 및 교원용PC 보급, S/W 구입 그리고 교단선진화

사업은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하고 있어, 외형상 획일적인 보급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보나,

- 이는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의 정보화 마인드와 기기조작 능력이 불가피하므로 보급 사업자체를 학교의 자율에 맡길 일은 아니라고 봄

- 그러나 사업초기에는 학교, 지역, 교사 개인마다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인지도나 능력 그리고 선호도 등이 다를 것이므로 획일적 보급보다는 여건이 갖추어진 곳에 우선보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아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정보화기기 구입과정에 이를 충분히 감안토록 지도하였는 바, 이에 따라 교육청 또는 학교에 정보화기기 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등 학교단위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행정업무 전산화를 통한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학교운영 및 교원 연구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교육정보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이를 위하여 우리 부에서는 초·중등교원의 교수, 학습등 순수교육활동이외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교육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보급사업을 2000년 완료 목표하에 추진중에 있음.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보급사업이 완료되는 2000년 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통계(성적처리 포함) 전산화뿐만아니라 교원들의 전반적인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며, 또 투명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초·중·고등교육기관과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등 교육행정기관간에 교육관련 정보들이 서로 공유, 유통됨으로서 보다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나 교육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의 1)

교육정책의 10대과제

(7)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기본개념을 확립하라

(7-1) 대학을 ‘연구중심’으로 개선해야 하며, 고등교육기관을 ‘학부중심’과 ‘대학원중심’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7-2, 3) 학부중심대학에서 실용교양, 실용전공 교육에 치중한다는 것은 대학이외의 교육기

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답 변)

-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원중심대학 육성사업은 특정대학을 대학원중심대학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 특정대학의 특정분야를 대학원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한 대학에서도 대학원중심으로 운영되는 분야와 학부중심으로 운영되는 분야가 병존하게 될 것임.
- 또한, 학부와 대학원의 분리는
  - 그 동안 우리 대학들이 학부에 치중하여, 학부 중심의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대학원으로 투입되어야 할 학내 역량이 학부로 누수되는 현상이 나타나 취약하게 된 것으로
  - 학부와 대학원을 분리하더라도 상호협력을 통하여 대학의 연구기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할 것임.
- 학부중심대학의 실용교양, 전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 학문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21세기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질의 1)

고등정책의 10대과제

- (7-4) 고등교육을 기초학문분야, 전문분야, 특수직업분야로 분리하고,
- (7-5) 대학의 교양과정을 폐지하며, 대학원 입학자격을 자율화하여 국민의 교육기간을 단축하여야 할 것임.
- (7-6) 또한,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개입을 중단해야 할 것임.

(답 변)

- 고등교육의 근본구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추후 고등교육정책 수립시 참고하겠음.

(질의 1)

교육정책의 10대과제

- (7-7)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각 대학에 대한 '평균적' 지원에서 구체적 연구주체에 따른 연구단위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해야 함.

(답 변)

- 대학에 대한 평균적 지원이 의미없다는 위원님의 지적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점진적으로 대학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변경하여 재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질의 1)

교육정책의 10대과제

- (7-8) 국립대학에 편중 지원된 교육예산의 정책적 해소책은?

(답 변)

- 대학의 필요재원은 설립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립대학은 국가가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국립대학만을 지원하는 예산사업 이외에 대학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사업은 자구노력지원과 같이 전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정책목적상 중점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여 소수의 대학을 집중지원하는 방법으로 대학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립과 사립을 구분하여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 '97년도 주요사업비의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에 지원비율 42.3 : 57.7
- 앞으로 전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구노력사업과 공·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시설·설비확충사업의 예산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많은 대학이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1)

교육부 정책의 10대과제

- (8) 교육방송은 과외교육을 폐지하고 사회교육의 매체가 되어야 한다

(답 변)

- 현재 교육방송은 지상파 TV와 FM-Radio, 위성1-2TV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 내용은 학교교육 보완 방송(위성1-2TV)과 평생교육 방송(지상파 TV, Radio)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음
- 한국교육방송원에서 이미 지상파 TV와 Radio방송으로 사회교육방송을 지금도 실시하고 있음
- 위성 1-2채널로 제공되는 과외방송은 소외지역에 대한 균등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국민의 사교육비도 경감할 수 있다는 의도로 '97.8 위성교육방송을 실시한 후 1년 남짓 되었기에 지금 당장에 이를 폐지하기는 성급하다고 보며, 앞으로 대학입시체도의 변화에 따라 과외위주 성격의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개성과 학생 개인의 특성 개발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질의 1)

교육정책 10대과제

(9) 새교위는 옥상 옥의 비선 조직이므로 즉시 폐지하여야 한다.

(9-1) 장관은 기존 교육부의 공식조직을 통해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면 사직함이 옳지 않은가? 새교위의 주요기능은 교육부 공무원의 직무와 중복됨으로 옥상옥의 비선 조직은 폐지되어야 한다.

(9-2) 교육개혁은 바로 교육부의 고유업무이며 고유기능이므로 새교위는 또다른 허례허식의 유명인사를 양산할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소신과 전문성 그리고 창의성을 무력화시키며 따라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됨.

(9-3) 새교위 시민운동 또는 국민운동으로 전개하려고 하면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민간조직이 되어야 하며, 이의 구성에 정부는 관여하지 말아야 함.

(답 변)

○새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는 학교 현장의 교원은 물론 학부모·지역사회·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실천적 교육개혁 추진을 목표로 하여, 국민 의식 개선 및 범시민운동 지원·촉진에 중점을 두고 98.7.24일 대통령 자문기구로 발족되었음.

○그 주요 기능은

- 새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민의식 개혁운동에 관한 사항
- 교육개혁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교육개혁 추진과 관련된 홍보 및 연수에 관한 사항
- 교육개혁을 위한 시민운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개혁에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서 중앙부처와 같은 정책개발·수립기능 보다는 국민의식 개혁운동, 시민운동 활성화, 교육개혁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등 실천·홍보 위주의 기능을 하게 추진을 연계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지역적으로 자발적·점진적인 조직화 움직임을 보이는 시민모임에 대하여 전문적 정보제공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임.

○시민운동 및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 등의 구성운영은 다소 시간이 걸려도 자생적 민간 주도적 운동체로 자리잡아 자체의 생명력과 신뢰를 통하여 활성화 되도록 기다리는 인내가 필

요하며, 정부는 관여하지 않을 것임.

(질의 2)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에 관한 질의서  
 (1) 초·중·고 교육의 문제점  
 ○과밀학급, 과대학교, 2부제수업, 컨테이너학교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답 변)

○'98년 학급당 학생수가 51명이상인 학급은 22,491 학급이고, 초등학교 2부제수업은 111교에 788 학급이며, 학교신설 및 교실개축 등에 따라 임시적으로 컨테이너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학급은 386 학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20-30명인데 비하여 우리 나라는 평균적으로 '98년 초등학교 35.7명, 중학교 43.4명, 고등학교 52.6명으로 선진외국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수준으로 개별화학습 또는 수준별학습을 실시하는데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98년부터 장기발전계획으로 “학급당 학생수의 단계적 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까지 11조원을 투자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학교 30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최근의 경기침체로 '98년 지방교육재정이 당초 예산보다 1조9,000억원 이상 감소하였고, '99년에도 1조원의 예산이 감소하여 초등학교 2부제 수업 및 과밀학급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 확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의 초등학교 2부제수업 및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2~3년내 학생자연감소, 학교부지 협소, 동일 학구내 학교신설 예정 및 일시적인 인구밀집지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98년도 제2차 추경으로 지원된 2,000억원으로 대부분 해소하였으며, 컨테이너 교실은 2000년까지 학교 신·증설로 해소될 계획입니다.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 조세체계 개편시에도 교육세를 폐지하지 않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여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하고
- 시·도세 2.6% 해당액이 계속 전입되도록 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상경비의



삭감,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 등 예산분석을 통하여 교육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2)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에 관한 질의서

(2) 교육환경 문제

○ 쾌적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과외, 학교폭력, 체벌, 촌지' 중 장관께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외, 학교폭력, 체벌, 촌지 등은 우리 교육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
- 불법 과외 문제는 2002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입 무시험 추천제가 확대 실시되고, 초·중등 학교에서 새학교문화창조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 학교 폭력도 지속적으로 예방지도를 편 결과 작년 대비 18%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앞으로는 검·경 등 유관기관, 학부모 단체 등과 합의를체를 유지하여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 담임교사의 상담활동 및 상담전담 교사의 활동을 강화해 가면 폭력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사료됨
- 촌지문제도 취임 후 꾸준히 근절대책을 편 결과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반응임 ('98.6월 설문조사에서 조사자의 63.1%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함)
- 교사에 의한 체벌도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며, 학교 교육 당사자들이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스스로 제정하여, 시행해 갈 예정인 바 앞으로는 체벌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됨

(질의 2)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에 관한 질의서

(3) 학교폭력 해결 방안

○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답 변)

- 학교폭력의 예방·근절을 학생생활지도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는 우리 부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년도 같은 기간과 대비하여 약 17% 감소('98.9 현재)하였지만 아직도 일부 학생들 사이에 폭력과 집단괴롭힘이 잔존하고 있는 바,
  - ※대검찰청 발표는 20.3% 감소

-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우리 부는 우선
  - 학생회, 학부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근절 활동을 강화하고
  - 대안학교(특성화학교)의 설립 기준을 더욱 완화하고 운영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 장기적으로
  - 새학교문화(교육비전2002) 정착으로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서 '소질·적성 개발' 교육으로 전환하여 부적응/일탈 학생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학생간 갈등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학교문화를 육성하며
  - 전교원의 담임제 및 상담교사화를 추진하고, 상담관련 연수를 강화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문상담교사의 수업시수를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상담 전담화를 추진해 나가겠음

(질의 2)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에 관한 질의서

(4) 학생체벌의 문제점

○ 체벌 금지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답 변)

- 우리 부는 '97년 2학기 이후 선도위주의 징계제도를 운영하고, '98.3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시 체벌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민주적 학생지도를 위한 장학지도를 강화하는 등 체벌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지만 아직도 관행적 체벌이 학교 현장에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우리 부는 학교현장의 체벌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 교사를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7항의 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체벌 금지를 위한 교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교원연수시 체벌 관련 강좌를 도입하여 자유토론등을 통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며, 수습교사제 시행시 학생지도 방법의 평가를 확대할 예정이며
  - 강원도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비롯, 일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체벌 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 참여의 민주적 학교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비민주적 학칙을 개정하여 학칙과 규범이 자발적으로 준수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육성하며,
- 장기적으로 새학교문화(교육비전2002) 창조 운동

을 토대로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존중하는 학생지도방법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음.

(질의 2)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에 관한 질의서

(5) 촌지 관행 문제

- 촌지수수 이유에 대한 견해
- 촌지 해결 방안

(답 변)

○ 촌지수수는 스승존경의 책거리 문화가 잘못된 관행으로 변질되어 일부 학부모가 자기자녀에 대한 이기적인 과욕과 피해 의식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특정지역의 극히 일부 교사가 학부모에게 금품 기대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그릇된 의식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촌지문제는 물리적 방법으로 문제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들이 촌지를 근절하려는 의지와 자성이 있어야 하겠으며, 학교운영위원회와 민간단체 등을 통해 학부모들을 계도하고, 교사들에게는 촌지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용히 촌지추방운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 \* • 최근 여론조사(한국교육개발원 '98.6)의하면 학부모 대부분(63.1%)이 “촌지가 줄어들었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 신문캘럽조사('98. 8)에 의하면 “촌지를 안줬다”에 87.4%로 반응되어 촌지가 격감되고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8.3%의 교사들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반응을 볼 때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2)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에 관한 질의서

(6) 과외/사교육 문제

- 과외의 원인과 근절 대책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답 변)

○ ‘초·중등 학생의 과외수업 실태 분석’(’97현안 조사 결과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한 초·중등 학생의 과외 수업을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음

- 학생의 입장에서 과외를 하는 원인으로 ‘모자라는 과목 실력 보충을 위해서(81.5%), 집에서

공부를 도와 줄 사람이 없어서(9.1%), 다른 친구들이 하니까 안하면 불안해서(3.9%)’를 들고 있으며

- 부모의 입장에서는 ‘치열한 입시 경쟁(58.2%), 소질과 적성 신장(15.3%), 남들이 하니까 불안해서(14.6%), 맞벌이로 자녀 지도 시간이 없어서(6.3%)’등을 들고 있음

○ 과외근절대책

- 우리 교육부에서는 불법 과외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기 대책으로, 과외가 가져다주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저해하고, 지나친 경쟁위주의 인성을 기르는 등의 과외 폐해를 홍보하여 과외를 예방하도록 하며,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학교밖 과외를 학교안으로 흡수하도록 하며, 불법 과외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 장기 대책으로는 무시험 대학입시제의 확대 실시를 통하여 과외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은 물론, 새학고문화창조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토론식, 주제탐구식, 소집단 학습식 등으로 바꾸고, 평가에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중요시하는 수행평가를 점차 확대 실시하여 과외를 받을 필요가 없는 학교 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

(질의 2)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에 관한 질의서

(7) 취학 연령 문제에 대한 질의요지

- 현재 만5세에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학생수가 얼마나 되며, 취학 연령을 만5세로 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답 변)

○ 수요자중심의 열린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96학년도부터 학습능력을 갖춘 만5세 아동에게 조기입학을 허용하여 아동의 조기성장 발달 도모와 학부모의 취학전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만5세 아동의 조기 취학 학생수는 '96학년도에 5,661명, '97학년도에 5,798명, '98학년도에 7,948명으로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초등학교에서의 취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취학연령을 낮추기 위해서는 학제를 바꾸고, 교육과정을 개편해야하며, 늘어나는 아동을 수용

하기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 교사의 확보 문제 등 많은 예산과 준비가 요망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 2)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에 관한 질의서

(8) 남녀공학 문제

○남녀공학에 대해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남녀공학의 문제점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교육부에서는 학교교육에서 남녀 평등한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고등학교를 공학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학교 신설시 남녀공학을 권장함.
- 남녀학생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남녀 공학 교육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되어 남녀평등한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의 도입이 시급하였음.
- 이에 제7차 교육과정에서 평등교과 및 지침서를 개발하여 각급학교 교수-학습 단계에서 남녀평등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며 교사들의 각종 연수시 남녀평등 의식교육을 강화하는 등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함.
- 또한 남녀공학의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금년 11월 중 『성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성교육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방침임.
- 이와 함께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에 즈음하여 선포할예정인 『학생인권선언』에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

(질의 2)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에 관한 질의서

(9) 자퇴/퇴학학생 복교 문제

○문제학생들에 대한 선도방안과 자퇴/퇴학 학생 방지대책, 복교후 재탈락 방지 계획은?

(답 변)

- 우리 부는 '97년 2학기 이후 선도위주의 징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98년 들어 중도탈락생의 복교가 용이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전향적으로 개정('98.3.1)하고, 2회에 걸쳐 중퇴생 복

교 특별추진기간을 설정·운영한 결과

- 중도탈락생의 수가 감소하고('97년도 중퇴자 66,053명→'98 상반기 중퇴자 22,998명)
- 복교생수가 증가('97년도 복교생 15,973명→'98 상반기 복교생 10,090명)
- 재탈락률도 감소하는 등('97년도 재탈락자 4,996명→'98 상반기 재탈락자 1,428명) 중퇴복교생 예방 및 복교정책이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 우리 부는 앞으로도 중퇴생 예방 및 복교정책을 학생생활지도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 대안학교(특성화학교)의 설립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민간 참여를 늘리고, 운영에 있어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학교교육에 적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중퇴복교생에 대한 후견인 결연지도와 1교사 1학생 지도 등 책임지도를 강화하며, 민간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심성수련 등 효과적인 적용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조치해 나갈 예정임.
- 장기적으로 새학교문화(교육비전2002) 창조 운동이 정착되면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을 개혁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전교사의 담임제 및 상담교사화 등 상담활동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부적응 학생이 원천적으로 해소되리라 기대함.

(질의 2)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에 관한 질의서

(10) 교복착용에 대한 인식

- 교복착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 교복업자 선정 비리근절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우리 부는 교복을 선정함에 있어 학교구성원간의 민주적 합의질서를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 교복을 선정할 때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색상과 문양 등을 결정하고
  - 구입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자유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교복선정시 현재 많은 일선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 자유투표 등 민주적 의사수렴방

법이 일반화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교복 선정을 둘러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위에서 강조한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2)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에 관한 질의서)  
 (11) 초·중·고 학제 문제  
 ○장관께서는 초·중·고 학제변경에 대해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인지?

(답 변)  
 ○우리 나라 학제는 광복이후 50년대 초반까지 6-6-4제, 6-4-2-4제 등 다소 실험적인 학제를 운영하기도 하였지만, 6-3-3-4제를 기간학제로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 동안 급속한 경제발전, 사회변화와 함께 국민들의 교육 욕구도 다양화·다변화됨에 따라 학교 유형, 학제, 학기 등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그러나 학제 변경 등의 문제는 교육과정 정책, 교원 정책, 학교시설 정책 등 교육체제 전반에 걸친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 등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신중히 검토 추진할 과제라고 사료됨  
 ○현재까지는 학제 변경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학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있는 제안이 제시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 2)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에 관한 질의서  
 (12) 초등학교 조기 영어교육 실시  
 ○학생들의 적응  
 ○도·농간의 형평성  
 ○원어민 교사 채용  
 ○교사들의 부정적인 견해  
 ○장관의 견해와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답 변)  
 ○'97년도 1년간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한 후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의 참여도와 흥미도가 80~95%이상인 목표에 도달하였고, 타 교과보다 선호하여 흥미를 갖고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응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등학교 영어교과가 정규 교과로 채택되기 전에 도시지역의 학생들은 학원 등에서 영어 학습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으나 농·어촌의 학생들은 기회 조차도 갖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농 구분없이 정규 교과로 편성하여 지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대다수의 학부모들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정규 영어교과시간에 원어민이 직접 영어를 지도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자격 외국인 원어민 교사 채용으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초등영어가 '97학년도에 정규교과로 편성되면서 영어 지도에 자신이 없는 일부 교사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120시간의 기본연수와 120시간 이상의 심화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54,350명 이수).

한편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영어교과를 기본적으로 1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고 희망자에게는 21학점의 심화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이들이 임용되는 시기에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82년도부터 특별활동 시간에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지도해 왔으며 특별활동 영어 담당교사들은 일반연수와 자율연수를 통하여 꾸준히 지도법을 익혀 지도능력을 축적해 왔습니다.

- 특별활동 영어교육 실시학교('96년) : 95.2%
- 방과후 상설 영어반 운영('96년) : 70.2%

○빠르게 변하고 있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영어는 국제적으로 공용화된 언어이나 우리의 경우 중학교에서부터 6~10년간 영어를 배우고도 실질적인 의사소통이 안되어 별도로 학원을 다니며 영어회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어교육 방법과 정책을 바꾸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점은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영어교육의 질을 높여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전담교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심화연수 강화로 전담교사수를 더욱 확충함으로써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여 주고, 영어교육을 내실화하여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초등영어 교육 정착에 노력할 것입니다.

(질의 2)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에 관한 질의서

(13) 특수목적고 문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답 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목적은

- 교육의 수월성 추구
- 특수 재능아의 조기 발굴과 육성
-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개성 중시 교육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양성 등에 있음.

○현재 특목고 3학년 학생들은 「새대입전형제도(’95.12.19)」 시행에 따라 비교대신제가 폐지되고,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이 대학에 일임됨을 알고 입학하였음.

○그러나 이전에 실시하던 비교대신제로의 회귀 등 특혜를 기대하다가 그 실현이 어려워지자 자퇴 등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가 일어나고 있음.

○교육부로서는 특목고가 원래의 설립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이며, 대학입시 준비기관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임.

○특목고 졸업생에 대해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문제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임.

(질의 2)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에 관한 질의서

(14) 특성화고 및 대안학교 확대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계획과 향후 확대운영 계획은?

(답 변)

○먼저 특성화(대안)학교의 확충 및 재정지원 등 소외계층의 교육부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는 ’96년 말부터 중퇴자의 종합교육대책의 일환으로 특성화(대안)학교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97.9월부터는 최소한의 설립기준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학교설립을 인가해주는 “학교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특성화(대안)학교는 학년당 20명의 미니학교도 설립이 가능하고, 운동장이 없어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특색 및 실정에 맞는 특성화(대안)학교를 설립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공립 대안학교 신설시 약 80억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부득이 민간의 설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98.7월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도서·벽지 지역외에 읍·면지역 소재 폐교재산도 수의계약으로 학교법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민간의 특성화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성화(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반 사학과 같은 수준의 재정결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금년도 신설한 대안학교는 설립주체의 재정이 영세하여 교육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지난 9월말 교육시설의 확충,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 교육활동 활성화 경비로 총 25억원을 특별지원 한 바 있습니다.

(질의 2)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에 관한 질의서

(15) 교장임기제도의 문제점

○교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고 교장임기제도의 개선과 대폭적인 권한위임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교장임기제는 교직사회의 신진대사 촉진을 위해 ’9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그간 중임심사의 형식화, 교장의 고령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교장의 고령화 문제는 정년이 조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며, 중임심사의 실질화를 위해서 새로운 교장평가방법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5.8월 1차 임기만료자 및 중임자

- 임기만료자 3,819명
- 중 임 자 3,749명(98.2%)

○학교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폭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에서는 권한 위임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 2)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에 관한 질의서

(16) 교장초빙제도의 문제점

○원래의 교장초빙제도가 왜곡되어 가고 있는 듯 한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구미전자

공고 교장초빙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교장초빙제는 '96.9월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시범 실시 결과를 토대로 확대 실시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교장초빙제 실시로 학교경영이 투명해지고 학교 여건이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 학교장의 임기연장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고
  - 학교운영위원회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로 소신 있는 학교경영이 어려우며
  -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대한 초빙 기피로 학교간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사기능을 보완토록 하고, 초빙학교에 대한 학교운영의 자율권 확대 및 행·재정지원 강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구미전자공고의 교장초빙의 경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정보화·세계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하는 첨단산업교육과 특성있는 공업고교 육성 및 직업교육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국립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가 그 선도적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학교장 초빙제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추천된 2명 중 동교에 재직중인 "이우성"교감을 지난 10월1일자로 초빙학교장으로 임용케 되었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초빙교장 임용후보자 선출 편파성 문제는
  - 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초빙교장 선출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 1차 심의 단계부터 특정인에 대한 선호와 편견을 없애기 위해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여 추천인원의 2배수(4명)를 선정하고
  - 2차 심의 단계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견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검증기회를 마련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측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학교장 초빙제가 아직은 시범 실시되고 있는 점과 일선 교육현장의 미숙한 비민주적 환경으로 인하여 그 운영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소

- 지가 있다는 지적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 당해 학교에 재임하고 있는 현직 교원이라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초빙교장 후보자 피선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도록 하고
- 지역출신, 모교출신 등 연고자를 초빙하거나 정년보장성 등으로 초빙교장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동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번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장 초빙 임용 과정에 있어서 최종 추천된 2명의 초빙교장 후보자는 모두 30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가지고 공업계고등학교에 다년간 재직한 경력이 있고, 교감 또는 교장 등 관리직을 두루 거쳐 학교경영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 당해 학교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학교경영을 위해 일관성있는 시책추진을 위한 근무기간(연령) 등을 감안하고
- 학교장 초빙 실시 취지와 학교운영위원들의 대표성, 지지도,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협조관계 유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 학교단위의 자율성 신장을 복돋아 주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과정을 존중해 줌으로써 민주성에 바탕한 학교발전을 유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 순위 1번인 현임교의 교감 "이우성"을 동교 초빙학교장으로 임용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향후 동 제도가 교육현장에서 소망스런 학부모 참여의 민주적 의사결정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으로 도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 2)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에 관한 질의서  
 (17) 유아교육 확대 실시  
 ○현재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황과 향후 계획  
 ○유치원 공교육 실시 문제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운영(감독권 이양문제 등)에 대한 입장

(답 변)

- 현재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황과 향후 대책
-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계획
  - '98~'99년도 중에 유아교육 투자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우선 마련하고

- 2000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를 늘려나가 2005년까지는 모든 만 5세 유아가 질 높은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음
- 유아학교 체제의 도입은 여론의 추이 및 재정지원 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음.

□유치원 공교육 실시 문제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운영(감독권 이양 문제 등)에 대한 입장

■유치원 공교육 실시

○유아기는 인간의 지적·정의적·사회적 기초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선진 각국들은 이 시기의 교육적 투자를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시 하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 나라는 그간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투자가 미흡한 실정에 있으며, '98년4월 현재 유치원 취원율(만 5세아 기준)은 43%에 머물고 있는 형편임.

\* 만 5세 대상자 715천명중 유치원 취원자는 305천명(42.7%). 단,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 176천명(24.6%) 포함시 67.3%

○또한, 유치원 시설의 대부분을 사립에 의존하고 있어 젊은 학부모에게는 유아교육비가 과다하여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 도시 저소득층, 농·어촌 등 낙후지역 거주자에게는 경제적 이유, 유치원 시설의 부족 등으로 유아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유치원 총 8,976개원중 사립 4,541개원(50.6%), 원아 534,060명중 사립 401,492명(75.2%)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유아교육체제 정비를 통하여 유치원 취원율을 제고 하려는 계획을 국정 과제로 채택 추진중에 있음.

\* 유아학교체제 도입(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 희망보육시설의 유아학교화)

\* 유아교육진흥시책 추진(투자확대)

○다만, 최근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업 착수 시기는 다소 늦추어 질 수밖에 없게 되었으나,

- '98~'99년도중에 유아교육투자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우선 마련하고

○2000년 부터는 단계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를 늘려나가,

- 2005년까지는 모든 만 5세 유아가 질 높은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음.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운영에 대한 입장

○우리 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일종인 유치원에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직전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높고, 사립유치원 운영경비를 전액 학부모 부담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여론이 높음.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업모에 대한 아동보육(탁아)을 위해 0세~6세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 유치원(특히, 종일반)과 대상연령이 중복되며, 어린이집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대해 교육의 질적 차원에서 우려하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임.

\* 어린이집 수 : 8,037개소

○근년에 들어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유아교육 대상 연령을 대개 만 3~5세로 규정하고 유아교육을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 일정한 국가 수준의 유아 교육과정에 의해 유아교육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봄.

○다만,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 실질적인 투자진흥시책의 추진 및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보육시설 운영자들의 인식전환, 보육시설 위축을 우려하는 여성단체등의 이해 등 사회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보며

- 유아학교체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론수렴과 아울러 충분한 시간여유를 갖고 신중히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의 2)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에 관한 질의서  
 (18) 열린교육의 문제점  
 ○열린교육 문제점은 제도 자체 보다 시행상 교원 업무과중에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견해와 열린교육의 문제점과 향후 확

대 계획은?

(답 변)

○우리 나라의 열린교육은 10여년전부터 교원 스스로 실천해온 교육운동으로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실천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벽지학교에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열린교육을 처음 실시할 때 나타나는 업무과중의 문제는 초기 실천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나, '97년부터는 각 시범학교(326교), 시범교육청(16교육청 857교), 협력학교(775교)를 통해 전국 초·중등학교를 네트워크하고, 각 시·도교육청별 열린교육 정보자료센터 등을 설치하여 각종 교수-학습 자료의 원활한 호환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이전에 자율적으로 실천할 때보다 교사 업무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열린교육의 실천으로 교사들은 힘은 들지만 교사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음.

○문제점

- 학급당 인원수 과다로 학습의 개별화에 한계
- 초등의 경우 교과가 많아 교사 1인당 자료 준비가 많음.
- 초등학교 와 중등학교 간 연계교육이 잘 안되고 있음

○향후 대책

- 각급 학교별,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자기 주도적 열린교육 모델 제시
- 시범·연구학교 우수자료 에듀넷 탑재 및 CD-Rom 개발·보급으로 업무 경감
- 2002년 대학 무시험 전형 확대와 함께 중등학교까지 열린교육 확대 실시.
- '99 겨울방학중 「새 학교 문화 창조」와 더불어 중등 열린교육 활성화를 위한 집중 연수 실시

(질의 2)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에 관한 질의서

(19) 학교운영위원회 문제점

○현재 심의기구인 학운위 제도를 자문기구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에 대하여 자문기구, 심의기구, 의결기구 등 입장에 따라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음

○자문기구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구할 것 인지의 여부와 그 결과를 수용할 것 인지의 여부를 학교장이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학교장의 의사 결정 보조기구이므로 학운위 제도의 도입취지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학운위를 자문기구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의결기구 또한 회의 내용이 학교장의 권한을 기속하므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곤란하다고 판단됨

○학교교육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학교장에게 맡겨야 한다고 볼 때, 현행과 같이 심의기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 2)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에 관한 질의서

(20) 먼저 해결할 교육정책

○장관계서는 임기동안 교육환경 개선이나 대학입시제도 개선 정책 중 우선순위로 먼저 해결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 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진과제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고, 관점에 따라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그러나,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과제가 유기적,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고, 동시에 관련정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임

○특히, 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대입제도 개선, 교사의 자질 함양과 사기 진작, 학교교육 여건 및 교육과정 개선 등의 과제는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림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환경개선과 대입제도 개선정책의 우선순위 문제는 상호 배타적이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과제이므로 동시에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3)

교육부 소속공무원 전화응답 친절도 조사

○교육부 소속 공무원 전화응답 친절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국민 친절도가 높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답 변)

○교육부에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공무원의 친절자세 확립을 위하여 직장교육을 통해 친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외 민원인에 대한 일부 직원들이 아직까지 친절자세를 갖추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교육부 자체 점검·평가를 수시로 실시하고 직장교육을 강화하여 교육부 소속 전직원의 친절자세 의식을 고취하고 대국민 봉사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 아울러 자체 점검결과 개선사항을 즉시 해당기관에 조치하여 신뢰받고 책임있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애정어린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5)

일선학교 현장의 목소리

1. 교과 전담교사 감소에 대한 대책?

(답 변)

- 우리 부에서는 초등학교 교원의 수업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97년2월 교육법시행령(현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을 “4학년이상 매3학급마다 0.75인”을 “3학년이상 매3학급마다 0.75인”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국가 경제위기를 맞아 공무원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우리 부에서는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법정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교원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5)

2. 교원정년, 명퇴,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불안하다.

(답 변)

- 지난 11월3일 “기획예산위원회”에서는 교원정년을 60세로 단축할 것을 의결하고 우리 부에 추진을 요청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시·도교육감 간담회, 교육정책심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부의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 또한, 정년단축에 따른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5)

3. 교사 정년은 인성교육에 적합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정해야 한다.

14. 고령교사 불안-(인성교육-도덕적, 정서적) 전문성 무시  
 94. 65세 정년 준수하라

(답 변)

- 지난 11월3일 기획예산위원회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할 것을 의결하고 우리 부에 추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이에 우리 부에서는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 교원 수급계획 등 관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 5)

4. 49, 83 교원의 사기 양양

22. 교원의 업무량 과다-실적위주, 지시위주-비교육적

87. 보고공문기일 짧다.(포상이나 해외연수 차출 등의 경우)

(답 변)

-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91년에 “교원의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면서 국무총리지시사항으로 교원예우에관한지침을 각급기관에 시달하여 각종 행사 및 교원에 대한 사전조사에서 교원을 우대하고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단체와의 교섭·협의를 제도화하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연 2회 정기적인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은 사실이며, 동 특별법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언론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계속 노력할 것임.
-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의 가장 큰 요인은 공문서 유통량 과다이며, 이의 감축을 위하여 교원의 업무경감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그 성과가 뚜렷이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공문서 유통 관리의 편리 및 학교행정 처리의 적정을 위해 이미 구축된 교무업무 지원 시스템, 교육정보 유통 시스템 등 학교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이 적극 활용되도록 하고, 아울러 각종 보고의 일몰제 실시, 보고요구 문서의 심사 강화, 회보의 활용 확대, 불필요한 각종 계획서와 실적보고 폐지, 교육관련 유관단체의 업무협조 자체 요청 등을 통하여 공문서 유통량을 감축하며, 앞으로 학교행정개선선도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확

산, 보급하며 업무경감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것임.

○포상이나 해외연수 대상자 차출 공문의 보고 기일이 너무 짧아 학교 현장 교사들의 참여 기회를 고의로 박탈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모든 행정의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예) '99.2월말 정부포상대상자 추천 의뢰 공문(교양 12151-628)의 경우, 공문발송 : '98.9.22, 대상자 추천접수 : '98.11.19

○다만, 국감자료와 같이 신속을 요하는 경우는 교육부-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를 거쳐 다시 교육부까지 제출해야 할 때 학교 현장에서는 공문을 받자마자 보고해야 하는 특이한 경우가 발생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5)

- 5. 학급당 학생수가 너무 많다
- 76. 시설에 비해 학생수가 많다

(답 변)

○'98.4.1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51명이상인 학급은 22,491학급이며, 초등학교에서 2부제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111교에 788학급입니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는 20-30명인데 비하여 우리 나라는 평균적으로 '98년 초등학교 34.9명, 중학교 40.8명, 고등학교 48.2명으로 선진 외국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수준으로 개별화학습 또는 수준별학습을 실시하는데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98년부터 장기발전계획으로 「학급당 학생수의 단계적 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까지 11조원을 투자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학교 30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최근의 경기침체로 '98년 지방교육재정이 당초 예산보다 1조9,000억원이상 감소하였고, '99년도 1조원의 예산이 감소하여 신도시 등 학교없는 지역의 학교신설, 초등학교 2부제수업 및 과밀학급 해소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의 5)

- 6. 대형학교보다 미니학교가 필요하다.

(답 변)

○대도시 고밀도 지역의 과대규모학교 및 과밀학급을 해소할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적극 고려

○교육부의 '98 정책연구과제로 채택하여 연구추진

-연구책임자 : 윤천근 교수(동원대)

-공동연구원

- 김득선 박사(동우건축연구소)
- 박영숙 박사(교육개발원)

(질의 5)

8. 교단선진화사업 허실→자료부족, 전문가 부족, 예산낭비

-1학년 12반, 1주일 2번 과학, 교육학 자료 화면

-컴퓨터 1, 멀티 1, VTR 1.

-담임은 멀티 사용할 줄도 모르고 모니터 설치장은 수령시 그대로 먼지가 뽀얗게 쌓임. 사실상 사용하지 않음

(답 변)

○교단선진화사업은 교육정보화 시대에 초·중·고등학교의 일반교실에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적절한 교육기자재의 보급과 현장교사의 활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지속적이고 대폭적인 교사연수 및 양질의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보급에 있음.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98년도부터 모든 초·중등 교사의 1/4(25%)씩을 4년을 주기로 계속 정보활용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정보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보급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는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초·중등학교용 사이버학습 교재를 '97년 11교과, '98년 14교과를 개발 보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초·중등학교 전교과에 대한 사이버학습 교재를 개발 보급할 계획임

그리고, 학교 현장 교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공모전을 통하여 '97년 340편, '98년 450편을 공급하였고 '99년 이후에도 계속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민간 업체가 개발한 다양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학교에서 직접 선정하여 구입 활용할 수 있도록 교당 100만원씩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확보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음.

○본 사업은 당초 '97-'99년까지 3년간에 걸쳐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재정의 어려움과 교사의

활용능력 신장에 맞추어 '97-2002년까지 6년간으로 보급기간을 연장하고, 획일적인 보급 방법에서 교사의 활용능력,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으로서의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한 활용에 중점을 둔 보급 방안을 수립하여 멀티미디어 기자재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교수-학습 환경을 개선하겠음

(질의 5)

9. 생활기록부는 “TV는 사랑을 싣고”용으로 무의미하다.

(답 변)

- “TV는 사랑을 싣고” 프로는 은인을 찾아주는 TV 프로이며,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기록한 법정 장부임
-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와 “TV는 사랑을 싣고” 프로와는 무관함
-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에 대한 교수-학습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활동 결과를 기록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료로서 상급학교의 진학, 취업등의 자료로 활용
- 2002학년도부터 대입무시험 전형제가 실시되면서 이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 단매식에서 다매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정책연구 의뢰하여 늦어도 '99년2월까지의 새 학교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질 것임

(질의 5)

10. 시·도별 평가제

- 인성교육을 서류심사로 평가할 수 없다.
- 교육은 결과이며 그 결과를 미리 수치로 평가할 수 없다.
- 수치화, 계량화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다.

(답 변)

- 교육개혁 차원에서 '9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시·도교육청 평가는 지방교육자치의 실시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의 “자구노력”을 촉발시켜 학교현장의 발전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행·재정지원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우선 위원님께서 “인성교육을 서류심사하여 그 결과를 미리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신데 대하여는  
- 인성교육은 특정교과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

다는 모든 교과영역을 통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제반 교육 과정 및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였던 것입니다.

- 아울러, 양적인 평가보다는 질적인 평가를 위하여 서면에 의한 평가이외에 현장방문평가등을 통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단위기간의 변화도(flow)”를 중점 평가함으로써 “결과”보다는 “과정에서의 노력 정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5)

11. 서무직원은 학교장권한 밖의 인사문제이다.

(답 변)

- 국·공립의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는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자인 교장 밑에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교육공무원과 교육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직종은 각각의 임용제도와 근무체계를 갖고 있으며 실제 일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도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교장은 일반직원의 직상급자로서 이들에 대한 근무평정시 평정자가 되며, 각종 포상의 추천자 또는 조사자가 되는 등 인사관리에 관여하고 있어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보임용 및 교육훈련을 제외한 복무관리에 있어서는 상급자로서의 감독 및 평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5)

12. 새물결 운동의 문제점

- 77. 새물결 운동은 업무량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다
- 96. 서울시교육청 예산 집행이 비생산적이다(선도학교 7~8,000만원, 35억원)

(답 변)

- 새물결 운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업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함.
- 『중학교 교육 새물결 운동』은 중학교 교육 방법을 혁신하기 위하여, 체험중심의 인성 교육,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 방법 혁신, 생애 교육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진로 교육, 교원·학부모의 의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중학교교육 새물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제별 선도(거점)학교를 지역교육청당 1개

교, 총 55개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 선도(거점)학교는 과제별 특성에 따라 3,000~7,000만원의 예산(총 29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선도(거점)학교에서는, 이 예산을 지역교육청 관내 모든 중학교를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과 보급, 교원·학부모 연수에 사용하고 있음.

(질의 5)  
13. 명예퇴출과 교사수급문제에 대한 대책

(답 변)

- 초·중등 교원 명예퇴직은 '97년까지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98년도 큰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교원 명예퇴직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학교급별	'95	'96	'97	'98
초 등	1,741	1,320	964	3,299
중 등	577	602	638	1,848

- 현재의 교원 수급현황은 초등교사의 경우 목적형 양성체제로 안정적인 수급 균형을 유지(매년 약4,000명정도 양성→90%정도 임용)하고 있으며, 중등교사는 개방형 양성체제로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매년 약25,000명정도 양성→20%정도 임용)되고 있음
- 따라서 중등교사는 명예퇴직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현재의 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초등교사의 경우는 명예퇴직이 '99년도와 같은 추세로 이어진다면 일시적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단기적 공급부족 대처 방안으로는 기간제교사,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 탄력적 교사제도 활성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시교원 양성소에서 연수시켜 초등교과전담교사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함
- 중·장기적으로는 학생수가 감소되는 추세이므로 공급부족현상은 해소되리라 예상되나 교육대학 경쟁체제 강화와 연계하여 교육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자 함

(질의 5)  
15. 교육개혁 -수요자 중심교육은 문제 있다.

(답 변)

- 교육개혁은 이제 세계적 추세가 되어 가고 있음. 우리보다 앞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선

진 각국에서는 다가올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 국가의 경쟁력은 교육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의 방향도 교육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음
- 학부모와 학습자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체제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중국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혀 간다는 구상임
- 이러한 추진 방향의 설정은 기존의 우리 교육이 교육공급자인 학교 및 교원과 교육행정기관의 편의를 중심으로 교육 체제가 구성되어 왔고 또한 과도하고 획일적 규제에 치우쳐 학교교육의 비효율을 초래함은 물론 수요자인 학부모, 학생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음
-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제화함은 물론 학습자중심의 교육과정의 선택, 학교 종류의 다양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적 추진 방식에 의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음.

(질의 5)  
16. 교사평가제 문제있다.

(답 변)

-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교원 평가제는 직근 상급자만에 의한 연공서열 위주의 현행 인사제도를 능력과 실적위주로 개선함으로써 유능한 교원이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교사·학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에 의한 교장·교감평가제도입니다.
- 동 제도가 성공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여러 상황에 대한 보완방안이 마련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우리 부에서는 평가의 타당성·객관성·신뢰성 등이 확보될 수 있는 평가제 도입을 위하여 평가방법의 개발,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질의 5)

17. 연금동결 문제, 45-33년 근무만 수령하는 문제

(답 변)

- 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었으며
- 공무원연금법 제66조에 의하면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어 교육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40~45년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연금납부 대상기간은 33년에 한정하고 있음.
- 앞으로 국가재정 형편이 나아져 국민복지 향상이 이루어지면 근속년수를 모두 인정하는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 교육공무원만 근속년수를 모두 인정할 수 없는 실정임.

(질의 5)

18. 학사감사를 일반 행정직이 담당 - 비교육적이다.

(답 변)

- 초·중등학교 학사감사는
  - 시·도교육청 본청의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된 전문직이 감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 지역교육청은 감사부서에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학무국 소속 전문직의 협조를 받아 감사를 실시하거나, 단순한 학생생활기록부, 출석부 관리 확인 등은 일반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음.
- 장학방침, 교과운영 및 교육내용 평가 등에 관한 학사감사는 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감사를 담당하여야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문직을 확보하여 배치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 ※ 참고사항
  -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부서 교육전문직 배치 현황
    - 본청(감사담당관실) : 장학사 3명
    - 지역교육청(기획감사계) : 미배치

(질의 5)

19. 교육세 - 목적세로 해야 한다 - 19세기 환경으로 21세기 교육을 할 수 있나?

(답 변)

- 지방교육재정중 6.2조원인 약 32.5%를 차지하는 교육세는 목적세란 이유 하나로 대안없이 폐지될 경우에
  - 지방교육자치가 위협받게 되고,
  -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운영비의 대폭 감축과 교육개혁의 추진이 불가하며,
  - 신도시지역 등의 학교 미신설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 현재 조세체계 개편으로 교육세의 폐지가 논의되고 있으나, 우리 부에서는 대안없는 교육세의 폐지를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 대안으로
  - 현행의 목적세인 교육세를 유지하되, 세목을 간소화하는 방안
  - 교육세를 지방교육세 형태로 개편하고,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
  -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자치재원의 성격에 맞게 국세 특정세목의 일정율을 지원 또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가 비율로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 독립된 교육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추진하여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러나 '98년도의 초등학교 2부제수업 및 과밀학급의 경우 2~3년내 학생 자연감소, 학교부지 협소, 동일 학교내 학교신설 예정 및 일시적인 인구밀집지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98년도 제2차 추경으로 지원된 2,000억원으로 상당히 해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교유환경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 조세체계 개편시에도 교육세를 폐지하지 않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며,
  - 시·도세 2.6% 해당액이 계속 전입되도록 하는 등 교육재정을 다각도로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상경비의

삭감,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 등 예산분석을 통하여 교육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5)

- 21. 교육정책-정권, 장관이 바뀔 때마다 변화, 문제있다.
- 41. 교육개혁은 군사쿠테타가 아니다.-교육은 정권획득의 전리품이 아니다.

(답 변)

-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은 다가 올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대비, 우리 나라가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산업사회의 틀에 맞춰진 교육 체제를 지식정보화사회에 알맞도록 정비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된 제도 개혁 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기존 의식, 행태 등을 일신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과 관련된 총체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함
- 이러한 교육개혁의 흐름은 지난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자율화·다양화·특성화된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열린 평생 교육, 능력중시 교육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임. 교육개혁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정권변동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국가의 핵심전략이기 때문임
- 특히 교육개혁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또 다른 교육개혁안을 양산함으로써 소모적, 비효율적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를 지양하기 위하여 정책개발 기능보다는 교육개혁의 실천과 국민의식 개혁 등에 중점을 둔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였음
- 이러한 원칙을 견지해 나가되,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개혁 방안 중 미진하거나 부족한 일부 사항에 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음

(질의 5)

- 23. 한줄 세우기 교육 - 학교평가 과정 무시 - 결과 중시

(답 변)

- 21세기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지식 기반 사회로서, 개개인의 지력과 창의력, 국가 지적 자산의 양과 질이 국민의 삶의 질과 국력을 결정하게 될 것임.
- 최근,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대입 무시험전형제를 도입·확대하여 현재의 중학교 3

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02학년도에는 신입생을 독자적으로, 다양하게 선발하고자 하는 추세인 바, 우리 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설 자리를 잃었던 창의력 교육과 인성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새 학교 문화」 창조 방안을 수립 발표하였음. 이 방안에는 '학교 토론 문화 형성', '교수·학습 과정의 개별화 실현', '다양한 체험 학습 수행', '평가의 다양화 및 투명성 보장', '교원의 전문성·책무성 신장', '학교 경영의 자율성 증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러 줄 세우기 교육'과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임.

- 우리 부에서는 또 1997년12월30일에 2000년3월1일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할 제7차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을 개정·고시하였으며,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기초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등으로 설정되어 있고,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는 것을 교육과정 구성의 주요 방침으로 삼고 있음.

(질의 5)

- 24. 교육이 흔들리고 떠다니고 있다.  
- 개혁의 미명아래 교육이 뿌리째 흔들린다.

(답 변)

- 일련의 교육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과 일부 교육현장에서는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여론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교육개혁은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앞으로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과 지역사회, 학부모 등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교육개혁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질의 5)

- 25. 교육 - 인성 - 창의력 있는 교육  
- 교육과정 학습량 반으로 줄이고  
- 교사의 수업부담 대폭 줄일 것

26. 즐겁고 재미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습은 오전에만 하고, 오후는 특활시간으로 해야 한다.

30. 시범학교 일반화 될 수 없다.

31. 외국의 선진교육이 우리화 될 수 없다.

40. 열린교육의 주체는 학부모가 아니라 교사다.

- 48. 인성교육 - 학교장 재량 - 창의력 개발
- 53. 정부 각 부서행사 - 초등학교 학생 동원 - 전 시성 행사
  - 실례 : 환경의 달 - 월1회 - 전단, 피켓, 어깨띠
- 56. 각종 행사 간소화
- 84.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문제
- 89. 촛지는 사실상 근절되었다.

(답 변 25, 26)

- 지난 10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비전 2002 : 새 학교문화 창조」 방안은, 21세기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지식 기반 사회로서, 개개인의 지력과 창의력, 국가 지적 자산의 양과 질이 국민의 삶의 질과 국력을 결정하게 된다는 판단으로,
- 최근, 서울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대입무시험전형제를 도입·확대하여 현재의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02학년도에는 신입생을 독자적으로, 다양하게 선발하고자 하는 추세인바,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설자리를 잃었던 창의력 교육과 인성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새 학교문화를 창조하고자 한 조치임.
- 또한, 우리 부에서는 2000년3월 초등학교 1, 2학년부턴 연차적으로 적용될 제7차 교육과정을 지난 1997년12월30일에 고시한 바, 이 교육과정에서는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에 의한 교수·학습 부담을 30% 이상 줄이기 위해 교과별 최소 필수요소를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정선하고, 범위와 수준도 조정하였음. 아울러, 학교급별 이수 과목수도 축소하였음.

즐겁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등학교 3~6학년에만 0~34시간으로 형식적으로 배당되어 있는 재량활동 시간을 초등학교는 학년당 68시간, 중학교에는 학년당 136시간, 고등학교 1학년에는 204시간을 배당하여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신장을 위한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답 변 30)

- 연구 시범학교 운영 결과 에듀넷 탑재 의무화하여 일반화 확대
- 공개방법의 개선을 통해 일반화의 효율성 증대
  - 환경 구성, 전시회, 누가기록 진열등의 방법을 지양하고 교육활동 참관, 및 협의 토론 중심의 공개 보고
  - 유인물 중심의 보고서 → 디스켓에 담아 널리

일반화

(답 변 31)

○ 우리는 단일민족으로 장구한 유교문화를 지니고 발전해 왔다.

그러므로 학교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무리 외국 선진교육이라 하여도 우리문화 위에 걸리지지도 않고 우리화 할 수 없다고 봄.

이제 우리 교육은 가정·사회·학교가 함께하여 일치감을 살려가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 양식을 되살리고 민족 얼의 바탕위에 우리 교육이 발전해 가도록 되어야 함.

(질의 40)

○ 열린교육은 한줄세우기 교육이 아니라 여러줄 세우기 교육이다. 지금까지의 교사중심의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여 학생중심의 학습활동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학생들의 사고력, 창의력이 길러 지도록 교사의 주도하에 학습이 이루어 져야 하며 결코 주체가 학부모일 수는 없음.

(답 변 48)

○ 인성교육-“인성교육”은 “사람됨됨이”를 즉 사람다운 사람을 육성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므로 학교·가정·사회가 일치되는 협조체제 하에 올바른 인성이 형성됨.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함.

○ 창의력 개발을 위해서 교사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사고력·창의력이 개발되도록 학생활동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함.

○ 위와 같은 인성교육, 창의력 개발 교육은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행해져야 함.

(답 변 53)

○ 정부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학생동원을 억제하고 있으나, 각급학교에서 환경의달 행사로 월1회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피켓 또는 어깨띠를 하고 전단을 돌리는 등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학생 자신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 및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임.

(답 변 56)

○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는 학교교육계획에 의거 학교장 책임하에 간소하게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 각 부처 및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규모 각종대회는 교육부예규 제251호에 의하여 시

상이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고 있으며 모든 행사는 간소하게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답 변 84)

○ 예산지원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 중심으로 운영하여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 때 예산 지원함.

- 수준별 운영
- 우수한 외부강사 초빙
- 주기적 평가·환류(feed-back) 체제 확립

- 학교운영위원회 미설치교는 지원 유보

○ 외부강사와 현직 교사와의 차별

-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을 감안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 일부 시·도교육청 지역사회와 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교사간의 위화감을 없애기 위하여 현직 교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제한하고 있음.

(답 변 89)

○ 촌지수수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 학부모 대부분(63%)이 “촌지가 줄어들었다”라고 인식(한국교육개발원 98.6)

- “올해는 촌지를 안줬다”에 87.4%로 반응으로 보아 촌지수수수가 격감되고 있다.(신문갤럽조사 '98.8)

○ 그러나 아직도 극히 일부 특정지역에서 촌지수수수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염려되어 지속적으로 추방 운동을 조용히 전개하겠음.

(질의 5)

27. 초·중·고 교사는 개혁대상이고, 대학교수는 무풍지대인가?

(답 변)

○ 일반적으로 대학의 교원은 초·중등교원과 함께 교육공무원의 범주에 있으면서 65세 정년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학교원의 임용은 기간제 임용으로서 기간단위로 계약되며,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기간 동안의 연구 및 교육실적, 사회봉사 실적 등을 평가하여 제반 실적이 당해 대학이 설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 임용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의 임용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대학교원은 정년을 낮추기 보다는 대학교원 업적평가 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엄정한

평가, 그리고 평가결과의 엄격한 적용에 의한 임용으로 교수의 자질 제고 및 경쟁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최고의 고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학문과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5)

29. 교육정책실명제하고 문서실명제 하라

- 감사차원이 아닌 현장 차원에서 입안하라

(답 변)

○ 정부에서는 국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리자들과의 실명과 의견등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및 문서실명제를 도입하여 사무관리규정('98.7.1 : 대통령령 제15823호)을 개정, 전 부처가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의 주요국정 현안사항,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100억원이상 공사), 법령의 제정 및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개정사항,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신설, 개정 또는 인·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정책실명제 및 문서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

○ 실명제 방법은 정책발의자, 보고자, 결재자는 모두 자필실명을 기재하고 문서대장에 등록하며, 1년 단위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이를 정부기록보존소에 영구보존토록 하고 있음.

○ 또한 모든 공문서 상단에 기안자 및 담당과장의 실명을 기재하고 하단에는 전결재자의 실명을 기재하는 등 전 교육기관에서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음.

(질의 5)

32. 교사연구 보조비 500만원 지원→줄속행정, 예산낭비

(답 변)

○ 21세기의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입시위주의 암기식 교실수업이 시급히 개선·혁신되어야 하며

○ 또한 교육개혁은 결국 교실이 바뀌지 않고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교과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초·중등학교의 교수-학습활동을 개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절실한 일이라고 생각됨

○ 그리고 본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94년도부



터 계속 추진해 온 계속사업을 확대 강화한 것이며, 참고로 교과교육 연구활동 계획서 공개모집에 참여한 교사는 전체의 31%인 10만여명에, 총 8,000여 연구회가 참여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질의 5)

33. 교사가 우울증에 걸리면 교육이 우울증에 걸린다.

(답 변)

○최근 교원 정년의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교직사회 내부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밖에 촌지나 체벌, 스승의 날 변경 또는 교원인사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같은 문제들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교원들의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직전부터 우리 사회의 각 부문은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뼈아픈 과정을 겪고 있으며, 이 과정은 고통스러운 것이나 우리 국민이 국제사회에서 생존해 나가기 위하여는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를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에 교육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바, 구체적 방안은 일선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할 예정이지만 우선 보다 많은 신규교사를 채용하여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며,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교원이 승진에서 우대받는 풍토를 마련하는 한편

○교원의 잡무를 경감함으로써 교원들이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5)

34. 교육 정책은 펜 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눈물 속에서 나온다.

(답 변)

○교육 정책은 교육 현장의 여론 수렴과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논리에 전적으로 동감함.

○교육부에서는 정책 수립시 이를 철저히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 한 예로, 최근 발표한

‘교육 비전 2002 : 새 학교 문화 창조’의 추진 경과와 추진 방법을 들겠습니다.

○추진경과

학교 현장에서 추방해야 할 사례 및 학교 현장에 새로이 투입해야 할 과제 추출(총 14,400여명 참여)

- 장관님 지시 : '98.7.27

- 교육부 관련 16과 의견수렴(16명) : '98.7.28~29

- 외부 의견 수렴(150명) : '98.7.27~31

• 시·도교육청별 남고 1교, 여고 1교 32명 등

- 실무 추진위원회 구성 : '98.8.6

• 외부위원 : 8명, 내부위원 : 11명

• 내부 실무추진위원회(3회), 내부/외부 실무추진위원회(2회)

- 외부 의견 수렴(8,535명) : '98.8.1~25

• 학생·학부모(해외장기체류자포함)·교원·시민단체 등 8,182명

• 충북 수학과 교과교육연구회 교사 등 출장·초빙 면담(353명)

- 차관 주재 정책협의회(15명) : '98.8.29~30,

• 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 참석 : 서울·인천·경기 부교육감, 초·중등교육국장 등

- 시·도교육청 교사,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협의회(80명) : '98.9.3

• 장소 : 교육행정연수원

• 참석 : 시·도교육청별 교사3명, 교장·교감 1명, 교육전문직 1명씩

- 장관주재 부내 정책토의(20명) : '98.9.9,

• 장소 : 장관실

• 참석 : 장·차관, 관련부서 실·국·과장 등 20명

- 시·도교육청 주최 공청회 개최(6개 주제 분담) '98.9.21~25

• 참석인원 : 5,545명

• 주제발표자 : 17명

• 토론 참여자 : 76명

- 최종안 확정·발표 : '98.10.22

○추진 방법

- ‘교육 비전 2002’는 단위학교나 교육청의 여건과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충분히 감안, 추진 과제를 선택하고, 그 시기와 방법도 단위학교에서 결정해 자율적·창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학교의 창의성

이 충분히 반영된 다양한 교육 활동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부는, 내년 3월말까지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담은 '새 학교 문화 창조를 위한 학교 교육계획서'를 공모해서, 초등 1,000개교, 중등 1,000개교를 시상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그 계획서에 의해 잘 추진한 학교를 선정, 기관 표창을 함으로써 새 학교 문화의 창의적인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특히, 학교교육계획서 심사의 초점을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협의하여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느냐에 두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전문성이나 자율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임.

(질의 5)

35. 인기 중심의 교육 정책 탈피하라.

(답 변)

- 우리 부는 교육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철저한 여론 수렴과 이해당사자의 주장, 그리고 교육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도 이 원칙을 지켜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를 대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교육 정책 수립에 더욱 노력하겠음.

(질의 5)

36. 교육정책심의관-일반직이 아닌 교직 경험 자라 한다.

(답 변)

- 교육부내 직제상 교원정책심의관은 일반직 또는 교육전문직으로 복수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두 요소가 조화된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해 직위에 보직자를 임용할 때는 그 직위의 직무영역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임용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금번 교원정책담당관을 일반직으로 임용한 것은 '98 하반기에 추진될 교원 정년단축, 수습교사제 도입, 교육공무원 지방직화 등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법령개정, 관계부처 협의 등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임용한 것임.

○앞으로도 복수임용이 가능한 직위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적임자로 인사배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교육부 본부의 직제에는 교육정책심의관이란 직위는 없으며, 교원정책심의관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드립니다.

(질의 5)

38. 교사가 변해야 학교가 변하는데 교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교육부는 각성해야 한다.

(답 변)

- 교사를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주장이 어떤 측면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바, 교육개혁과정에서 교사의 이해와는 다른 일부 정책들과 불법교액과의 사건 관련자를 수사하는 과정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교원의 사기양양과 교원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나,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질의 5)

39. 교육정책수립에서 일반직 참여가 높기 때문에 교직이 행정 위주의 관료화 된다.  
47. 교육기관 행정기관화 방지해야 한다.  
97. 행정업무 -행정인력 충원

(답 변)

- 시·도교육청 소속의 공무원 정원은 '98.4.1 현재 일반직, 기능직 및 별정직 59,617명이고, 교육전문직(정무직 포함) 및 공립 각급학교의 교원 총수는 266,961명(전체의 81.7%)입니다.
- 앞으로, 시·도교육청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반직 등은 현정원의 10% 정도가 감축되나, 교육전문직 및 교원의 정원은 감축은 없고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결코 교직이 행정위주의 관료화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 직중간 역할분담을 보면, 교육전문직이나 교원은 일선학교 현장의 교육과 연구·장학업무 등을 담당하고, 일반직 등은 일반행정업무나 교육지원업무 등을 분담하고 있으므로, 교육기관이 행정기관화 된다고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또한, 일선학교 교원의 수업의 잠무경감을 위해서는 이미 구축된 학교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업무부담 가중의 가장 큰 요인인 과도한 공문서 유통량 감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5)

42. 교육개혁이 연속성이 없다.

-6차과정에서 7차과정이 아니라

-6차는 중도하차, 7차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답 변)

○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하여 우리 나라 초·중등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개혁 차원에서 수차에 걸친 공청회, 심의회, 현장검토 등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연구·개발되었음.

○ 또한 학자·전문가·현장교사 등 14,200여명의 인원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된 이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제6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해 온 교육과정의 분권화·지역화·다양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시대적 요구와 학문적 변화 등을 수용하여 개정하였음.

○ 우리 나라는 정부수립 후 7차에 걸쳐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초·중등교육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해왔으며, 제7차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공통성과 지역·학교·개인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제6차 교육과정의 밑바탕위에서 교육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과 정신을 반영하여 구성하였음.

(질의 5)

43. 양호교사는 일반적이 아니라 전문직이어야 한다.

(답 변)

○ 양호교사는 1953년 교육공무원법(1953.4.18, 법률 제285호)에 근거하여 시·도교육감이 시행하는 양호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부터 배치하기 시작하여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 '98년 현재 전국의 10,482개교의 초·중·고, 특수학교중 58.7%인 6,125개교에 배치되어 있으며,

○ 양호교사의 자격기준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제2항 별표2의 규정에서 "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간호사면허를 가진자 또는 전문대학의 간호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이 아닌 교육공무원으로 의료인(간호사 면허소지)의 자격을 가진 전

문직이며, 일선학교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학생 보건교육 등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위한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의 5)

46. 76개 사립 중 서울 39개, 5,400여명 - 교사교류 억제

(답 변)

○ 우리 부에서는 사립학교간 교류, 국·공·사립 학교간 교류 등 각종 학교의 교사 교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가 재단이사장으로서 사립학교의 교사 교류가 국·공립학교 교원보다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립학교 교사의 교류를 억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립학교간 또는 국·공·사립학교간 교사 교류 제도로써 "교원 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교사 교류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

(질의 5)

50. 교사정년 초·중등 차이가 있어야 한다.

(답 변)

○ 초등과 중등교원의 정년은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초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중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본인의 원에 의하여 초등에서 중등으로 또는 중등에서 초등으로의 전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중등교원의 정년에 차등을 두면 모든 교원이 정년이 긴 학교를 원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년이 짧은 학교에는 우수인력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초·중등간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5)

51. 초등학교 4, 5, 6학년 주당 32시간, 수업시수 너무 많다

(답 변)

○ 초등학교의 수업 시수와 학습량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00년부터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부담 경감 경감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편제와 편성·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음.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최저 기준 제시
-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재량권 확대

- 학생의 선택권 부여
- 일부 교과와 수준별, 단계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 재량활동의 확대에 대해 학습부담의 감축

- 학습부담 경감 및 학년별 수업시간수의 조정
  - 3, 4학년 과목수 감축 : 10교과 → 9교과
  - 3, 4, 5, 6학년 주당 평균 0~2시간 감축 조정
- 제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수업시수 조정 내역

조 정 교 과 학 년	현 행	개 정	비 고
수 학(5,6학년)	주당평균 5시간	주당평균 4시간	각 1시간 감축
사 회(5,6학년)	주당평균 4시간	주당평균 3시간	각 1시간 감축
자 연(4,5,6학년)	주당평균 4시간	주당평균 3시간	각 1시간 감축
슬 기 로 운 생 활(1,2학년)	주당평균 4시간	주당평균 3시간	각 1시간 감축
즐 거 운 생 활(2학년)	주당평균 7시간	주당평균 6시간	각 1시간 감축
실 과(3,4,5,6학년)	주당평균 1시간	3,4학년 : 삭제 5,6학년 : 주당 평균 2시간	각 1시간 증배
영 어(3,4학년)	주당평균 2시간	주당평균 1시간	각 1시간 감축

※교과학습 내용의 최적화로 교과별 수업시수를 감축하고 재량활동 시간을 확대하여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아동 및 교사의 교과 수업부담을 경감

(질의 5)

52. 교사 휴식년제 실시해야 한다.

(답 변)

- 우리 나라의 각급학교 교원정원은 법정배치기준과 비교하여 볼 때 초등은 94%, 중등은 8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 또한, 최근 국가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정부의 공무원정원 동결방침에 따라 교원정원의 확보는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되는바
- 이러한 현실정을 감안할 때 교원의 휴식년제 실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5)

54. 교육을 계획화·실적화·수량화할 수 없다.

(답 변)

- 교육을 계획화·실적화·수량화할 수 없다는 위원의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감함.
- 교육은 본질적으로 단기간에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기대해서도 안됨.
- 다만, 교육의 장단기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계량화할 수밖에 없음. 이 경우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만 계량화하고 있음.

(질의 5)

55. 학교시설 절대 부족-복식건물-직원휴게실 무

(답 변)

- 우리 부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교에 교원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교원편의시설 확충사업은 학습자료 개발 등을 위한 학년별(초등), 학과별(중·고) 교사전담 연구실 확충 및 교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휴게실의 내방설치 등 쾌적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96~2000 사이에 7,913실을 확충할 목표로 매년 810억원 규모로 5개년간 총4,088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96~'97 경우에는 해당학교의 사업 우선순위 및 학교별 증축여건(1실증축에 따른 부지여건)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학생감소에 따른 유휴교실 이용 및 기존의 시설을 보수·활용하여 교원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음
- '98년부터는 교원편의시설 확충가능한 유형별(유휴교실, 증축, 개축 등)로 계획을 수립하여 교사건물의 신·증축 및 개축시에 교원편의시설을 포함,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해당 학교별로 향후 유휴교실 발생 여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가능한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예산절감에도 노력하고 있음

(질의 5)

57. 교과과정 개편 기간 5년인데 재할용은 2년 문제있다.

(답 변)

- 교육과정은 시대적·학문적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따라 5년 내지 10년에 한번씩 개정하게 되고, 개정후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적용하게 됨
-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제6차 교육과정이 '92년에 고시되어 '96년부터 적용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은 '97년에 고시되어 2002년부터 적용되므로 제6차 교육과정의 적용 기간은 6년임.

(질의 5)

58. 교육정책 수립시 교사 공청회, 현장의 소리 반영하라

(답 변)

-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의 주요 특징은 교육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적 추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지난 정부의 교육개혁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져 학교현장의 동참을 획득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반성에 기초하고 있음
- 따라서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간담회, 교장간담회, 교육현장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정례화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은 물론 체계화해 나갈 생각임. 특히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통하여 지역단위에서의 교육현안에 대한 공개 포럼(forum)과 각종 토론회 개최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갈 것임
- 또한, 교육소식지를 통하여 주요 교육현안에 대하여 장관이 직접 교육현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며, 컴퓨터 통신을 활용하여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음
- 다만, 교육부의 정책 결정은 교육과 관련된 교원, 학부모, 학생,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개개인의 의견과 생각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한계는 있다고 봄

(질의 5)

59. 참스승인증제는 평가 위주로 돼있어 비교육적이다.

(답 변)

- “참스승인증제”란 수업우수교사 유인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정에서 여론수렴과정중 확정되지 않은 안이 노정되면서 물의가 야기된 것임
- 차후 수업우수교사로 동료교사·학생·학부모 등이 공동 추천하고, 학교·교육청 및 교육부에서 선정되면 교육청 장학, 단위학교 자율 장학시 장학요원으로 초빙·활용, 자신의 수업을 상시 공개, 교원연수의 연수 요원(강사)으로 초빙 활용 계획임

(질의 5)

60. 교원임금 피크제, 교원 정년제-전문직에 대한 부정

(답 변)

-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직 모두가 포함됩니다.
- 따라서 전문직이라고 교원과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며, 전문직으로 재직하다가 일선학교의 교원으로 전직이 가능한 바,
- 급여 문제 또는 정년의 적용등에 있어서 전문직에 대해 더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질의 5)

61. 교복물려주기 캠페인 실시하자

(답 변)

- 우리 부는 IMF사태 이후, '97학년도 연말연시, 겨울방학 대비 학생생활지도대책에서 「우리 경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전국 일선학교에 권장하여 대다수 학교가 참여한 바 있고
- '98학년도에도 학년말을 전후하여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질의 5)

62. 복학생-자기 학교로 갈 것

(답 변)

- 중퇴생이 복학할 학교를 선택할 때, 우리 부는 원칙적으로 원적교로 복교하여 학적을 회복하도록 각시·도 교육청에 권장하고 있는 바,
- '98년도 상반기에 복교한 학생 10,090명 중, 원적교로 복학한 학생은 8,660명으로 전체 복교생의 85.83%임
- 다만, 원적교로 복교하면, 중퇴 이전의 또래 집

단에 합류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보다는 이전의 비행/일탈 생활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 일부 복교생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타고 복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경우 교육부 차원에서 타고 복교를 금지할 근거가 없음.

(질의 5)  
63. 고입-강남·북 차별  
-강남 80 인문계, 강북 60% 실업계

- (답 변)
- 현재 서울시에서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중학교 내신 성적 자료로 사정하기 때문에 강남·북의 학교간 고교입학 전형에 따른 학력차는 없으며
  - 강남·북간 인문계 및 실업계 진학자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학교 선호에 따른 것으로 생각됨

(질의 5)  
64. 65. 학생징계처분의 문제  
-미국식 교육 이식, 한국현실 맞지 않음  
-퇴학→선도처분, 유기정학→학교봉사, 무기정학→사회봉사

※퇴학→선도처분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현행 징계제도에 선도처분은 없고, 퇴학처분이 시행 중임

- (답 변)
- '97.9월 이후, 선도위주 학생징계제도의 시행 이후, 퇴학처분 등 중징계보다는 선도와 상담 중심으로 학생징계방식이 전환되고, '98.3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정으로 체벌을 사실상 금지하여 일선학교 교사에게 학생 지도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임.
  - 그러나 학부모/학생들의 높은 교육열을 이용하여 제적 등 중징계를 강력한 학생 통제수단으로 삼는 한편, '회초리' 관행에 입각하여 학생을 신체적으로 체벌하는 교육방식은 민주적 학생지도방식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학생징계방식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조항에 근거, 일선학교에서 제정하는 학교규칙(교칙)에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법적으로 반드시 외국의 사례를 강요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정학(suspension)과 퇴학(expulsion)에 관한 규칙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무단결석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 사회봉사 처분을 내림.
  - 앞으로 우리 부는 교사들에게 민주적 학생지도

에 필요한 연수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다양화, 내실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질의 5)  
66. 남녀혼성반-성적하향 평준화

- (답 변)
- 학급편성에 대한 사항은 각 시·도 교육감의 소관 사항이며, 남녀공학 및 혼성반 편성은 학생비행 예방이나 정서순화 등 생활지도상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음
  - 혼성반 편성으로 인하여 학업성적이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정확한 자료나 연구결과가 없지만, 앞으로 정책 수립시 참고하겠음

(질의 5)  
67. 특활교실 등 사용할 교실이 없음

- (답 변)
- 지방교육재정의 부족으로 기존의 초·중등학교 신설시 보통교실 외의 특별교실은 2~4실 건축으로 수준별 및 능력별 학습을 할 수 있는 특별교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수준별 및 능력별 학습을 위해서는 특별교실이 필요하나 경기침체로 재원확보가 어려워 택지개발지역의 학교신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경제가 회복되면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교실을 증축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 5)  
68. 숙직실개선-숙직실+화장실

- (답 변)
- 학교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숙직실 계획은 시설물 관리상대부분 해당학교의 중심건물(본관동)의 현관(주출입)에 인접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 숙직자를 위한 별도의 화장실은 예산형편상 설치하지 못하고 건물내에 있는 인접화장실을 이용토록 하고 있으나, 숙직실내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별난방 설치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일부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별도의 숙직실 중 노후화로 근무여건이 좋지않은 숙직실에 대하여는 빠른 기간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음
  - 「중학교교육 새물결 운동」의 추진 과정에서, 선도(거점)학교 교사의 업무가 증가하였고, 관내 다른 학교의 교사들도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교수-학습 프로그램 및 자료의 활용, 연

수 참가 등으로 업무가 증가되었으나 학교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연찬이 필요함.

- 또한 추진 실적의 계량화, 학생 중심의 수업 활동 전개로 인한 교사의 교육관 차별성 희석 등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 「중학교교육 새물결 운동」의 추진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보완하여, 예산이 목적에 맞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추진과정의 내실화를 기하여, 교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의 5)  
69. 여교원들의 탁아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위한 공동 탁아시설 필요

(답 변)

<견 해>

○초·중등학교에 여교원은 계속 증가하여 '98.4.1 현재 전체 교사의 47.5%(164,470명)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여교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20대와 30대 젊은 층

의 여교원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교원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런데 영·유아를 둔 많은 여교원들이 자녀보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교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여성으로서 가정과 자녀에 대한 역할이 가중되어 유능한 여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등 교직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교원 탁아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대 책>

○교육부에서는 '93년5월 “학교 보육시설 설치·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94년부터 '98년까지 전국에 285개소의 학교 유아방을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교원 자녀의 연령별,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다각적인 탁아대책을 수립하고자 시·도별 학교 유아방 현황 조사(붙임자료 1참조) 및 전국 교원 탁아시설 이용 희망자수(붙임자료 2참조)를 실시하였고 연령별, 지역별 여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교원 자녀를 위한 탁아대책 방안을 수립·운영하고자 한다.

[붙 임1]

교원자녀를 위한 탁아 현황

1. 학교유아방 현황

(’98.7. 현재)

시 · 도	설치 유아방수	이 용 유 아 수			비 고
		교원 자녀수	지역주민자녀수	계	
서 울	54	258	247	505	
부 산	30	159	345	504	
대 구	9	60	79	139	
인 천	10	98	69	167	
광 주	5	32	36	68	
대 전	9	187	61	248	
울 산	2	13	13	26	
경 기	38	444	291	735	
강 원	10	95	80	175	
충 북	6	50	95	145	
충 남	7	114	25	139	
전 북	8	33	67	100	
전 남	10	50	60	110	
경 북	74	474	685	1,159	
경 남	11	93	58	151	
제 주	2	32	28	60	
합 계	285	2,192	2,239	4,431	

[붙임2]

탁아 시설 이용 희망 교원 자녀수

시·도	학교 급 별	탁 아 회 망 자 녀 수			비 고
		만3세이하	만4세~만6세이하	계	
서울	유 치 원	41	41	82	
	초 등 학 교	590	845	1,435	
	중 학 교	618	636	1,254	
	고 등 학 교	94	129	223	
	소 계	1,343	1,651	2,994	
부산	유 치 원	33	28	61	
	초 등 학 교	333	562	895	
	중 학 교	307	488	795	
	고 등 학 교	66	88	154	
	소 계	739	1,166	1,905	
대구	유 치 원	10	54	64	
	초 등 학 교	265	452	717	
	중 학 교	243	414	657	
	고 등 학 교	131	198	329	
	소 계	649	1,118	1,767	
인천	유 치 원	8	15	23	
	초 등 학 교	181	203	384	
	중 학 교	71	100	171	
	고 등 학 교	.	.	.	
	소 계	260	318	578	
광주	유 치 원	5	18	23	
	초 등 학 교	87	136	223	
	중 학 교	27	56	83	
	고 등 학 교	33	37	70	
	소 계	152	247	399	
대전	유 치 원	.	5	5	
	초 등 학 교	.	86	86	
	중 학 교	.	33	33	
	고 등 학 교	.	21	21	
	소 계	.	145	145	
울산	유 치 원	1	8	9	
	초 등 학 교	26	72	98	
	중 학 교	83	85	168	
	고 등 학 교	.	.	.	
	소 계	110	165	275	
경기도	유 치 원	97	158	255	
	초 등 학 교	712	1,246	1,958	
	중 학 교	390	579	969	
	고 등 학 교	280	1,981	2,261	
	소 계	1,479	3,964	5,443	



시·도	학교 급 별	탁 아 희 망 자 녀 수			비 고
		만3세이하	만4세~만6세이하	계	
강 원 도	유 치 원	33	41	74	
	초 등 학 교	150	159	309	
	중 학 교	98	161	259	
	고 등 학 교	99	126	225	
	소 계	380	487	867	
충 북	유 치 원	61	118	179	
	초 등 학 교	166	212	378	
	중 학 교	137	325	462	
	고 등 학 교	63	180	243	
	소 계	427	835	1,262	
충 남	유 치 원	77	84	161	
	초 등 학 교	289	296	585	
	중 학 교	262	385	647	
	고 등 학 교	190	296	486	
	소 계	818	1,061	1,879	
전 북	유 치 원	100	131	231	
	초 등 학 교	343	322	665	
	중 학 교	264	304	568	
	고 등 학 교	204	187	391	
	소 계	911	944	1,855	
전 남	유 치 원	84	97	181	
	초 등 학 교	219	213	432	
	중 학 교	271	382	653	
	고 등 학 교	2	2	4	
	소 계	576	694	1,270	
경 북	유 치 원	135	180	315	
	초 등 학 교	367	567	934	
	중 학 교	394	589	983	
	고 등 학 교	195	195	390	
	소 계	1,091	1,531	2,622	
경 남	유 치 원	39	56	95	
	초 등 학 교	124	217	341	
	중 학 교	79	164	243	
	고 등 학 교	89	194	283	
	소 계	331	631	962	

시·도	학교 급 별	탁 아 회 망 자 녀 수			비 고
		만3세이하	만4세 ~ 만6세이하	계	
제 주	유 치 원	21	21	42	
	초 등 학 교	72	70	142	
	중 학 교	87	105	192	
	고 등 학 교	89	71	160	
	소 계	269	267	536	
합 계	유 치 원	745	1,055	1,800	
	초 등 학 교	3,924	5,658	9,582	
	중 학 교	3,331	4,806	8,137	
	고 등 학 교	1,535	3,705	5,240	
	합 계	9,535	15,224	24,759	

(질의 5)  
70. 학교평가 예산차등 문제점  
- 학부형수준에 따라 학교운영이 차별화 된다

- (답 변)
- 우리 부에서는 학교평가를 통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성과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도교육감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학교에 대하여 행·재정지원하고 우수교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거나 취약학교 또는 취약영역에 대하여 행·재정지원과 보완조치를 강구하는 등 교육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추진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의 활용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학교에 대하여 일부 시·도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학부형 수준에 따라 학교운영 차별화는 없는 일로 생각되며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교원의 전문성·책무성이 강화되면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질의 5)  
71. 청소년 쿼터제 입법화  
- 청소년 관련사업의 1%를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과세 혹은 투자

- (답 변)
- 청소년 쿼터제는 교육부 소관이 아닌 타 부처

- 소관임
- 교육부로서는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생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5)  
72. 학교시설이 남녀공학으로 부족-탈의실, 화장실 미준비 교실에서 탈의 남녀 공용-성적충동을 유발

- (답 변)
- 남녀공학 학교의 탈의실 설치에 대하여는 교사건물의 신축 또는 개축시에 탈의실 설치를 계획·추진하고 있으며, 유휴 교사시설의 발생시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 별도의 탈의실 설치를 위한 건물의 증축 등은 교지활용 및 건물간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여
  - 남녀공학 학교의 탈의실 계획은 교사건물의 신축 또는 개축시 사전에 계획토록하고 유휴교실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

(질의 5)  
73. 시설예산과 인사문제가 투명해야한다

- (답 변)
- 우리 부에서는 시설공사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으로  
- 업무추진 과정에서 설계·공사집행·계약담당 부서를 분리  
- 가능한 공개경쟁 입찰을 유도 및 수의계약을 지양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사 통합발주

-조달청 계약을 활성화 하여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으며

○공사감독 및 검사방법의 개선으로는

-시·도교육청별 자체점검반 편성·운영으로 지역교육청 주요사업에 대한 공사관리 전반을 사전점검 및 사후 평가 실시

-시설공사에 관련되는 설계자·감독자·검사자·시공자에 대한 실명제 활성화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또한 학교시설공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로 시설공사 집행과 관련된 업무추진에 투명성을 높이고 있음

○일반직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인사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우리 부 훈령 및 예규등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교육부소속공무원보직관리기준”(교육부훈령 제517호, '95.5.1)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질의 5)

74. 경찰 학원폭력단속 교문 앞 배치의 비교육적 문제

(답 변)

○우리 부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노력하고 있으며 치안당국에 교문앞 경찰인력 배치를 요청한 바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일선학교의 여론을 감안하여 앞으로 관계기관 대책 회의시 치안당국에서 학교주변의 치안활동을 수행할 때 보다 신중히 하도록 요청하고자 함.

(질의 5)

75. 교원연수·연구학점화 문제?

(답 변)

○교원 연수·연구학점화제는 교원이 재직중 이수한 각종 연수 및 연구활동 등 자기연찬의 결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학점화하여 누가 기록·관리하고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경우 보수 및 승진에 반영하려는 것임.

○교원 연수이수 학점제 시행대상으로는 기존의 연수기관 뿐만 아니라 학교중심연수, 개인중심연수를 비롯, 연구활동 및 자격증 취득실적을 포함

하고, 제도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우선 대상실적을 학점화하여 누가 기록하였음. 향후 교원 연수이수 학점화 대상의 각 요소별 계량화 방식, 인정시기, 누가기록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점차적으로 보완·개선할 계획임.

(질의 5)

78. 방과후 보충수업의 형식화

(답 변)

○현재 방과후 보충수업은 학생의 희망과 선택으로 운영되고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석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학생의 희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부하고 싶은 과목과 지도교사를 선택하게 하고 있음. 다만 학교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희망교과, 교사가 집중되는 경우 학생의 희망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음.

○계속해서 학생들이 원하고 효과적인 보충수업을 받도록 장학지도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으며, '99학년도 고교 1학년부터 보충수업은 폐지할 예정임.

(질의 5)

79.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장의 권위상실
- 비교육적 행정-학교운영의 월권
- 교직원투표-교사간 파벌 조장

(답 변)

○현행법 체계 안에서 학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집니다. 이렇게 학교장을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 것은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타 위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토록 하여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개방적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학운위의 성격을 심의기구로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장은 학운위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장의 권위가 상실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학운위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학운위가 학교운영에 대하여 비교육적인 행정 및 월권을 하고 있다는 상황은 아직 파악된 바

없으며,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서는 위원의 의무사항 중의 하나로 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운위를 통하여만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에서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로 되어 있어 교원위원은 교원들의 전체회의에 의해서 선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5)

80. 승진제도

문제점 : 교사 - 교감 - 교장

(답 변)

○교원승진제도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제정된 후부터 사회변화와 더불어 여러차례 바뀌었으나 ‘교사-교감-교장’으로 되어 있는 현행 개선조직의 단일 승진제도를 유지해옴.

○그러나 승진적체로 인한 교원의 승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원이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연한 교원승진제도를 신중하게 연구·검토중임.

(질의 5)

81. 혼성반 학생 성적 문제→입시위주에서는 문제, 공부 안함

학부형 혼성반 반대→학교장 재량권 부여 (강압적 지시에 부작용)

학교시설이 남녀공학으로 부족-탈의실, 화장실 미준비

교실에서 탈의 남녀공용-성적충동을 유발

(답 변)

○남녀 혼성반 편성은 청소년 문제 예방 등 학생 지도상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서울의 경우 학부모 중에서도 혼성반을 찬성하는 쪽이 많은 것으로(한겨레 '98.7) 조사되었음

○혼성반 편성으로 인해 공부를 게을리 한다는 문제는 정확한 자료나 연구결과가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 참고로 하겠음

○남녀공학 학교의 탈의실 설치에 대하여는 교사 건물의 신축 또는 개축시에 탈의실 설치를 계획·추진하고 있으며, 유휴 교사시설의 발생시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별도의 탈의실 설치를 위한 건물의 증축 등은 교지활용 및 건물간의 조화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여

○남녀공학 학교의 탈의실 계획은 교사건물의 신축 또는 개축시 사전에 계획토록 하고 유휴교실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

(질의 5)

82. 사립교육의 특성화 필요-공립과의 차별화

(답 변)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국·공립 학교와 같이 국민형성기관으로 그 역할에 있어 국·공립 학교와 많은 공통되는 사항이 있음

○현재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중학교 무시험 추천배정, 평준화 정책 등으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교육의 특성화는 교육수요자의 신뢰이익의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임

○그러나 다양성 또한 존중되어야 할 가치이므로 국민형성이라는 큰 틀과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립교육의 특성화는 보장되어야 함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둔 특성화중·고등학교 및 자율학교는 사립교육 특성화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전국에 7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운영중이며, 자율학교는 시범운영을 준비중에 있음

○한편 올해로 평가 3년차를 맞게되는 만큼 보다 장기적인 시·도교육청 평가 발전모색을 위하여 피평가자인 시·도육청과 평가위원들이 함께 모여 “대토론회”를 마련하여 '99년도 평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질의 5)

85. 각종위원회 양산 1년사이 15~16개

(답 변)

○우리 부에서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사·관련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관련위원회 활용 또는 분과위원회로 처리

-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 신설의 경우, 관계기관 회의 또는 업무협의회로 대체

- 위원회가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부처간 협의를 주목적으로 신설되는 경우, 관련부처간 “협

의체” 또는 “협의회”로 대체

-순수 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경우 기존 “교육정책심의회”를 활용

-위원회의 존치여부 2년마다 재검토 및 위원회 신설시 ‘일몰제’를 도입

○이와 같은 정비방침에 따라 '98.11 현재 우리 부에 설치된 10개의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정비하고자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치(5) : 교원자격검정위원회, 교육과정심의회,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교수자격인정심사위원회

-폐지(2) : 중앙산업교육의회, 한민족발전위원회 ('99.1.31까지 존치)

-통합(2) : 학술진흥위원회, 국비유학자문위원회 →교육정책심의회로 통합

(질의 5)

86. 컴퓨터 재활용-학교장 재량권 허용

(답 변)

○우리 부는 2000년까지 1교 2학생실습실(36학급미만교는 1실)용 컴퓨터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 바, 기존의 구기종 386급이하 컴퓨터는 586급으로 교체 보급시까지 도서실, 양호실, 과학실 등에 배치하여 키보드 연습, 워드 연습, 간단한 DB 관리, 분해조립을 통한 컴퓨터 원리 해설 등 분야에 재활용하고, 배치장소가 부족한 경우 타 기관에 관리전환토록 하였고,

○'98.10.9, '98학교정보화교육추진협의회 3/4분기 회의시, 내용연수가 지난 386급이하 컴퓨터 활용방안에 대하여, 각 시·도교육청별 계획에 의거, 기기상태, 컴퓨터 교육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원 기증 등 재활용 방안을 모색 또는 불용결정토록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이 존중되도록 지도한 바 있음.

(질의 5)

88. 교직 이수과목-특활 부전공 필요

(답 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필요한 학점은 교직과정 20학점 이상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

○교직과목에는 교직이론에 교육학개론 등 7개과목 이상에 14학점, 교과교육에는 교과교육론 등 2개과목 이상에 4학점 이상, 그리고 교육실습 2학점(4주)을 취득해야 하므로,

○특활시간에 필요한 지도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과목의 이수도 필요한 것은 인정되나, 현재 대

학의 졸업학점이수 하향추세와 각종 이수학점 하향 요구에 의해 특활관련 교과목을 별도로 신설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어려움이 있음.

(질의 5)

90. 국·공·사립의 순환근무제 실시하라

(답 변)

○국·공립 학교간에는 국립학교의 교사가 필요한 경우 국립학교 소재하고 있는 해당 시·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국립학교 교사로 임용하고 있고, 국립학교 교사가 공립학교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학교장과 해당 시·도교육감이 협의를 거쳐 항상 순환근무가 가능함

○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권자가 각기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하여 공·사립학교간 순환근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질의 5)

91. 담임, 비담임 업무량의 차이 많다.

(답 변)

○학교 현장에서의 담임과 비담임의 업무량은 담임의 업무량이 비담임의 업무량보다 많은 것이 사실임. 담임은 교과 지도 외에 생활 지도와 학급 경영에 따른 책임까지 따르게 되므로 담임을 기피하는 추세임.

○대책으로는

- ①담임수당의 현실화
- ②업무량 및 업무성장에 따른 각종 수당의 차등 지급 등 국가차원의 대책 검토
- ③담임, 비담임 교사간의 업무분장 균형유지
- ④담임배정의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단위 학교 차원의 대책 수립·추진

(질의 5)

92. 강남, 강북의 차별화-교육환경개선 시급

(답 변)

○우리 부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교육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개선과 교원편의 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 : '96 ~ 2000(5개년)

-사업규모

- 총소요 : 11조7,000억원('96.2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 5개년간 투자규모 : 매년 1조원씩 총 5조원 (교부금 : 3조5,000억원, 자부담 : 1조5,000억원)

-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 추정학생수, 건물의 노후상태, 시설의 부족실태 등에 따라 5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지역별, 세부사업별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수립·집행하고 있음으로 지역간 차별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질의 5)

93. 학교평가 문제있다.

(답 변)

- 우리 부에서는 학교평가를 통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성과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도교육감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학교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학교평가 준비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시·도교육청에서 문제점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적극지도하겠습니다.
- 예를 들면

<학교평가의 융통성 부여>

- 학교평가 주기 : 2~4년 및 요청 평가제
- 획일적 서식에 의한 실적 나열 지양
- 기존의 작성된 계획서 등을 복사 제출
- 현장 방문시 실천 및 현황 확인에 중점
- 학교시설 현황 점수화 및 학교간 서열화 지양

<평가결과의 활용>

- 전영역 우수학교 공개 포상
  - 영역별 우수학교 공개 포상
  - 전영역 부진학교 공개 지원
  - 영역별 부진학교 공개 지원
- ※ 교육활동개선 및 장학자료로 활용 등

(질의 5)

99. 급식문제 - 시설미비

(답 변)

-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 봉사 정신과 협동정신 등 공동체의식 함양의 교육적 목적을 갖고 생활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다수학생들에게

집단적으로 급식을 실시하므로 이로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위하여 위생과 안전을 가장 기본적 관리요소로 삼고있습니다.

- 따라서 기본적인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위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는 교내에 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며, 위탁급식의 경우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그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을 학교급식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급식법령에 따라 적정한 면적과 시설·설비를 갖춘 조리장에서 기본적인 조리 및 급식설비·기구를 갖추고 급식작업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본적인 시설·설비 이외에 자동화되고 현대화된 주방기기를 확충한다면 급식작업을 보다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 부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능률적인 급식실시를 위하여 노후된 기본 시설·설비는 교체해 나감은 물론 자동화되고 현대화된 주방기기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5)

100. 담 안팎의 교육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다.

(답 변)

- 교육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둘 수 없음
- 교문밖의 사회·가정 모두가 학생들의 선도자가 되어야 함
- 학교주변의 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지만, 메스컴이나 사회 시민단체 등도 학교교육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임

(질의 5)

101. 학생드라마-젊은 연예인, 음주, 흡연 방영 문제

(답 변)

- 우리 부는 일부 방송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바,
- 앞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시 교육적 고려를 충분히 하도록 문화관광부 및 방송위원회등 유관 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방송분석활동(모니터링)에서 교육적 기준을 강화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으며, 나아가 교육방송에서 건전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방영토록 유도하여 방송을 통한 학생인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질의 5)

103. 교육용 컴퓨터교실 -29대 그대로 방치(면지화)

(답 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정보화마인드가 충만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97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생실습실용(교육용) 486급이상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어, 방치되어 있는 29대는 '97년 이전에 보급된 활용될 수 없는 구 기종일 것으로 짐작됨

○현재, 2002년 정보소양인증제 대학입시 채택이 예상됨에 따라, 컴퓨터 교육에 차질없이 제공, 활용될 수 있는 고등학교 컴퓨터 보급실태를 파악 중에 있는 바, 활용될 수 있음에도 활용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대하여는 타 학교로 관리전환하여 활용토록 지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할 계획임

(질의 5)

104. 교사용 컴퓨터 총 52대, 사용가능 10여대

(답 변)

○교수-학습자료 개발, 교무·학사업무 등에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97~200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1교원 1PC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97년 이전에 보급된 사용불가능한 컴퓨터는 신형으로 교체 보급될 것임

○다만, IMF 체제하의 교육재정이 어려우므로 사업기간내 목표 달성이 다소 변경되거나 보급시기가 지연될 수는 있음

(질의 5)

107. 각종연수·일반연수를 방학 아닌 기간에 실시하여 학교수업지장이 있고 교원은 승급, 보수와 관련하여 연수를 선호하고 있음.

(답 변)

○교원의 자질과 능력신장을 위하여 현직교원에게 자격연수·일반연수·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연수기관 및 연수과정의 부족 등으로 교원에게 연수기회 부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교원연수를 방학기간 중에 실시되고 있으나 교원연수기관의 수용시설 여건상 부득이 방학 외의 기간에도 일부 실시함에 따라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사실임

○교원의 연수수요를 감안, 교원의 연수 강화와 연수기관 확대를 위하여 지역별 여건을 갖춘 대학등을 교원연수기관으로 확대 지정하여 가능한한 방학기간 중에 연수가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음

○아울러 교원들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계속적으로 새로운 지식 습득과 능력을 개발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소양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연찬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교원연수·연구학점제를 도입하였고, 앞으로 자기연찬의 결과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경우 보수 및 승진에 반영할 것이며, 동 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점차적으로 보완·개선할 계획임.

(질의 5)

108. 문교통계, 교육행정통계 4개월마다 함-중 북

(답 변)

○우리 부에서는 각종 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교육통계자료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학교에 수시로 요구하여 학교의 업무 가중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함.

○이와 같은 업무의 가중화는 교육통계자료의 정보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 부는 '97년부터 교육통계 DB시스템과 시·도분산 교육통계 DB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음.

○이러한 교육통계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연1회 자료를 제출받아 각종 통계책자를 발간하고, 정책수립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일선학교의 업무가 대폭 경감될 것으로 사료됨.

(질의 5)

109. 인문계 고교의 경우 8월부터 입시준비하느라 바쁘는데  
-수시입학의 문제점  
-입시일정, 입시절차  
-한 학생이 10개대를 지원할 때 들어가는 인력 및 경비는?

(답 변)

○수시모집은 특차·정시·추가모집을 제외한 기간 중 대학 자율로 설정한 기간에 모집하는 것

- '99학년도 수시모집은 '98.9.1일부터 특차모집 전까지인 '98.11.22일까지임

○수시모집은 학생들의 대학선택권을 넓히고, 대학의 여유있는 선발일정을 제공하며, 대입전형의

다양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복수지원의 보장으로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기간동안 여러 차례의 대학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학생들이 필요 이상의 복수지원시 인력·경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임
  - 여러 차례의 복수지원은 학생개인의 선택 문제이나, 무절제한 복수지원 및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02년 입시에서는 정시모집도 3개군으로 줄이고, 수시모집의 등록기간도 각 학기말에 1번씩 둘 예정임

(질의 5)  
110. 입학, 졸업 → 학기 시작 시기 검토  
- 입학과 졸업 : 1~2개월 공백

(답 변)

- 학사 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와 이에 따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학기)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①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생략)  
③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기타 수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학기)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한다.

- 학기제를 변경하려면, 변경된 당해 연도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의 이수에 대한 이행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과정에는 학교급별·교과별로 이수해야 할 연간최소수업시간수가 제시되어 있어 이 수업시간수의 이수 관계로 학기제를 변경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졸업과 상급학교 입학 사이의 공백기간을 학생과 학교가 새 학년도 준비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

(질의 5)  
111. 청소년의 3대 문제점 대책  
- 부모와 대화 단절  
- 교사 불신 → 교사권위 추락-언론화  
- 사회에 대한 저항

(답 변)

- 우리 부는 IMF사태 이후, 가정의 교육적 기능의 약화와 사회적 통합/조정 기능의 축소로 인한 세대간의 갈등과 청소년의 세대의 정체성 혼란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 학부모 교육의 강화
- 민주적 학생지도 방법의 조기 정착
- 학생의 책임과 인권보장 명문화
- 학생자치활동의 강화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생문화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학교문화 창조(교육비전2002) 계획의 추진으로

- 학생 축제 문화 육성
- 전교사의 담임제, 상담교사화에 의한 진로·상담 기능 강화
- 탄력적 교육과정운영 등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교를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로 재구조화하여 학생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朴範珍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하는 것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와 대책은?  
○자문기구로 할 경우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외되는 것이 조직원리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 학운위의 성격에 대하여 자문기구, 심의기구, 의결기구 등 입장에 따라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자문기구 및 의결기구는 학운위 제도 도입취지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학교교육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학교장에게 맡겨야 한다고 볼 때, 현행과 같이 심의기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학교장은 학교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교무를 통할하고 있으므로 직접 학운위에 참석하여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의사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봄.

(질의 2)  
성과급제에 대하여  
○교원성과급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



인가?

- 공정성 시비와 교직사회의 분열 조장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평가자는 동료교사가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와 같이 그 대상자 선정 방식의 개선의견은 없는가?

(답 변)

- 성과급제에 대한 기본방침은 행정자치부가 마련하게 됩니다.
- 우리 부는 동 방침을 토대로 교직사회의 실정에 부합되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교원 성과급 기준마련시 동료교사에 의한 평가 방안도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정성 시비와 교직사회의 갈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3)

신임교수 선발시의 성차별

- 대학교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 하여금 교수임용과정에서의 성차별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 교수임용과정에서 성차별의 의혹을 받는 대학의 경우 대학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답 변)

- 현재 187개 4년제 대학의 경우, 여자교수의 비율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며, 보직을 맡고 있는 여자 교수의 경우는 전체 여교수의 7.1%에 불과
- 교육부는 대학의 교수임용이 지연이나 학연, 성차별과 같은 정실과 편견이 개입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임용관련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당사자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대학당국의 부당한 임용배제행위는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여교수의 적극적인 보직 참여는 여교수가 학교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대학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과 여교수의 능력확장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교육부가 대학 관련회

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해 나가겠음

- 그리고 향후 대학평가지표 등에 여교수 채용비율 및 여교수 보직 비율 등을 반영하여 대학교수사회에서의 성차별 관행 타파를 유도하겠음

(질의 4)

담임 선택제

- 담임선택제는 보다 신중한 검토의 과정이 필요하고, 따라서 내년 부터 당장 실시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답 변)

- 담임선택제는 '99학년도에 전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에서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 또한 실시할 학교에서는 전 교원이 담임선택제의 취지에 대하여 공감하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누적되는 등 여건이 허락하는 학교부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질의 5)

서울대 개혁

- 서울대 개혁안에 대하여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 대학원 정원 12,000명의 산출 근거는?

(답 변)

- 현재의 서울대 개혁안은 무시험전형 실시, 학사과정 정원의 감축, 타교출신에 대한 대학원 문호 개방 등 긍정적인 사항이 많으나,
  - 학부대학의 모호성, 일반대학원의 분리, 호환성이 결여된 2+4제 전문대학원 도입 등 보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서울대 개혁안 중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이 임명될 총장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며,
  - 전국적 학제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공동으로 연구·검토할 계획임.
- 서울대 개혁안에서 제시된 12,000명의 대학원생수는 현재의 9,000명보다 증원된 것으로 타교출신 수용을 위하여 증원한 것으로 여겨지나,
  - 현재 교육부 입장은 현 정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임.

(鄭均桓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교육자치 관련

-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다면 무슨 방안인지?
- 교육위원회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를 없앤다면 교육자치를 “교육자 자치화” 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는데?
- 교육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의 산하에 지자체장으로부터 상대적 독립성을 갖는 교육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장은 교육감)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교육위원 및 교육감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답 변)

-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주민통제의 원리를 강화하고, 사회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부응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등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하여 '98.8.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 조창현 한양대 지방자치행정대학원장)에 연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자치를 기초단위로 확대하면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98.10.15. 공청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 이 날 발표된 안에 의하면,
  - 지방교육자치를 기초단위로 확대하되, 규모의 경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단위를 60여개로 광역화함에 따라 대응하는 단일 지방의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초단위의 교육자치는 특별지방자치단체화하고(교육위원회 : 독립형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은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직선으로 선출, 교육감 : 독립제집행기관으로 주민직선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선출)
  - 시·도에서는 일반자치와의 연계를 통한 일반자치로부터의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지방자치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합의제집행기관”으로 하여 의결기관을 지방의회로 일원화하면서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이 선출하며,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사무처리 책임자로서 “일반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동 위원회에서 공청회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결과를 제출하여 오면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중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주민통제의 원리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의 2)

교원임용 제외자 구제방안

- 정부가 발의하는 특별법 형식으로 이들 74명에 대한 임용이 이루어져야 타당하다고 여겨 집니다.
- 같은 문제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현행 “보안심사위”의 법적 근거인 “교육법 제77조 3항 및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교육부훈령) 제4조”는 구시대의 독소조항으로 폐지되어야 타당합니다.
- 이상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교원임용제외자 대책위가 주장하는 임용제외자(74명)와 교육부가 파악한 임용제외자(34명)가 차이나는 이유는
  - 기 제출한 자료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임용제외자를 파악하여 집계한 것으로
  - 대책위가 주장하는 인원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 의해 임용제외된 자 뿐만 아니라 발령순위에 들지 못하고 임용대기중에 임용고시 제도 도입('90.10.8 위헌판결)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 현재 구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대상을 확정하고자,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취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93년에 임용고시 합격자 61명이 보안심사에 걸려 임용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1차 확인한 바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실을 재확인할 계획입니다.
- 현재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대책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경과를 추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아울러 교육법 제77조 3항은 '98.2.28일자로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동 조항 폐지에 따라 이번

사건과 같은 민원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 보안심사위원회는 교육부 보안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임용전 신원특이사항(사상관계, 형벌, 벌금수형 등)에 대한 심사기능을 할 뿐 임용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3)

IMF 실적가정 중·고생 학비지원사업 지속방안

○IMF 실적 가정 중·고생 학비지원 사업지속방안에 대한 우리부 의견과 대응방안은?

(답 변)

- IMF 실적가정 중·고생 학비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99년도 IMF 실적가정 중·고생 학비지원 대상학생수는 2십8만3천명(전체중·고생 4백3십만명의 66%)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른 소요예산 추정액도 2,302억으로 늘어날 것임.
- 그러나 지난 9월4일 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99년도 동사업을 위한 국고 지원이 중단되고 지방 재정으로만 충당토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이 경우 지방재정수입 격감등으로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사업중단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상실 및 비행청소년 증가가 우려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도 가중될 것임. (서울가정법원의 청소년 범죄 발생비율이 전년대비 20%정도 증가되고 있음. 한겨레신문 4월 22일자)
- 동 사업은 수혜계층이 저소득 실직자 및 극빈층에 혜택을 주는 교육복지의 효시라 할 수 있음.
- 또한 이 사업은 우리 부가 민생현안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민생안정과 교육의 기본원리 측면에서 반드시 지원받고 지속되어야 할 사업이라 여겨진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함.
- 따라서 우리 부에서도 '99 IMF 실적자의 중·고생 학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IMF 극복)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회에 산심의과정은 물론 매년 추경예산 편성시 계속

적으로 문제제기 및 예산 반영요구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대한 관심과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4)

경원대 분규 해결방안

○경원대 최원영 이사장의 횡령사건에 대한 진실 및 책임소재가 규명되어야 하고, 교육부는 공정한 관선이사진을 조속히 파견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인수자를 영입하고 조속히 분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답 변)

- 경원학원 최원영 이사장이 학교자금으로 218억원을 예음그룹(회장 최원영)의 약속어음을 매입했으나 부도로 환수가 불가능해졌고
- 동 법인에서는 '98.9.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원영 이사장 등 9명을 신임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법인 및 학교의 경영공백상태의 조속한 해소와 안정적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 불법유출이 확인된 218억원의 여입여부와 재정운영 현황을 확인한 후 동법인 및 설치·경영학교의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질의 5)

국민대 분규 해결방안?

(답 변)

- 원동업씨는 이미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제적처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 대학측에 의하면, 원씨는 1997.12.9부터 4차례에 걸친 징계위원회를 거쳐 1998.1.7 무기정학이 의결됨에 따라 1998.2월에 열린 대학원 졸업사정시 원씨는 수료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수료하지 못했음.
- 국민대의 해결의지가 결여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 대학측에 의하면, 원씨의 경우 1997.12월부터 1998.5월까지 무려 5개월에 걸쳐 8차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대학원 및 국문학과에서 여러 차례의 지도를 통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반성의 기회를 주었음. 조춘화씨의 경우도 1997.12.12부터 1998.1.13까지 8차례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결정되기까지 그리고 재심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본인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주었음. 그러나 두사람은 이러한 기회들을 모두 거부하고 오히려 교수의 면전에 녹음기를 들이대거나 징계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학

교를 능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조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투쟁의 자세로 일관하였음. 이들의 투쟁과 책동으로 인해 학교는 많은 혼란과 고통을 받아 왔으며 학원의 법과 질서를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이들을 조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임.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방안

- 대학측에서는 학원내의 면학분위기 조성 과 질서회복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두사람을 징계(해임)조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함.
- 조춘화씨의 경우 '98.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학측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으며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음. 또 원동업씨의 경우도 지금 법원에 '부당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까지 제기하여 놓은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위 두사람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그 적법성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판단됨.

(질의 6)

덕성여대 한상권 교수 복직 방안

- 덕성여대 한상권 교수 복직건은 현 총장 취임 당시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사회각계 뿐만 아니라 교육부나 재단에서 여러차례 복직의 당위성을 밝히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미 복직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태에 대하여 교육부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답 변)

- 전 덕성여대 조교수 한상권은 동 학교법인에서 '97.2.28자로 재임용 탈락됨에 따라 '97.2.26일에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임용 탈락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였으나 '97.5.8 동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 바 있으며
-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여론에 따라 '98.6.10 동대학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특별채용 형태로 임용하기로 의결하여 동일 날자로 총장이 인사권자인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임용제청하였으나, '98.9.1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현 학교법인 이사회가 이사장 직무대행체제이므로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된 후에 동 임용 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우리 부의 입장은 당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를 존중할 예정입니다.

(鄭東泳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대학 추진

- 서울대의 대학원중심 개편은 순수기초학문 및 첨단공학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할 것을 제안하며

(질의 3)

학력중심의 사회구조 개편을 위한 제언

- 또한 서울대에 투입되는 자원을 경쟁력있는 특성화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야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방안은?

(답 변)

-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함.
- 대학원중심대학의 육성에 있어 그 지원은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기초학문 및 첨단 공학분야에 집중할 계획으로 있으며,
- 대학별 특성화를 위하여 서울대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대학원 발전계획 수립시 집중육성분야를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아직 서울대에서 집중육성분야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새로이 임명될 총장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집중육성분야를 선정·발전시킴으로써 백화점식 대학구조를 개혁하도록 하겠음.

(질의 2)

불법 고액과외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대책

- 근본적인 대책으로 교육과정 개혁이 필요하고, 학벌위주의 고용관행과 학부모의 의식 개혁이 필요함

(답 변)

○ 과외근절대책

- 우리 교육부에서는 불법 과외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기 대책으로, 과외가 가져다주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저해하고, 지나친 경쟁위주의 인성을 기르는 등의 과외 폐해를 홍보하여 과외를 예방하도록 하며,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학교밖 과외를 학교안으로 흡수하도록 하며, 불법 과외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 장기 대책으로는 무시험 대학입시제의 확대 실시를 통하여 과외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은 물론, 새학교문화창조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토론식, 주제탐구식, 소집단 협력학습식 등으로 바꾸고, 평가에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중요시

하는 수행평가를 점차 확대 실시하여 과외를 받을 필요가 없는 학교 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과정을 개혁하여, 교육과정의 수준을 낮추고, 분량을 줄이며, 선택과목의 확대하는 조치 또한 새학교 문화 창조운동에 포함된 내용임.
- 학벌위주의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부에서는 대학의 특성화 작업을 펼치고 있으나, 이의 정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의식변화가 있어야 하겠음

(질의 2)

불법 고액 과외에 대한 대책

- 금번 강남 불법 고액 과외 사건에 연루된 고액과외자 명단은 밝혀야 하며, 단순한 사기사건임을 강조해야 함

(답 변)

- 금번의 강남 한신학원의 불법 고액 과외 사건은 사기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교사들이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져서 부득이 교육부가 관여하게 된 사건임. 우리 부에서는 본 사건의 수사가 종료되어 관련자의 명단과 혐의 사실이 송부되는 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할 계획임
  - 본 사건에 연루된 교사에 대해서는 전원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조치
  - 교장, 교감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물어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
  - 학부모에 대해서는 누습적으로 고액과외를 한 자의 명단 공개
- 서울시 교육청의 학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
  - 전원 인사 조치하였음

(질의 4)

교육자치의 시작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착으로부터

-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운영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고 학교급식 등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기능을 가져야 함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해야함

- 학운위에 학생대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학교장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학운위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학운위에 대한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 학운위 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장기적으로 단위학교로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에는 찬성하나, 학운위의 기능을 의결기능으로 점차 확대하는 문제는 학운위의 회의 결과가 학교장의 권한을 기속하므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학교교육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학교장에게 맡겨야 한다고 볼 때 현행과 같이 심의기구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학의 경우 학운위의 기능이 법인 이사회의 기능과 일부 중복되고 사립학교의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학운위의 설치 여부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사학의 판단과 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 학운위는 정부기구가 아니고,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교원·지역사회인사가 학교 및 교육발전을 위한 제안과 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단위 학교 자치기구이므로 수요자 중심의 학교운영 측면에서 사학에도 학운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며,
  - 특히, 현재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되어 있고, 전체 초·중등학교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며, 실제로 사립학교가 교육과정·교육내용·교사자격 기준 등에 있어서 국·공립학교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립학교에도 학운위 설치를 의무화하여 학교발전을 위한 최선책을 상호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 이에 따라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모델을 개발하여 사립학교에도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학운위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과정에서 학생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하면 될 것이므로 학생대표의 참가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 관할청은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학운위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 만일 학교장이 이를 어길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 의거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벌칙 조항을 현행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질의 5)  
 일률적인 고교급식 확대, 예산낭비 우려  
 ○ 고등학교 급식 추진계획과 결식학생 증식지원 대책은?

(답 변)

1. 고등학교 급식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 봉사정신과 협동정신 등 공동체의식 함양의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은 여성의 사회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93년부터 크게 확대되어 올해 '98년부터는 전국 5,688개 초등학교중 98.9%인 5,625개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교 급식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자 중등학교 급식도 조기에 확대하자는 의견이 높았으나, 초등학교와 같이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는 형태로의 중등학교 급식을 확대하기에는 교육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많아, 외부 운반급식 또는 민간인 등도 교내에 급식시설을 설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96.12월 학교급식제도를 개선하고, 중등학교 급식은 위탁급식을 위주로 추진하였습니다.
- 그러나 '97.12월 중학교 급식률은 8.6%, 고등학교 급식률은 9.8%에 불과하며 여전히 급식을 희망하는 여론은 높아, 우리 부에서는 중등학교 급식확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98.2월 전국 80개교의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원 6,400명을 대상으로 「중등학교급식 확대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의견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계 고등학생의 57.1%가 점심은 물론 저녁까지 집 밖에서 해결하고 있었으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

두 급식실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학생 83.9%, 학부모 81.0%, 교원 77.0%)

실시형태로는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급식비도 2,000원 이하로 저렴하고 양질의 위생적인 급식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선 고등학교부터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중학교급식은 99년 하반기부터 2001년까지 전면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급식확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급식확대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청소년기의 균형잡힌 영양섭취는 평생건강의 밑거름이 되므로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건강 측면에서도 학교급식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성장기 학생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물을 재료로 생합성하여 새로운 세포와 필요한 물질을 만들고, 연소시켜 에너지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올바른 식생활이 우리 건강과 직결 되어있으나, 대부분은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입맛대로 식사를 하여, 에너지 과잉섭취,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 우리의 식생활 현실이며, 현대인 들에게 비만, 당뇨병, 동맥경화증, 심장병, 고혈압 등 성인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IMF의 영향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가계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가정에서의 식생활비 지출도 감소하고 있으며, 결식학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민건강 수준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일수룩 정책적으로 학교급식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양질의 급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학교급식 확대시 학부모의 가계부담 경감 효과도 있습니다.

중전의 외부운반급식 등 위탁급식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1식당 2,500원이었으나, 급식확대시 거의 전 학생이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식당 급식비를 1,500원~1,700원으로 권장하고 있으므로 고등학생 234만명 급식시 연 4,68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운영함에 따라 1교당 약 10명의 조리원이 필요하므로 약 2만명 여성인력 고용이 기대되며, 급식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주방설비 관련 산업과 건설인력의 고용도 필요하여 약 6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 실업대책에도 기여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학생 중식지원 방법에 있어 지원대상 학생임이 노출되지 않아 지원받는 학생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예산도 약 40%인 1식당 1,000원정도가 절약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급식확대 추진경과

○우리 부에서는 효율적인 고등학교급식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98.4월 부터 시·도보건관계관 회의 개최, 서울·경기·인천지역 급식실태조사, 부교육감회의, 교육감회의 등을 개최하여 학교현장의 의견과 시설을 조사하여 시·도별 급식확대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위탁급식업체도 방문하여 회사의 이익보다는 공익적인 교육사업에 동참하는 자세로 현행 1식당 2,500원 상당의 양질의 급식을 1,500원~1,700원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줄 것을 전제로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98.7.21~22 양일간에는 전국에서 중·고등학교 급식실시율이 제일높은 제주도 중앙여고 등 8개교의 급식시설 현장을 16개 시·도교육청의 행정과장, 시설과장, 보건과장이 합동으로 견학하며, 효율적인 급식시설 설치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중앙여고의 경우는 '97.10월부터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심은 1,256명 전원이, 저녁은 전교생의 42%인 527명이 급식을 하여 1일 총 1,781명이 급식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1식당 급식비는 1,450원~1,500원이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급식확대 재원확보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 구역안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경비만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고등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98.9.17 대통령령 제 15,891호)

□급식확대 계획수립 및 예산지원

○'98.8월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고등학교 급식 확대계획을 수합, 올해안에 고교급식 70% 실시를 위한 「'98 고등학교급식 확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월 현재 전국 1,922교중 18.6%인 358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 급식학교중 시설보완이 필요한 163개교를 포함하여, 올해안에 1,090교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99 전반기에는 642교, '98~'99 총 1,732교에 급식을 확대하여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98년 2,192억, '99년 1,485억 총 3,677억원으로 올해 소요예산 2,192억원중 약 50%인 1,109억원은 우리부 특별 교부금으로, 약 20%인 472억원은 시·도교육청 자체부담(시·도자구노력비 지원비 1,500억원 활용)으로, 나머지는 611억원은 운영위탁 받고자하는 민간인 등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99년도 소요예산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약 50%는 지원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현욱 위원님께서 '99년까지 급식 시설에 필요한 비용 3,677억과 민자유치가 예상되므로 되지 않을 경우 민자분 611억을 포함하여 총 4,288억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총 소요액은 611억을 포함하여 3,677억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98년도 지원 기준은 학교에서 급식시설을 직접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소요액 전액을 우리 부와 교육청에서 7:3으로, 운영위탁하고자 하는 학교는 급식실 신축 및 개축비용, 전기·수도·가스 등 기본시설은 우리 부와 교육청이 7:3으로 지원하고, 급식실 내부설비인 국솥, 밥솥 등 주방기구류는 수탁자가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재 규모는 적지만 구내 식당이 있는 학교는 기존시설을 개선 및 확충하고, 학생수가 적으며 인근 초등학교 등 급식시설이 있는 학교는 이들학교와 공동조리급식을 하며, 이러한 여건이 안되는 학교에는 급식시설을 신축토록함을 원칙으로하여, 구내식당 개선의 경우는 교당 2억원, 인접시설 활용은 0.5억원, 신축은 2.5억원을 소요액으로 산정하

였으며, 급식시설 설치를 이유로 학부모에게 후원금 등을 별도로 모금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급식확대 추진 실태조사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조치

- 우리 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급식 확대 추진실태를 점검, 독려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내실있는 급식확대의 실현을 위하여 '98.10.13~17일에 1차로 서울, 부산 등 8개 시·도교육청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였고, 10. 26~30일에 경기, 충남 등 나머지 8개 시·도교육청의 추진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또한 10.31일에는 시·도 급식담당관회의를 개최하여 급식확대실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제1차 급식확대 추진실태 점검결과 고등학교 급식이 단기간내에 전국의 70%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관계로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확대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급식시설에 대한 홍보 등 학교의 자발적인 노력이 부족하고, 학교장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98.9월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새로이 급식을 시작한 대구외곽의 한 종합고등학교 교장에 의하면 "학교급식 실시 이후 결석학생이 크게 감소(1일 30명→12명)하고, 결석학생 파악 및 지원이 용이해짐 등 기대한 것 이상의 효과가 있어 급식을 실시하기를 잘 했다"고 합니다.
- 학교에서 직영하는 경우는 물론 운영위탁하는 경우에도 1,500원~1,700원의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급식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실시하여 일부 학생만이 아닌 대다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감면과 공유재산사용료 인하 등 식품비 외적인 비용을 줄이도록 제도적 개선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위탁급식의 경우 그 시행목적과 기본방향, 업체선정 절차, 학교의 지도·감독 사항, 급식운영 내실화를 위한 학교의 노력 등을 규정한 시행요령을 마련, 시·도교육청에 '98.10월 시달하였습니다.
- 고등학교 급식확대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건강,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기간내 급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1년후, 5년후, 10년 후에는 역시 진정한

교육수요자 중심의 정책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랍니다.

2. 결식학생 중식지원 대책

□중식지원 개요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사업은 학생들간의 위화감 해소와 건전한 심신발달을 목적으로 지난 '89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 결손가정 등 빈곤가정 학생중 점심을 먹지 못하고 오후수업을 계속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에는 IMF의 영향 등으로 실직자가 크게 늘어나고, 이번여름 수해 등으로 빈곤가정의 결식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식지원 방법은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주관하여 1식당 2,500원 상당의 식사를 구내식당 또는 인근 식당을 이용하여 연간 180일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초등학교 전면 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관계로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에게는 학교자체에서 급식비를 면제해 주거나, 교육감이 급식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1식당 1,000원~1,300원 정도의 지원을 연간 180일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학생 선정은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가장 잘 아는 담임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98 중식지원 경과

○당초 '98중식지원 대상 학생은 10,263명(중 6,898명, 고 3,365명)분 4,618백만원(국고 2,257백만원, 나머지는 지방비)을 지원하였으나,

○IMF의 영향으로 실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결식학생 현황을 재조사하고 새로이 지원이 필요한 9,698명분 38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98.4.23)

○8월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여름 수해 등의 영향으로 결식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여, 학교자체적으로 급식비 면제 또는 교육감이 지원하던 초등 결식학생을 포함하여 중식지원 대상학생을 새로이 파악하고 부족액을 추가지원하였습니다.

-초등생 69,088명, 중·고생 43,760명 총 112,848명

-112,848명 지원에 필요한 230억중 '기확보



한 208억을 제외한 부족액 22억 추가지원 ('98.10.10)

□겨울방학등 향후 지원 대책

○우리 부에서는 학교에서만은 굶는 학생이 없도록 재차 11월 중으로 결식학생 현황을 파악, 지원할 계획이며, 추운 겨울방학 동안의 지원문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우리 부와 기획예산위원회,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원대책을 마련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6)  
특수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1) 특수교육진흥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은 어떠하며,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답 변)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그 기능은 특수교육진흥법 제4조제2항 및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교육정책심의회규정(대통령령)에 의한 교육정책심의회가 이를 관장하고 있으며, 동 심의회의 7개 분과위원회중 교육과정·장학분과위원회에서 특수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과 연구위원 1인으로 교육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 바, '98.10월 현재 운영실적으로는 동 분과위원회에서 3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주요업무와 현안사항 등을 보고 받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이상 12인이하의 위원으로 특수학교 교사,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이 부교육감이며, '98.10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모두 동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47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고등학교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의 지정·배치 등에 관하여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

함한 8인이상 12인이하의 위원으로 특수학교 교사,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이 학무국장(학무국장이 없는 교육청의 경우에는 학무과장)이며, '98.10월 현재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모두 동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303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중학교과정이하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의 지정·배치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청 간부진들의 관심 제고, 위원선정의 적정, 수시 회의 개최, 실질적인 회의 운영 등을 통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6)  
특수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2)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를 배치하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과,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장학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교육부에서는 '94.11월 특수교육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특수교육담당 전문인력을 보강·배치코자 「특수교육담당교원및교육전문직인사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1998년도특수교육운영방향」 시달시 또는 각종 회의시 등 기회 있을 때마다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를 배치하도록 지도하여 왔습니다만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정원 부족 및 일반교육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려 적격자를 임용·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특수교육 담당 교육전문직 정원을 확보함과 아울러 교육전문직 임용·배치권자인 각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 또는 전공자가 배치되도록 계속 권장하겠으며 이의 실천 여부를 교육청 평가시 반영하는 등 행정지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장학지도는

특수교육 업무 담당 장학사가 다른 지역의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를 초빙하거나 당해 지역의 대학교수, 특수학교 교장·교감 등 특수교육 전공자와 특수학급담당 우수교사를 초빙하여 집단장학 지도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을 확대 배치함과 아울러 동 업무 담당자중 비전공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함양시킴으로써 장학지도 충실 등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6)  
 특수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3)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 학습도움실 운영에 대한 대책  
 - 초·중·고 특수학급 설치수의 불균형에 따른 대책  
 -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미소지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해소대책

(답 변)

- 학습도움실은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일반학급에서 팀티칭 형태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하며, 이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차원에서 장애정도에 따라 일반학급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 수요자가 적은 편입니다.
- 통합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일반교사들에게 특수교육에 대한 연수 실시와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는 학급당 학생정원을 감축하여 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학습도움학급 형태의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98.7.16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5인 이상 12인 이하인 경우 1학급, 4인 이하인 경우는 3개 내지 5개 학교를 단위로 1학급을 설치하도록 하는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으므로 초·중·고·중등간 특수학급 설치의 불균형이 점차 해소될 것입니다.
-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정원은 각급학교의 정원 산출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총 학급 수에 포함시켜 교원 소요정원을 산출하여 관계부처에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바  
 - 최근 몇 년 동안은 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방침에 의해 필요한 만큼의 정원을 충분히 확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필요한 교원정원의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 부에서 확보된 정원을 시·도교육청별로 배정할 때에도 특수학급은 일반학급 수에 포함하여 정원을 산출·배정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별 교원 정원배정은 시·도교육감이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배정하고 있습니다.
- 향후 우리 부에서는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학급의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특수학급의 담당교사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임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6)  
 특수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4)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장애인 교육복지의 향상을 위한 국립특수교육원의 조직을 확대 용의는?

(답 변)

- 우리 나라 특수교육에 대한 위원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현재 국립특수교육원의 조직은 3과(총무과, 기획연구과, 연수과)로서 전국에 산재한 특수교육담당 교원(7,770명) 및 특수교육대상자 (48,573명)에 대한 연수 및 연구활동을 원활히 담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부는 국립특수교육원의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여 동교육원의 조직 및 정원 확대를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있으나, 국가경제위기 등에 따른 정부의 공무원 정원 감축정책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립특수교육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확대를 계속적으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鄭喜卿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부모가출학생에 관한 대책  
 ○ 부모가 가출한 학생에 대한 교육적·정신적 배려를 행정에 도입하는 방안은?

(답 변)

- 우리 부는 IMF사태 이후 증가하는 요보호 학생에 대한 대책으로 결식아동 지원등 물질적 지원을 강화해 왔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적·정신적 배려를 위한 행정시스템을 정비·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감함.

○앞으로 부모가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부적응/일탈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 담임 면담 등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결식아동 및 학비 지원시 부모가출학생 중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 학생상담자원봉사자와 학교운영위원등을 활용하여 대리부모 및 후견인으로 결연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며
- 학생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이들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활동을 강화하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상담센터 등 민간전문기관과 연계·지도를 추진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학교교육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행·재정적으로 실질적인 지원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질의 2)  
 유아교육 진흥에 대한 대책  
 ○1999년도 예산증가가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유아교육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는가?  
 ○유아교육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 변)

□1999년도에도 예산증가가 안되는 이유

- '99년 유아교육 지원 예산 : 4억1,500만원('98예산 : 1억6,400만원)
  - 유아교육자료 연구개발비 : 8,200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 3억3,300만원
    - 실험·시범유치원 지원 : 9,600만원(600만원, 16개 시·도, 1개원)
    - 자원봉사자 훈련운영 경비 : 2억3,700만원(11,850학급, 10,000원, 4일, 50%)

○예산증가가 안된 이유

- 유아교육 자원봉사자 훈련 경비 등 일부는 증액되었으나,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등은 확보하지 못함
- 당초에는 만 5세아 무상교육을 '99년에 읍·면지역부터 실시하여 200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100% 취원토록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예기치 못한 경제상황에 따른 '99년 정부의 긴축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함
- 앞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만 5세아 무상

유아교육을2000년에 면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유아교육법 제정

○유아교육법 제정 못한 사유

- 유아교육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시에 통합하여 유아학교 체제로 통합한다는 내용으로 정부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우리 부에서는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의 의견을 조정하여 심의 확정된 “유아교육개혁방안”을 유아교육정책의 기본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이 안에 의하면 유치원을 유아학교 체제로 전환하고,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한해 유아학교로 편입한다는 것으로 당분간 유치원·보육시설 이원체제를 유지토록 하고 있음
- 다만, 교육적 견지에서 유아학교체제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 실질적인 투자진흥시책의 추진 및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보육시설 운영자들의 인식전환, 보육시설 위축을 우려하는 여성단체등의 이해 등 사회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보며
- 유아학교체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론수렴과 아울러 충분한 시간여유를 갖고 신중히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음.

○우리 부는 앞으로 정부안으로 기 확정된 바 있는 유아교육개혁방안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 및 희망 보육시설 등에 한하여 유아학교 전환, 단계적·점진적 재정지원

(질의 3)  
 구조조정문제  
 (1) 교육부와 교육청의 구조조정은 강력할수록 교육현실의 실재는 풍요로워진다고 봄.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

(답 변)

○시·도교육청의 구조조정 추진내용과 경과를 말씀드리면

- 지방교육자치제의 활성화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정원제 및 기구정수제를 도입하여 하부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시·도교육청의 기구 및 정원을 감축코자 하며

- 지난 '98.7.29 시·도교육청에 업무추진지침을 통보하였으며, 조직개편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98.10.16 공포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조례와 규칙 등을 제정한 후 1차적으로 기구 개편 및 인력 감축 등을 '98.12월 말까지 완료하게 되며, '99년 이후에는 1차 구조조정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감량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추진중인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지역교육청의 통·폐합 등 2차적인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시 기구 개편 및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 실적을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그 실적에 따라 행·재정상 차등 지원을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3)

구조조정문제

(2) 산하 연구기관의 구조조정에 있어 교육부 산하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 및 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에 통합 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 기획예산위원회의 정부출연기관 경영혁신 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산하 연구기관중 우리 부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무총리 산하 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되게 되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고등교육기관의 정비차원에서 KDI국제대학원, KAIST, 광주과학기술원 등과 함께 별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 이번 경영혁신 계획의 주요내용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연구회를 설립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체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기획예산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부에 별도의 통합이사회를 설치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동 연구기관 정비계획은 기획예산위원회 주관으로 범 정부차원의 경영혁신계획으로 추진되

고 있는 만큼 개별부처의 통합이사회 설치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산하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4)

교육기관 평가기준의 변화 모색

○ 기관평가를 교육부의 정책 이행여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물량적인 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산출(Performance)을 아울러 평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 변)

- 교육부에서는 '96년부터 지방교육자치의 실시에 따른 책무성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청간의 경쟁을 통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평가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시행 첫 해인 '96년에는 교육개혁의 추진을 가속화시키고 교육정책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육개혁과 교육정책분야로 나누어 이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으나,
- '97년 이후에는 교육개혁의 확산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행·재정관리의 효율화등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조직자체의 효과성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를 전환시켜 나가고 있으며, 특히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정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한 자체 제안과제”를 평가과제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 한편 정량적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성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적 뿐만 아니라 내실화를 평가하는 한편, 서면평가이외에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97년부터는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 평가가 교육청 및 학교현장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으나, 아직 실시초기인 관계로 교육시책중심의 평가, 가시적/양적인 효과에 치중한 시·도교육청의 투자유발, 과도한 시·도교육청의 평가부담 촉발등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에 따라 올 11월말에는 평가 3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시·도교육청 평가를 되돌아 보며, 평가자 및 피평가자인 시·도교육청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향후과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대토론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의 5)

전교조 합법화 문제

○교원노조 합법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기를 바란다. 교육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이 문제에 관한 분명한 방안제시가 없다. 제도개선 추진원칙 중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학습권)'는 교원노조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답 변)

□교원노조 합법화 추진과정

-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과 21세기 선진국가로의 제도약을 위하여 노사정간 협력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이며,
-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98.2.6 교원노조 결성권을 '99.7월부터 보장하기 위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이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 노사정위원회(1, 2기)의 정부측 위원은 재정부와 노동부가 참여하고 있음
- 교육부에서는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1기 노사정위원회때 미진했던 교원노조 합법화 관련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여 그간 동 위원회 주관으로 사학,교원단체,학부모대표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98.9.23), 전문가 공개 토론회(9.30) 및 간담회(10.14)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 교원노조 합법화를 위한 관련법률의 제·개정 방향에 대하여 노사정위원회(노사관계소위)에서 합의안 마련을 위하여 그 동안 수차례 논의를 거쳤고 현재에도 관련 주체간에 입장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 '98.2.6 노사정위원회의 교원노조 합법화 합의 발표이후 한국교총, 사학경영자, 일부학부모 및 언론 등으로부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며, 현실적으로 교원단체가 전문직 지향단체와 노조지향 단체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 교원단체에 관한 교육부의 기본입장은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ILO, OECD등이 요구하는 국제적 규범에 부응하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동시에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학습권)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기본입장 아래에서 교원단체 제도의

다양화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향한 교육 개혁의 추진에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지향 교원단체는 노동관련법으로, 전문직 지향 교원단체는 교육관련법으로 제도를 다양화하여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습권 보호 대책

- 교원노조 법제화를 앞두고 다수 국민들이 교원들의 집단행동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성장기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정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우리 부는 이와 관련하여 교원의 권익보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우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며,
- 이러한 입장에서 노사정위원회에 교원노조 결성권을 보장하더라도 단체행동권을 금지함은 물론 단체교섭에 있어서도 협약체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입장이 제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6)

청소년문제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에서 관장

○문화개방과 관련하여 청소년 문화에 대한 영향이 극심한 데 '교육수요자'인 청소년에 관한 업무가 문화관광부에 소속되어 있고, 교육부가 관여할 수 없는 현재 체제를 바꿀 용의를 장관께서 갖고 계신지?

(답 변)

○교육부로서는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생이므로 이에 대하여 연말 정부업무 진단 평가시 이를 적극 고려할 예정입니다.

(金日柱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의대 신설비리 의혹

- '95학년도부터 금년까지 9개의 의대를 신설인 가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협의사항을 무시하는 등 정치적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 하시고,
- 첫째, 자체 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원의 특별감사 용의
- 둘째, 부속병원이 없는 모든 의과대학의 현황
- 셋째, 아울러 인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대학에 대해 인가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의향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 변)

- '95~'96학년도 의대 신설은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우리 부의 정원 배정에 차이가 없음.
- '97~'98학년도 4개 의과대학 신설에 있어서는 의대 신설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아 조사해 보니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대를 신설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판단됨.
- 즉, 의료취약지역으로 제시된 전남, 경기, 경남에 신설할 수도 있었으나 대전, 수원, 포천, 강화에 신설해 주었고,
- 종합병원 운영자에게 의대 신설을 인가하면서 의료 취약지역에 500병상 이상 병원설치를 조건으로 한것은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앞으로는 의대 신설보다는 필요한 경우 우수 의대에 학생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하겠음.
- 현재 부속병원이 설치되지 못한 대학은 국립인 강원대와 제주대가 있고, 사립대학은 관동대임.  
※'97~'98 설립 4개 의과대학은 이미 부속병원은 있고, 인가 조건은 의료취약 지역에 5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설치하는 것임.
- 국립대학은 우리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병원 신설보다는 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실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 사립대학은 인가조건 이행을 촉구하고 계획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모든 행·재정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

(질의 2)

국제대학원 지원사업

- 국제전문인력양성사업의 경우 '96, '97년도 예산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필요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으므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추가지원 여부를 내년에 다시 결정해야 함
- 국제대학원의 학사운영이 부실하여 대부분의 학생이 고시나 언론사 시험준비를 하는 '고시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음

(답 변)

- '96, '97년도 예산집행 실적  
- 제1, 2차년도('96.11~'97.12) 실적 : 약 194억원

(50%)

- '98.7월말 현재 실적 : 약 283억(71%)  
※서울대 국제지역원 증축 공사비는 전체 43억원중 약 15억원을 지출했으나 내년 2월 완공되면 예산집행 완료됨.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

-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제대학원설립 인가나 공사가 계획에 비해 지연되고 환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시설비 및 기자재 관련 예산집행이 늦어진 때문이나 가까운 시일내 국제대학원이 완공되고 멀티미디어 기자재 및 정보자료의 구입이 이루어지면 계획에 따른 집행이 완료될 것임.

○향후 추진방향

- 국제대학원 사업은 매년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이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간의 특화를 추진하고 시설·기자재의 공동활용방안 등을 통해 대학원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임.

○국제대학원 학사운영

- 국제대학원의 졸업학점은 일반 대학원보다 높으며(36~51학점) 학점뿐 아니라  
- 선수학점 취득, 인턴십 등 훈련, 영어로 수업 진행 및 발표, 정기적인 외국어시험, 외국의 유명 통상분야 등 교육프로그램 도입·실시 등으로 교육과정이 밀도있고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음.
- 사업시행초기 고시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진학한 사례가 있었으나 부담스러운 학습량때문에 대부분 자퇴한 것으로 파악됨.

(질의 3)

위탁급식 위생점검은?

(답 변)

- 학교급식과 같은 집단급식은 일단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폭발적이므로 식품의 구입, 조리, 운반, 배식 등 전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급식운영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외부 운반급식의 경우 학교 밖의 식품제조·가공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에서 조리·가공되어 교내로 공급되므로 학교장과 교육청 직원들이 위생감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와 같은 위탁급식은 교육재정 형편상 중등학교 급식을 초등학교와 같이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급식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교내에 급식시설이 없는 학교로서, 학부모들이 희망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학교의 장이 계약을 통하여 외부 운반급식 또는 민간인 등도 교내에 급식시설을 설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96.12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제도입니다.

○도입 당시에는 위탁급식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1년이 지난 '97.12월 중학교 급식률은 8.6%, 고등학교 급식률은 9.8%에 불과하며 여전히 급식을 희망하는 여론은 높아, '98.2월 전국 80개교의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원 6,400명을 대상으로 「중등학교급식 확대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계 고등학생의 57.1%가 점심은 물론 저녁까지 집 밖에서 해결하고 있었으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급식실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학생 83.9%, 학부모 81.0%, 교원 77.0%)

실시형태로는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급식비도 2,000원 이하로 저렴하고 양질의 위생적인 급식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선 고등학교부터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중학교급식은 99년 하반기부터 2001년까지 전면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급식확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급식 정책이 종전의 외부 운반급식 등 위탁급식 위주에서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되고, 시설예산도 지원됨에 따라, 고등학교 급식은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교내 급식시설을 민간인 등에게 운영위탁하는 경우에도 학교와 교육청에서의 급식위생, 질 등에 관한 지도·감독이 보다 용이해졌습니다.

○설사, 교내급식시설을 민간인에게 운영위탁할 경우에도 학교에서 직접운영하는 경우와 같이,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사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제공하여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며, 급식활동을 생활교육, 환경교육 및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교육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급식을 저렴한 급식비(1,500원~1,700원)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부의 방침이므로, 위탁급식의 기본방향과 시행절차, 급식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시 유의사항으로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시설관리, 학교급식 전담

직원·배치 등 인력관리, 급식가격 관리, 급식의 질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급식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학교의 노력으로 급식담당 교직원의 지정, 급식운영상황 점검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학교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요령을 마련, 시달한 바 있습니다.(’98.10.26)

○학교내 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업자가 급식전담직원인 영양사를 두도록 하였으므로 학교에도 별도로 식품위생직(영양사)을 두도록 하는 것 보다는 당해 학교의 가정, 기술 또는 양호교사 등 식품영양 및 급식위생과 근접한 과목 담당교사를 급식담당교사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해 급식운영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교육청주관의 급식연수를 실시하는 등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할 예정이며, 또한 교육청 소속 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급식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전담토록 하도록 하는 등 급식의 질, 위생 및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4)

학교발전기금 관련

- (1) 교육재정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
- (2) 모금 허용으로 교육현장 황폐화에 대한 대책
- (3)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립학교의 형평문제
- (4) 모금과정에 교사 동원, 부익부 빈익빈 현상 초래

(답 변)

○교육재정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

- 학교발전기금제도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단위학교의 자치기구로 자리 매김 하여 학교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일환임
- 학교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부금의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투자를 대신할 의도는 없음
-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교육정보화 관련사업 지원,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교육부나 교육청의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은 학교발전기금과 관계없이 지속될 것임
- 발전기금의 조성과 사용을 통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학교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정책지도도 그렇게 할 것임

- 모금 허용으로 교육현장 황폐화에 대한 대책
  - 학교발전기금이 무리하게 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마련하고 있음
    - 사업목적, 기금조성방법, 지출계획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기금 조성
    - 수립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조성 및 집행결과 등 모든과정을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
    - 조성된 기금의 사용용도를 법령(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제한
      -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립학교의 형평문제
  -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없어 종래의 「각급학교기부금품관리요령」에 따라 자발적인 기부금품접수만 가능 (적극적인 조성 불가)
  -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계획임
- 모금과정에 교사 동원, 부익부 빈익빈 현상 초래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정의 주체는 학교운영위원회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기금운용계획은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공개되고 집행결과도 공개되어 교사들이 동원되는 일은 억제될 것임
  - 발전기금조성에 교사가 동원되거나 발전기금의 실적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하겠음
  - 발전기금으로 인한 지역별 차별화가 심화될 경우 이를 고려한 학교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것임
- 단위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임, 따라서 학교발전기금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학교, 교육당국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
- 염려해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지난 9월15일부터 시행. 사전에 충분한 연수 등을 통해 기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도 보완 문제는 어느 정도 시행해 본 후 나타

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음

(질의 5)  
교단선진화사업  
○본위원회는 졸속행정이 빚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을 이제라도 백지화하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쓰지도 않는 첨단 기기를 모든 학교마다 비치할 것이 아니라 교과연구실 등에 우선 비치하여, 그 활용성과와 여건에 맞추어 확대 보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 변)

- 교단선진화사업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초·중등교육에 도입하여 전통적인 교육방법, 내용 등의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모든 교과를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도록 일반 학교에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교육 개혁 추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보급 대상학교를 선정토록 하여 필요한 학교에 필요한 기기가 보급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교수-학습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개발·보급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98.10.9, '98학교정보화교육추진협의회 3/4분기 회의시, 기왕에 보급되어 있는 교단선진화사업 기기를 교육목적 달성, 기기 활용도 제고, 교단선진화 사업 목적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배치 가능토록 조치하였음

(질의 6)  
교육부 방침에 배치하는 서울대 사태에 대해  
○서울대는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선정에서 탈락하고, 교육부의 구조조정안과 입시제도 개선안에 반발하고 있으며,  
- 교육부의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등 교육부와 서울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된다고 느끼고 있음.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답 변)

- 교육부와 서울대 사이에 특별한 갈등은 없으며, 단지 일부 언론을 통하여 과장되게 표현된 것일 뿐임.
- 서울대가 교육개혁 우수대학 선정에서 탈락하게 된 것은 서울대의 자체평가보고서가 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에 맞지않아서 이며,



- 대학 입학전형시 고교등급제 등은 실시하지 않기로 한 바 있음.
- 또한 감사에 있어서는 이전에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는 실시여부가 정해진 바 없으며, 필요에 따라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서울대 총장선출 결과 조만간 신임 총장이 임명될 것이므로,
  - 서울대가 고등교육개혁에 앞장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임.

(질의 7)  
대입제도 관련  
○ 고교간 학력차에 의한 등급화에 대한 견해는?  
○ 추천제 실시에 따른 치마바람 봉쇄 방안은?  
○ 대학입시 전권을 대학에 넘길 의향은?

(질의 8)  
대학추천입학제  
○ 추천제 실시 보완책으로 자기소개서나 수학계획서 등을 한 장소에서 직접 기재토록 하는 방안은?  
○ 추천입학제를 여름방학이전에 마무리할 용의는?  
○ 교육부방침에 배치하는 서울대와의 갈등 해소 방안은?

(질의 9)  
체육특기생 대입부정  
○ 체육관련 학과가 없는 대학의 체육특기자 처리방법은?  
○ 체육특기생 제도의 개선방안은?

- (답 변)
- 고교등급제는 위헌소지까지 야기되므로 금지
    - 이번 새 제도는 오로지 성적 위주 전형을 지양하고 무시험 전형을 활성화하는 것이므로 성적으로 고교를 등급화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음
    - 중학교까지 새로운 입시과열이 일어날 수 있어 대학문제를 고교로 전가
    - 수능성적으로 전국 수준의 성적 가능 가능
    - 전국 학생을 고루 선발하도록 노력함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
  - 추천제 전형의 공정성 확보
    - 추천의 기준이나 내용을 명확히 마련하여 논란을 예방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기준과 절차를 심의하고, 최종 추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추천의

- 공정성·객관성 확보
- 대학입시 관리 전권을 대학에 넘길 의향 유무
  - 정부는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대학진학 희망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기능 이외에는 대입전형 관리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을 것임
  - 새 제도는 사실상 대학의 자율권 보장 조치임
- 추천제 전형시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등의 기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대학이 3년간에 걸쳐 다듬어 가되, 자기소개서와 수학계획서는 심층면접때 확인 가능
- 현행제도는 9.1일부터 학생선발 가능하며, 1학기부터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위원님 지적대로 장점이 있음
  - 그래서 새 대입제도에서는 1학기부터 수시모집을 허용하되 10%로 제한하여 교육과행 방지
-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달리 우리 부와 서울대가 서로 갈등관계에 있지 않음
  - 그러나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부는 서울대와 더욱 긴밀한 협의를 하여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음
- 동일계열 모집단위에만 입학 허용
  - 2000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의 경우도 다른 특기자처럼 동일계열에만 입학할 허용하는 '95년 예고 사항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일반 학과 편법 진학을 위한 과열 현상 해소
  - '99학년도에 정원 조정을 통하여 경기지도과, 생활체육과 등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만 특기생 모집 가능
  - 지방 사립대는 정원 조정을 자율 결정. 단, 수도권 소재 대학은 자체 정원의 조정으로 신·증설 가능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모든 종류의 특기자는 동일계 진학 이후 다른 모집단위로의 전과는 제한되어 있으나 복수전공 등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
- 체육특기생 제도 개선방안
  - 운영비 투명화와 사전 스카웃 금지
    -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반드시 학교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
    - 감독 또는 코치를 통한 학부모의 기부금품 모금은 불법이므로 금지
    - 사전 스카웃을 통하여 음성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스카웃비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 관행이므로 이를 금지
  - 체육특기자 공개선발 원칙 준수

- 음악·미술 특기자처럼 반드시 공개지원과 심사위를 통한 선발
-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선발기준과 절차는 대학에 일임
- 최소한의 학업능력 배양을 위한 노력 권장
- 지·덕·체의 조화로운 체육인 양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수업참여를 학교의 장이 정하여 학생들의 최소 학력 구비를 위해 노력
- 대학은 특기자의 최소학력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기본적 학력을 요구

**(金顯焄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집행에 대한 교육부 대안 설정

- (1) 교육세 폐지에 대한 교육부의 기본입장은 교육세 폐지 불가인데, 교육부 나름대로의 안정적인 교육재원 확보 방안
- (2) 대통령으로부터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받아낼 용의는?

(답 변)

- 지방교육재정중 6.2조원인 약 32.5%를 차지하는 교육세는 목적세란 이유 하나로 폐지할 경우에 지방교육자치가 위협받게 되고, 교원의 보수마저 지급하지 못할 위기가 예상됩니다.
- 따라서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대책없이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운영비의 대폭 감축과 교육개혁의 추진이 불가하며,
  - 신도시지역 등의 학교 미신설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 현재 조세체계 개편으로 교육세의 폐지가 논의되고 있으나,
  - 우리 부에서는 교육세의 폐지를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 한편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하거나 국세의 일부세목을 교육양여금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 '99년이후에도 시·도세 2.6% 해당액이 계속 전입되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 기초자치단체에서 고등학교까지 급식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도 개정하였고,
  - 일반회계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입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에서도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자구 노력 강화를 위해 기구개편·인원감축, 사업비 및 시설비 삭감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통령께서도 교육재정의 확충(GNP 6%)을 공약하셨으나, 경기침체로 현재로는 어려울 것이지만 추후 경제가 회복되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고, '98.10.17 “입시개혁안” 업무보고시 교육세 존속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질의 2)

교육자치제 개선안 “주민통제”와 “전문적 관리” 사이의 조화 중시

- (1) '91년이전 광역교육자치제와 교육부의 광역교육자치제 개선안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 (2) 교육감을 사무처리책임자로 하는 경우 지자체로부터의 전입금을 상향조정하여 명문화하고 교육감이 교육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지자체장에게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3) 신분이 불안정하고 임기 2년인 학운위위원에게 임기 4년의 교육위원 선출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주민직선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 (4) 교육자치의 목적을 고려할 때, ‘주민통제의 강화’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관리’와의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와 대책은?
- (5) 가능한 도시지역과 주변의 농촌지역을 통합한다는 것은 생활공동체의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기초교육자치구역획정안의 실질적인 구역 획정기준은 무엇인가?

(답 변)

-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주민통제의 원리를 강화하고, 사회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부응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등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하여 '98.8.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 조창현 한양대 지방자치행정대학원장)에 연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자치를 기초단위로 확대하

면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98.10.15. 공청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 날 발표된 안에 의하면,

- 지방교육자치를 기초단위로 확대하되, 규모의 경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단위를 60여개로 광역화함에 따라 대응하는 단일 지방의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초단위의 교육자치는 특별지방자치단체화하고,(교육위원회 : 독립형의결 기관으로 교육위원회는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직선으로 선출, 교육감 : 독립제집행기관으로 주민직선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선출)

- 시·도에서는 일반자치와의 연계를 통한 일반 자치로부터의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지방자치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위원회를 합의제집행기관”으로 하여 의결기관 을 지방의회로 일원화하면서 교육위원회는 학교 운영위원회 전원이 선출하며, 교육감은 교육위 원회의 사무처리 책임자로서 “일반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교육감을 임명 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1이전에는 교육학예등에 대한 집행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 교육위원회를 시·군에 는 교육장을 두되,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과 지자체장 및 교육감으로 조직하고 교육위원회에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교 육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청으 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감을 두도록 되어 있 었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위원회의 광역 교육자치개선안은 교육위원회가 합의제집행기관이라는 점은 같으 나,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교육감의 임명방법등 이 '91이전과 다르며,

○특히 '91이전에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일반자치) 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교육자치가 형식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으로, 지방자치가 실제 시행되어 주민통제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현 재와는 그 상황 및 여건이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을 상향조정하여 명 문화하는 문제는 계속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하 면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 례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운위 위원에 의하여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주민대표성 부족 및 학운위의 정 치세력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위 위원회에서 주민직선등 다양한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검토하 고 있으나, 위 공청회에서 주민직선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위원”선출에 대하여도 무관심한 주민정 서 및 “최근의 선거홍수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등을 이유로 우려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위 위원회에서 “가능한 도시지역과 주변의 농촌 지역”을 통합하여 기초교육자치단위를 설정하도 록 한 것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역이 되어 있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한 자치단위로 함으로써 학생의 학교선택권 및 교사인사의 탄력성을 부 여하여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자는 데 있었던 것으로 생활공동체의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기초교육자치의 구역은 우선 교육자치의 규모의 경제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의 교육 위원 선출권역인 60여개 정도로 기초단위를 설정한다는 전제하에 생활공동체의식·인구수·학 생수·국회위원선거구 및 학군등을 고려하여 정 하였는데

-시(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생활공동체의식 이라는 면이 실제 희박하므로 효율성 및 경제 성을 도모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어 확정하 였으며

-도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이 광활하고 생활공동 체의식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특징을 감안하여 대상 학생수등은 적더라도 보다 세분화하여 기초단위를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동 위원회에서 공청회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결과를 제출하여 오면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 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주민통제 의 원리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 니다.

(질의 3)

교원의 정년단축과 정점임금제 도입은 교원 의 신분에 대한 관점변화를 의미하는가?

(1) 교원정년단축은 단순히 '재정의 효율성'이라 는 경제논리외에 '교원의 우대'를 위한 정부 의 노력을 나타내는 효과도 있으므로 교육부

는 교원의 우대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지속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 (2) 정점임금제를 전문직인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 (3) 교육부에서는 정점임금제와 관련하여 '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정점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소기의 '교직사회 활성화'와 '생산성(교육의 성과)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는?

(답 변)

○교육부는 정년단축문제를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접근하고 있지는 않으며, 젊고 열정 넘치는 교원을 원하는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 충족 및 교육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요망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전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경기가 회복될 시점까지 국정운영의 효율화 기조에 교육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년이 어느 선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교원의 사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로서는 정년조정이 정부구조 조정 차원의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교직사회와 국민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한편,

-교육 현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정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퇴직자 중에서도 유능한 교원은 다시 봉직할 수 있도록 계약제의 도입과 초빙제의 확대를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절감되는 예산을 신규교사 채용에 투입,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교원 근무여건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  
 • 연수비의 지원 등 열심히 일하는 교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 교과전담교사의 확보율을 높여 초등교사의 수업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원보수체계는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가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점임금제는 생애급은 동일하게 하되, 생활비가 가장 많이드는 46세내지 55세 주변 연령층의 보

수액이 많도록 개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실제 동 연령대가 교직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업무의 부담도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수지급의 원리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재원 확보,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교직사회의 특수성에 부합되는 제도인지도 함께 심도있게 검토하여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질의 4)

(1) 교장임기제의 임기 4년은 유지하되, 연임제한은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데 교육부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답 변)

○교직사회의 신진대사 촉진을 위해 '91년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교장임기제에 대하여는 그간 대부분의 교장이 중임되고 있으며, 교장이 교령화 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교장 등 관리직 교원들로부터 연임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교장임기제의 시행기간이 짧은 뿐 아니라, 교직사회의 신진대사 촉진을 위해 임기제의 철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4)

(2) 관리직으로 장기간 종사한 교장들이 임기 만료후 원로교사로 임용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는?

(답 변)

○원로교사에 대하여는 학생교육보다는 주로 신규교사 상담, 교내 장학 등의 업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수업을 맡게 될 경우에도 수업시수의 경감을 통해 그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므로 학생교육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성공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윤리, 상담 등으로 담당과목을 조정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4)

(3) 퇴임한 임기제 교장들이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들은 나이많은 교사들을 싫어하는 분위기에서 이들에게 수업을 맡기는 것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개혁방안과 어긋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는?

(답 변)

- 원로교사로 임용된 전직 교장들은 학생의 직접 지도보다는 주로 신규교사 상담, 교내 장학지도 등의 자문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있으며
- 또한, 퇴임한 임기제 교장은 원로교사외에 초빙 교장으로도 그 동안 쌓은 교육 경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방안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4)

(4) 유능한 교장을 양성하는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개발된 교장의 능력을 단 4년 혹은 8년동안 활용하고 사장(死藏)시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교육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는?

(답 변)

- 교장 임기제는 다소의 문제점은 있으나 교직사회의 신진대사 촉진 등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이를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동 제도의 실시로 유능한 인력이 조기 퇴직하는 것은 교육발전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으므로
- 초빙제의 확대실시, 계약제의 도입 등을 통해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5)

새로운 교원연수제도 및 평가방식이 교직사회를 지탱해 온 질서와 의식봉괴를 초래

(답 변)

- 현재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연수 기본방향 중의 하나는 타율적 연수가 아닌 스스로 찾아서 하는 자율연수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하여 연구·연수이수학점제, 다양한 연

수기회 및 프로 그램의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아직 이러한 연수기본방향의 효율적인 시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함에 따라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바와 같은 현장교사의 반응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그러한 반응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며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부분도 많다고 사료됩니다.
- 교원연수의 효율적 시행은 교원 인사정책의 전반과 맞물려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교원인사 전분야에 걸친 정책개선과 병행하여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덧붙여, 우리 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비전 2002 : 새학교 문화창조”가 학교현장에서 실현되어 예시하신 고등학교 3학년 담당교사의 근무와 같은 상황이 개선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지적하신 교원연수와 관련된 문제점도 더욱 효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의 6)

‘노래방’ 출입 허용

(답 변)

- 노래방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
  - 청소년의 노래방 출입허용 방침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관하여 경찰청과 문화관광부 합동으로 「청소년의 놀이 문화공간」 확충 및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음성적으로 청소년의 대다수가 출입하여 청소년의 탈선장으로 이용되었던 노래방을 일정한 조건하에 양성화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의 놀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노래와 가무행위 자체가 풍속상 유해한 행위는 아니라는 전제하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노래방을 출입한 청소년의 비율이 70%를 넘는 상황<이미 제출한 풍속영업 관련 규제개혁방안(II) 11~12면 참조>에서 규제만 하기 보다는 양성화·개방화하여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 시설 허용 기준은 감시용이한 거리내 룸 지정 및 투명화 기준 강화, 22:00까지로 출입시간 제한, 배경영상 및 조도규제 강화, 업주에게 영업장내 풍기문란을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여하여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99.3.1 시행 예정으로 경찰청과 문화관광부가 법제화를 추진중입니다.

- 이 방안에 대한 우리 부의 입장은 이미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과 같이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현행 학교보건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아 청소년 노래방을 성인용과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과 불법·변태영업 행위 차단을 위한 강력한 단속체계가 확립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이며,
- 이러한 우리 부의 견해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주최 「노래방과 청소년 대책 토론회('98.4.30)」에 참석(우리 부 학교정책심의관실 김상영 교육연구관)하여 명백히 표명한 바 있습니다.
- 본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우리 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 체계상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외에서 우리 부가 청소년 관련 시설과 업소를 규제할 수단이 없으며, 노래방에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할 지라도 학교주변에 노래방 등 유해업소의 난립을 방지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것이 비록 풍속상 유해하지는 않더라도 학생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금과 같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제도를 존속시킬 예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은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청소년 문제 포함)는 강화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규제사항을 획일적으로 취급할 수는 없으며,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필요성은 달리 평가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선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환경 저해요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7)

학부모의 교원평가 교직전문성 침해와 평가책임 수반문제가 선결되어야 함

- (1) 학부모에 의한 교원의 평가는 평가대상자가 불공정한 평가를 당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며, 평가의 타당성·신뢰성·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교원의 전문적 교육활동이 침해 또는 제한을 받아 자율적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교육부

의 견해는?

(답 변)

- 그 동안 연공서열 위주로 행해져 왔던 교원의 인사체계는 능력과 실적위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교사·학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에 의한 교장·교감평가제도입니다.
- 동 제도가 성공되기 위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상되는 여러 상황에 대한 보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우리 부에서는 평가의 타당성·객관성·신뢰성 등이 확보될 수 있는 평가제 도입을 위하여 평가방법의 개발,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질의 7)

(2)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혹은 교원에 대한 평가를 해야만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평가는 학교 혹은 교원의 전문적 영역을 제외한 시설, 환경 등으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답 변)

-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교원 평가제는 직근 상급자만에 의한 연공서열 위주의 현행 인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유능한 교원이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만 학부모 등 비전문직 영역의 인사가 교원의 전문적 영역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제도 도입 이전에 해결을 위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 8)

- (1) 현재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업무가 얼마나 과중한지 알고 있는가?
- (2) 학교현장에서 교육개혁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획기적인 업무부담 경감 방안은?

(답 변)

-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의 가장 큰 요인은 공문서 유통량 과다로 우리 부에서는 공문서 유통량 감축을 위해 이미 구축된 교원업무지원 시스템, 교육정보유통 시스템 등 학교종합정보관리를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공문서 유통관리의 편리 및 학교행정처리의 적정을 위해

- 각종 보고의 일몰제 시행
- 보고요구 문서의 심사강화
- 연간 보고내용, 필요서식의 연초 일람 송부
- 회보의 활용 확대
- 교무실에 사무전담 요원의 배치
- 유관기관의 불필요 업무 협조 요청 자제요구
- 잡무에 대한 교원의 인식전환 등을 포함하는 업무경감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부분)

(鄭喜卿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교단선진화 사업에서 학교내 전산망 구축사업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 최근들어 학교내에 여러 가지 전산기기들이 보급되고, 인터넷의 적극적인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교육부에서도 전산망 구축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2년까지 1만여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내전산망을 완비할 예정임
- '97년에는 346개교, 올해에는 866개교에 대해 구축하고(전체의 약 12%정도), 일부 학교에는 전산실만의 교실망도 구축하고 있음.

(질 의)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초·중등학교에 배치된 영어·과학실험실·전산 보조요원들이 학교현장 부적응 등 실효성이 적는데 이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답 변)

- 동 사업은 고학력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임
  - 채용인원 : 6,000명(예산 180억원)
    - 초등영어보조요원 : 1,500명
    - 중등과학실험실보조요원 : 1,500명
    - 초·중등 전산보조요원 : 3,000명
- 동 사업의 긍정적 효과
  - 교사의 업무 경감 효과, 수업의 질 향상, 대졸 미취업자에게 한시적(6개월)으로 일 자리 제공
- 문제점
  - 일부 학교 현장에서 현직 교원과의 호흡 불일치등이 있으나, 근무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사직은 소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 중도 사직자
      - 영어보조요원 : 42명(2.8%)<재취업등 37, 부

적응 5>

- 전산보조요원 : 108명(3.65%)<재취업등 100, 부적응 8>

○향후대책

- 향후 보조요원 배치시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한 학교 단위의 수요조사를 통해 이를 기초로 배치
- 배치전 사전 교육 등을 통하여 학교현장 적응 역량 강화

(질 의)

○중·고등학교 급식확대정책을 개선할 용의는?

(답 변)

- 중등학교급식에 관한 의견조사 실시('98.2)
  - 조사대상 :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원(전국 80개교 총 6,400명)
  -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2,000원이하의 가격에 양질의 급식을 따뜻하고 위생적으로 공급할 것을 희망
  - 고교생의 57%가 점심은 물론 저녁도 집밖에서 식사
- 급식확대 정책 변경
  - (종전) 중·고등학교 급식을 위탁급식 중심으로 확대
    - 급식비가 높아(1식당 2,500원정도) 이용을 저조
  - (변경)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급식실시
    - 양질의 급식을 저렴한 가격(1,500원~1,700원)에 제공
    - 고등학교 급식 연내 70% 실시, '99 전반기까지 전면실시
    - 중학교급식은 '99후반기부터 2001년까지 전면실시
- 기대효과
  - 청소년기의 균형잡힌 영양섭취는 평생건강의 밑거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건강면에서도 학교급식 확대 필요
  - 학부모의 가계부담 경감(연 4,680억원)
  - 고용창출 효과 6만명(조리원등 여성 약 2만, 단기 건설인력 약 4만)
  - 결식학생 중식지원 문제 해결(소요예산의 40% 절감)
- 고등학교급식 확대 추진계획
  - '99 전반기까지 1,732개교에 급식확대, 3,677억 소요 추정

- '98년 1,090교 2,192억/'99년 642교 1,485억
- '98 급식시설 예산지원
  - 직 영 : 소요액 전액
  - 운영위탁 : 건축비 지원, 주방기구는 수탁자 부담
  - ※ 구내식당 활용 : 2억, 신축 : 2.5억 지원(민자는 교당 1억 추정)
  - 우리 부 지원 1,109억, 시·도교육청 부담 472억원, 민자유치 611억원
- 급식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도·감독 철저
  - 운영위탁급식의 경우도 위생, 가격, 질 확보를 위해 운영위탁급식 시행요령 시달
- 실태점검 실시
  - '98.10.13~10.30 서울 등 16개 시·도의 급식 확대 추진실태 점검
    - 급식시설을 교육청에서 공동발주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
    - 일부 교육청(대구)에서는 운영방침을 변경하여 학교급식으로 추진
    - '98.9월 급식을 실시한 대구다사종합고등학교에서는 “학교급식을 실시후 결석학생이 크게 감소(1일 30명→12명)하는 등 기대 이상의 효과 있다함
    -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에 관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등 미실시
  - 계속 학교현장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 보완 및 개선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학교급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질 의)  
○ 교육개혁 추진시 현장 및 교육전문가 의견 수렴 필요

- (답 변)
- 새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 우리 나라가 지식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2의 교육입국'을 지향함.
    - 이를 위해서는 기존 교육의 틀을 정비하고, 교육과 관련된 기존의 의식, 행태 등을 일신하는 총체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 단순한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 되도록 함으로써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가진 인간' '공동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덕·체가 고루 겸비된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 대입 무시험 전형제도의 도입을 통해 현행 초·

중등학교의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이의 정착을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변화를 넘어 학교사회 전체의 행태 변화와 학교사회를 둘러싼 사회풍토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학교문화의 창조가 필요함.

- 나아가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고등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의 대학원 중심대학과 교육중심의 학부중심 대학으로의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방향에서 지난 정부이래 추진해 오고 있는 교육개혁 사업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공약 사항,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대통령 취임사 및 8.15 경축사에 포함된 개혁방안 등 현재 추진 중인 핵심적인 교육정책을 망라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추진하겠음. 동 계획은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정책심의회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할 예정임.
- 다만, 이러한 교육개혁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질 경우 교육현장에서 참여 및 공감대 형성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유념하여 교육현장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음.
- 이와 함께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시민단체, 교육전문가 등 교육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교육개혁의 실효성을 더욱 높혀 나가겠음.

**(金許男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 '97년도 사립대학교 결산결과 적자운영 69개 대학, 부채가 자본금보다 많은 3개 대학 등 부실운영 대학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은?

- (답 변)
- 사학의 자율경영정책에 맞게 사립대학은 자구적인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정부는 사학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노력 하였습니다.
  - <제도적 조치사항>
    - 예·결산서의 공개를 의무화 하였고(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조 및 제42조)
    - 입학정원 500명 이상 대학은 감사중 1인을 공인회계사로 선임하고, 입학정원 2,000명 이상 대학은 외부감사를 의무화 함(사립학교법 제31



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행정적 조치사항>

- 사립대학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 유의사항을 매년 시달하고
- 대학의 경영혁신 유도를 위하여 재정을 차등 지원하며
-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사학진흥기금을 통한 용자도 확충하고 있음

□ 또한, 사학의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하여 「사학법인의 재무구조 건실화 기본계획」을 '98.5.30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내용

- 대학 스스로 해야할 내용
  - 학사구조개혁, 조직 슬림화, 재정의 투명성 제고 등
- 교육부와 정부가 해야할 내용
  - 대학자구노력실적을 재정지원과 연계, 구조조정 유도 등
- 제도적 지원
  - 세제지원 : 관계부처(재정경제부)에 반영 협조 요청
    - 저수익성 수익용 부동산의 고수익화 지원을 위해 특별부가세 면제범위 확대
    - 사립학교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근로소득 전액 특별공제 인정
  - 구조조정 등 지원 : 사립학교법령 개정
    - 교육용 재산이라 할지라도 학교법인간에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학생등록금에 대한 압류 방지대책 강구

추진내용과 실적 및 계획

<사학의 구조조정 등 지원>

- 내 용
  - 교육용 재산도 사학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 간에는 처분가능
  - 등록금 압류방지 등
- 추진실적 및 계획
  - 사립학교법개정 추진중(관계부처 협의 완료)
    - \*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받을 권리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압류하지 못함
  -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 추진(국무회의 10/20)
    - \* 교육·연구 및 특성화 제고를 위하여 학교법인간 재산교환 가능 조치

<세제지원>

○ 내 용

- 저수익성 수익용 부동산을 고수익 재산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부가세 면제범위 확대
- 사립학교에 대한 개인기부금의 근로소득 전액 특별공제

○ 추진실적 및 계획

- '98.9 법인세법 개정(안)에 특별부가세 인화 반영
  - 등기된 부동산 : 20% → 15%
  - 미등기된 부동산 : 40% → 30%
- 재정경제부는 특별부가세 면제범위 확대 및 개인기부금 근로소득 전액공제는 경제난의 악화 및 세수의 심한 감소로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의 반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음

<사학진흥기금 확충>

○ 내 용

- 사학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저리의 용자 자금 확충(목표 : 2002년까지 기금 1조원 확보)

○ 추진실적 및 계획

- '98.10 현재 4,870억원 기확보(출연금 1,950억원, 용자금 2,250억원, 자체기금 670억원)
  - '99정부 예산안에서 500억원(용자금) 반영
- <대학의 자구노력 실적을 재정지원에 반영>

○ 내 용

- 학사구조 개혁, 예산의 효율적 사용등 사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자구노력 재정지원과 연계

○ 추진실적 및 계획

- '98년 대학자구노력 지원 사업(450억원), 공·사립대학 시설·설비확충사업(1,150억원)에 반영
  - '98.11월 중 각 대학에 예산 교부
- <사학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제 정착화 유도>

○ 내 용

- 대학의 외부 회계감사제 실시 적극 유도

○ 추진실적 및 계획

- 재정지원 지표에 반영, 적극적 실시 유도
  - \* '98. 공·사립 대학시설·설비확충사업(1,150억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관리 개선>

○ 내 용

-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

- 추진실적 및 계획
  - 서울시립대 박정수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연구중('98.6~12)
  -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개선 방안 수립('99.1~3) 및 추진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 경제난으로 인한 사학 용자 수요는 많으나 예산부족으로 국고지원의 확대 및 사학진흥기금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
- 사학에 대한 세제 지원 범위확대는 경제 불황에 따른 세수부족의 발생으로 조기 실현되기는 어려움

<대책>

- 사학진흥기금 확충계획 재조정
  - 향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재요청 검토
- (金貞淑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 서울대 개혁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교육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답 변)

- 서울대 발전계획은 서울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 이는 '98.10.12. 서울대 개혁에 관하여 교육부가 서울대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교수협의회 회장 명의의 서한에서도 드러난 바 있음.

(질 의)

○ 대학평가제도가 이원화되어 이중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있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교육부가 재정지원이라는 수단을 통해 대학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자율에 위배됨

(답 변)

- 대학에 대한 평가는 대교협에서 하는 평가인정제가 있고, 행·재정지원을 위한 행정심사가 있으며,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사회평가가 있음, 이는 목적과 기능이 모두 다름
- 교육부가 예산을 배정하기 위한 평가는 행정심사로서 '94년 이후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교육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등 지원하는 원칙이 확립되었음
- 예를 들어 자구노력 지원비의 경우, 이를 학생수나 교수수에 따라 나누어 줄 경우에는 나눠먹기

- 식이 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촉진될 수 있으며, 사업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음
- 따라서, 예산사업 목적에 따라 평가하되, 교육개혁을 하는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개혁을 촉진하고, 재정지원의 효율성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됨

**(朴範珍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교육재정 감축에 따른 교육채 발행 검토

(답 변)

- 지방교육재정의 감소
  - 감소사유
    - 교육세 대폭감소 : 6.82조원('98당초)→5.28조원('98최종) 당초 예산보다 1.54조원 23% 감소
    - 내국세 및 지방세 감소에 따른 교부금 및 전입금 감소
- 지방교육재정이 감축되어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임. 이러한 것을 예측하여 일선 시·도에 경직성경비를 최대한 절감, 기타 예산 20% 이상 절감한 실행예산편성 등을 촉구하였음
- 교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교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는 없을 것임
- 자체 재원이 거의 없는 시·도교육청 형편을 고려할 때 재정이 어렵다고 하여 쉽사리 기채를 하기도 어려움. 그러나 학교없는 지역의 학교시설 등 필히 투자되어야 할 사업 등에 대한 재원 확보는 기채를 해서라도 확보한다는 입장에서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
-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를 위해서 현재 교육재정 축소 원인인 되고 있는 교육세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세목을 단순화, 국세 일부 세목 양여 또는 법정교부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사회의 교육을 위하여 좀더 책임있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 부담, 학교급식 지원 등을 위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朴承國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97년도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중 교원 편의시설 200억원, '98년 810억원 책정 - 재정 과다 소요

－'97대비 '98단가가 과다한 사유는?

(답 변)

○우리 부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교육개혁과 제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개선과 교원편의 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 : '96~2000(5개년)

－사업규모

- 총소요 : 11조7,000억원('96.2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 5개년간 투자규모 : 매년 1조원씩 총 5조원 (교부금 : 3조5,000억원, 자부담 : 1조5,000억원)

－사업내용

- 노후시설 개축 및 책·결상의 교체
- 교실의 난방시설·화장실·급수시설 기타 부속시설의 개선
- 교무실, 교원휴게실 및 교원편의실의 확충
- 시설의 안전제고 등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5개년간 세부사업별 추진방향은

- －책결상 교체, 난방 및 급수시설개선은 사업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98까지 조기완성
- －교원편의시설확충, 개축(중축포함) 및 대수선 사업 등은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원편의실 확충사업은 학습자료 개발 등을 위한 학년별(초등), 학과별(중·고) 교사전담 연구실 확충 및 교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휴게실의 냉방설치등 쾌적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음

－총소요 : 16,943실('96.2 전수조사)

－'96~2000 : 7,913실 (5개년 추진사업 물량조정)

－소요액 : 매년 810억원 규모로 총4,088억원(5개년 총사업비 5조원의 8.2%)

○'96~'97 경우에는 해당학교의 사업 우선순위 및 학교별 증축여건(1실증축에 따른 부지여건)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학생감소에 따른 유휴교실 이용 및 기존의 교원편의시설을 보수·활용하였으며 '97년도 실적은 1,532실에 200억원임

○'98년 부터는 기존 교사시설을 이용할 유휴교실 등이 거의없어 교사건물 신·증축 및 개축의 경우에는 교원편의시설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사

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1실당 신축공사비 7,500만원, 1,096실에 810억원을 계획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해당학교별로 향후 유휴교실 발생여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가능한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있음

(질 의)

○명예퇴직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명예퇴직 수당 지급 등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명예퇴직자 증가원인

－올해초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명예퇴직요건 완화

- 종전 :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 10년이내인 자(약 55세이상)
- 개정 : 정년 잔여기간 1년이상, 20년이상 근속자는 모두 해당(약 45세이상)

－최근 정년단축 문제가 논의되면서 명예퇴직 기회가 줄어든다는 생각(정년이 단축되는 연한만큼 불리)

• '99.2월말 명예퇴직 신청자수는 10월현재 약 11,000여명으로 추정됨

\* '98. 명예퇴직 인원 : 5,147명(2월말 : 1,126명, 8월말 : 4,021명)

○대량 명예퇴직에 대한 대책

－많은 인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일시적 재정 부담은 있으나, 신규채용자는 인건비가 낮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재정부담이 완화됨(첨부 자료 참조)

○명예퇴직은 시·도교육청별로 예산범위내에서 신청인원을 가능한 한 수용하되, 재정상황과 교원충원문제를 충분히 감안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교원들의 기대이익을 보호하는 선에서 결정하려고 함

(다음 페이지에 계속)

교원 1인 명예퇴직시 재원 판단

(단위 : 천원)

구 분	소 요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현직근무	기존급여(A)	42,965	42,965	42,965	42,965	42,965
명퇴추진시 소 요 액	기 존 급 여	7,161				
	명 퇴 수 당	50,850				
	신 규 채 용	14,834	17,081	17,081	17,081	17,081
	소 계	72,845	17,081	17,081	17,081	17,081
차	액(A-B)	△29,880	25,884	25,884	25,884	25,884
누	계	△29,880	△3,996	21,888	47,772	73,656

- 주) ①기존교원은 57세 근가 2호봉 기준, 신규교원은 10호봉 기준임  
 ②1년 차의 경우 기존교원은 월분 보수 지급, 신규채용은 10개월분 보수  
 ③호봉승급에 따른 보수 인상 분은 제외

(질 의)

지방교육 예산의 경직성 경비와 사업성 경비의 심각한 불균형을 지적하고, 학교 시설·과밀학급 및 2부제 해소등에는 타 경비를 줄여서라도 우선 투자해서 완전해소할 용의가 없는지

(답 변)

- 지방교육예산의 75.4%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학교기본운영비로 이루어져 있음
  - 어떤 예산보다 인건비가 높은 것이 사실이나 교육에서의 인건비는 그 자체가 핵심사업비일 수도 있음.
  - 그러나 경직성 경비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구조조정 단행등 최대한 노력중임
- 과밀학급과 2부제 해소는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곧 학생 자연 감소, 부지 확보 불가, 인접에 학교 신설중인 경우 등도 있어 완전해소는 어려움
  - '98 2차 추경에서 우선 2000억원을 확보하여
  - 2부제 총 788학급 중 '98년 241 학급 해소
  - 51명이상 과밀학급 22,491 학급중 '98년 468학급 해소
- 지방교육재정의 감소로 교육기본시설인 학교신설도 중단해야 하는등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신도시등 학교없는 지역의 학급신설등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

(질 의)

○대학 국고지원현황이 해마다 들쭉날쭉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며,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답 변)

-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크게 일반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 해마다 사업별로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결정함
- 평가기준은 해당 대학, 교육부 관계부서 및 평가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친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그 동안의 사업성과를 중점 점검/평가하였음
- 그리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 대학교수, 수요자대표 및 경영전문진단가 등 각계각층의 역량있는 인사로 위원 구성
  - 모든 위원이 현장실사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특정위원의 영향력을 배제하려 하였으며,
  - 평가과정을 개방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코자 하였음
- 앞으로 올바른 평가풍토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임

(질 의)

○현행처럼 사립학교 국고보조를 하는 동시에 과도한 통제를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차제에 사립중학교는 공립화를 유도하고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 사립중학교 공립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영세한 소규모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97년에 사립학

교법을 개정하여 공익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공립 학교와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자율성 부여와 관련해서는
  - 고등학교는 초·중학교와 연계된 국민형성기관으로서 국가의 일정한 교육정책의 틀 속에서 운영되어야 함
  - 사학에 대한 지나친 규제에 대한 완화는 법개정작업을 진행 중임
  - 학교선택권과 관련해서 현재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평준화 지역의 경우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평준화 실시로 학교간 격차 해소,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도모, 국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었음
  - 사학중·고의 등록금 책정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대부분의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등록금 책정을 학교 자율에 의해 결정토록 하는 것은 교육수요자의 신뢰이익에 반함
  - 또한 사립학교에 대하여 국가에서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등록금 책정 규제등에 대한 보전차원이 아니라 지역간·학교간 평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적 공기로서의 교육적 책임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질 의)

○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체제를 장기간 지속시킬 것이 아니라 조속히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여 학내구성원이 자율해결토록 해야 하고, 각 법인이 요구한 임원 취·해임승인 신청은 조속히 승인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 변)

- '98.10 현재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는 광운대 등 9개교임
- 임시이사체제는 한시적 학교경영방법이므로 “면학분위기가 훼손되지 않고, 학교의 안정적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학내구성원 및 지역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정이사 체제로 전환시킬 계획임
- 각 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승인하고 있음

(질 의)

○ 방과후 교육활동비 공·사립 구분없이 지원

필요

(답 변)

- 민주적이고 학교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방과후 교육활동의 중요사항인 교과 개설, 강사 채용, 수강료 책정, 학생 부담금 등의 결정과 예산집행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입니다.
-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바람직하므로 이를 유도하기 위해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유보하고 있으나, 추후에라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면 지원할 것입니다.

(盧武鉉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 교수재임용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언제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지?
  - 누가 재임용기준을 선정하는 것인지?
  - 재임용평정심사요소 중 주관적 평정요소가 많아서 남용여지가 큰데, 주관적 평정요소를 줄이고 객관화하는 등 기간제임용제의 남용을 방지할 교육부 방안은?
  - 부당한 재임용 탈락의 경우, 정부단위의 재심위원회를 통해 재임용남용을 통제할 계획은 없는지?

(답 변)

- 기간제임용제는 교수의 신분보장에서 초래될 수 있는 안일무사함 등의 폐단 방지/교수의 업적 및 자질 향상을 위해 '76년도 이래 실시되고 있는 임용제도임
  - 일부 대학에서 정계나 문책의 대체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발생
- 임용기준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
  - 향후 자의적·주관적 평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교수업적평가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기간제 임용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음
- 교육부는 교수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의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기간제임용제와 관련된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 교수업적평가제 등 객관적·합리적인 임용기

- 준과 절차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 임용 기준 및 절차를 위배하는 경우 임용의 하자로 보아 대교협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 등이 포함된 별도의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이 가능하도록 하며,
- 임용기준 및 절차의 위반이 있을 경우,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임

(질 의)

○ 서울대는 현재도 효과성이 떨어지며, 자체 개혁안도 미흡하게 여겨지는데 교육부의 대책은?

(답 변)

- 무시협전형, 학사과정 정원 감축, 대학원 문호 개방 등
    - 긍정적으로 평가함.
    - 학사과정 정원 감축시기의 단축, 대학원 문호 개방비율의 명시, 무시협전형의 전면 실시 등을 조건으로 '99년에 한하여 대학원전용 기숙사 시설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
  - 전문대학원, 학부대학, 일반 대학원의 분리 등
    - 의·법학 전문대학원제도 등 전국적 기간학제 관련 사항은
    - '99년 상반기까지 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외 대학간 호환성 확보, 법령개정, 범정부적 추진 등의 필요에 따라 연구·공론화
      -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교육부 공동으로 지방대학 및 사립대학 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추진, 결론 도출
  - 장기적으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 재정 투자계획(2000~2005) 수립 및 특별법 제정 추진
- (李相賢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 질서교육, 예절교육 등 인성교육이 중요시 됨에 따라
 

-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의 인성교육 내용이 추상적, 나열식인데 문제점은 없는지?
-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을 재구성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할 의향은?

(답 변)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기본생활 습관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교육과정의 전 영역에 걸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절, 준법, 질서 등의 교육내용을 의도적, 계획적으로 반영하였음

- 이의 실현을 위해 실천중심의 직접적인 체험 교육과 토론학습으로 교육 내용과 방법을 바꾸었음
- 교육부에는 교육과정 정책심의관실에 교육과정을 전문으로 다루는 경험 많은 교과별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고,
- 교육과정평가원 등의 전문연구기관에서도 국가의 수탁을 받아 교육과정 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앞으로 인성교육이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질 의)

○ 유아교육과 초등학교의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기본설계와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답 변)

- 우리 부는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을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으로 기르는데 목표를 두고
- 지식보다 '사람됨'을 중시하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기본생활습관, 생활예절, 공공질서, 물자절약 지도는
  - 정규 교육과정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지도하고
  - 다양한 체험학습을 강화하여
  - 구체적 행동규범을 습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94년부터 기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유아용 교육활동 자료와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보급하고 있음.
-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가르친 기본생활습관이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고 있음.

**(薛 勳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 체육특기자는 동일계열이 아닌 학과로도 진학가능해서 여러 비리가 있는데 그것을 고칠 의향은 없는지?  
 ○ 체육특기자 선발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입학후 체육특기자 관리 방안은?

(답 변)

- 2000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의 경우도 동일계열

모집단위에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할 예정(기 예 고 : '95.12.19)

- '99학년도에도 대학별로 특기자를 수용하기 위한 경기지도과, 체육특기부 등을 신설 또는 관련학과 증원 허용

- 단,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정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총량 규제되므로 기존 다른 정원을 자율조정하여 학과 신설 등 추진 유도

○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부정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대학입학 관계자와 감독·코치회의를 통하여 부정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조만간 체육계의 의견을 조율을 거쳐 투명한 특기자 선발제도를 만들어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 의)

○ 불법과외의 예방을 위하여

- 학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 학원과 담당공무원의 유착을 막기 위해 순환보직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 불법과외고발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답 변)

○ 학원 지도·단속문제에 대하여는

- 지역교육청당 학원 지도·단속 공무원이 3~4명에 불과하여 사실상 효과적인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불법고액과외 개연성이 있는 지역소재 학원에 대한 지속적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비리 학원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고 있으며

- 또한 법령상 과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학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 불법운영학원에 대하여는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원법령을 개정 추진중에 있음

○ 학원 담당공무원의 순환보직문제에 대하여는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1개 지역교육청의 학원 담당공무원을 2년 이내에 순환보직시키고 있으며

- '98.8~9월에는 학원담당공무원 전원을 인사교체 한 바 있음

○ 그리고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불법과외고발센터 운영문제에 대하여는

- 앞으로 에듀넷 또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반상회 회보, 지방지 신문광고 등을 통한 적극 홍보와 학부모 단체 등 시민 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불법과외고발센터 운영이 활성화

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金日柱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 '95학년도부터 금년까지 9개의 의대를 신설인 가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협의사항을 무시하는 등 정치적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 자체 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원의 특별감사 용의는

- 부속병원이 없는 모든 의과대학의 현황

- 아울러 인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대학에 대해 인가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의향은?

(답 변)

○ '95~'96 학년도 의대 신설은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우리 부의 정원 배정에 차이가 없음.

○ '97~'98학년도 4개 의과대학 신설에 있어서는 의대 신설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아 조사해 보니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대를 신설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판단됨.

○ 즉, 의료취약지역으로 제시된 전남, 경기, 경남에 신설할 수도 있었으나 대전, 수원, 포천, 강화에 신설해 주었고,

○ 종합병원 운영자에게 의대 신설을 인가하면서 의료 취약지역에 500병상 이상 병원설치를 조건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앞으로는 의대 신설보다는 필요한 경우 우수 의대에 학생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하겠습니다.

○ 현재 부속병원이 설치되지 못한 대학은 국립인 강원대와 제주대가 있고, 사립대학은 관동대임.

※ '97~'98 설립 4개 의과대학은 이미 부속병원은 있고, 인가 조건은 의료취약 지역에 5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설치하는 것임.

○ 국립대학은 우리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병원 신설보다는 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실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 사립대학은 인가조건 이행을 촉구하고 계획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모든 행·재정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

(鄭東泳·李源馥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 각종 유해 매체로부터 청소년의 보호 대책

및 폭력 예방을 위한 방송매체의 활용 문제는?

(답 변)

- 유해 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매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 폭력예방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영을 교육방송원에 의뢰하겠음
-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심의, 발표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목록'을 일선 학교에 배포하여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음
- 방송에서의 비속어, 폭력의 사용을 지양하고, 지나친 선정적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주도록 방송심의위원회에 협조를 의뢰하겠음

**(鄭東泳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 18~24세의 청소년 실업자 대책 일환으로서 영국의 Young New Deal 정책에서 사용하였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답 변)

- IMF 사태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도산여파에 따라 대학진학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 실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98년8월 현재 15~19세 실업률 19.0%('97.8월 7.2%), 20~29세 실업률 11.7%('97.8월 4.7%)
  - ※ 출처 : 경제활동인구 월보 '98.8월호(통계청)
-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현재 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추진중에 있음
- 우리 부에서도 앞으로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인력과 시설을 이용해 청소년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운영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음

(질 의)

- 특수학교 신설시 지역 주민의 반발 등으로 개교가 늦어지고 있는데 개교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등
- 교육부가 특수교육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 요망

(답 변)

- '98현재 특수학교 신설 추진 : 11개교('99~2003년 개교 목표)
  - 지역주민 등의 반대로 설립지연 되었다가 현재 추진중 : 4개교(서울 : 광진, 정민, 지애, 부

산 : 혜송)

- 당초부터 정상 추진 : 4개교(서울 : 정혜, 정민, 우진, 경기 : 창인)
- 설립보유 : 3개교(설립부지 물색중)(경기 : 경은, 전남 : 화순 보성지역, 대구 : 청도대명)
- 특수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설득 및 홍보를 강화하고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 2002년까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

(질 의)

- IMF 경기침체를 교원확보의 전기로 삼는 한편, 교원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한 우수교원 확보 대책은?

(답 변)

- 먼저 이미 '91년에 제정된 “교원의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 그러나 교육재정 감소, 정부의 공무원정원 동결 방침 등에 의하여 필요한 만큼의 교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원의 확대에 노력하겠음(현재 행자부와 900명 증원 협의중)
- 동시에 능력과 업무량에 부합되는 보수체계를 정착시켜 교원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 교원의 잠무경감 교사의 연구실 및 휴게실의 확충, 학급당 인원감축, 교사 수업연구용 PC 보급 등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겠음

**(李源馥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 고대, 한양대, 외대 등의 분교중 한양대의 경우 입학 정원에 비해 졸업생이 22%에 불과하고 평균 50~60% 수준임. 이러한 지방분교 정책이 온당한지? 그 당시 의사결정담당 장·차관 및 국장의 명단은? 지방분교 부실화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와 동 분교들에 대한 지방국립대학에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교육부의 견해는?

(답 변)

- 지방 사립대학분교 졸업생이 입학정원에 비해 졸업생이 50~60% 수준이므로 학생수를 채우지



못하는 분야는 대학 자체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유도할 예정임

※앞으로 분교설립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음

○동 분교에 대한 지방 국립대학 통합 용의는 없는지의 건의말씀에 대하여는 사립대학 자율운영 원칙으로 볼 때,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해당 사립대학별로 경영합리화를 추진토록 유도할 예정임

지방분교설립 관련 업무 관리기관 조서

학술연구지원국 대학지원과

소속 및직위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관
교육부 장관		박찬현	77.12.20~79.12.13
"		김옥길	79.12.14~80. 5.21
"		이규호	80. 5.22~83.10.14
교육부 차관		장인숙	78. 2.15~80. 1.20
"		김형기	80. 1.21~80. 5.26
"		이상규	80. 5.27~80. 7. 9
"		김판영	80. 7.15~81. 4.12
고등교육국장	이사관	이대순	74.12.30~78. 3.14
대학교육국장	"	박일재	78. 3.15~80. 5.27
"	"	안종태	80. 6.20~80. 7. 9
"	"	정태수	80. 5.27~80. 6.20
"	"	김중무	80. 8. 5~81. 2. 4

(질 의)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차원에 볼 때, 그 동안 산·학간 협의를 통한 인력수급 정책이 전무해 왔는데 향후 산·학간의 연계 방안은 있는가?

○특히, 교육내용, 학과 신·증설 및 정원조정에 있어 산업체 현장 수요가 반영되지 못해 왔는데 앞으로 직업체제 및 산업체 현장의 요구를 교육계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 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처럼 인력수요와 공급 정책이 중앙정부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연계해 오지 못하여 온 것이 사실임

○향후 교육부는 중앙행정차원에서 산업계의 인력 수요가 반영된 교육정책 추진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및 중소기업청 등이 공동참여 하여 인력수요와 공급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5개년 기본계획을 현재 착수 추진중임

- 동 기본계획에 산업체 현장의 요구 최대한 반영

영토록 노력

○대학/전문대학의 산업체 현장수요를 더욱 반영하기 위하여

- 산업체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확대

- 학과 신·증설 및 정원조정시 특성화 분야 및 취업을 반영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음

(질 의)

○공고, 상고 등 실업계고교생들의 계열별 대학 진학 기회 확대의 필요성과 현행 고교 체제의 일반·실업의 2분법적 구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가?

(답 변)

○실업계고교의 현황과 문제점

- 실업계고교는 전체 고등학생 중 36%, 학교수는 40.8% 차지

- 진학을 증가 추세('96~21.9%, '97~29.1%, '98~35.6%)

- 산업 구조 고도화 및 고등교육 보편화에 따른 진학육구 증대

○실업계고교 진학기회 확대 방안

- 실업계고교와 전문대 또는 산업대학간의 연계 교육을 통한 우선 선발 기회 부여

• 16개 시범 전문대 운영

• 11개 시범고교 운영

- 동일계 진학 특별전형 확대

• 전문대 특별전형 : 주간 50%, 야간 60%('99, 132,230명)

• 대학 특별전형 : '98년 25개 대학 1,890명 → '99년 56개 대학 3,780명

○실업계고교 육성 방안

- 현행 실업계고교의 80년대 모형인 단순 기능인 양성의 중국교육 체제 지양

-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기초 직업교육 중심의 실업계고교 체제로 개편 방안 모색

(질 의)

○지방소재 국립대학이 시도별 2~3개로 분산되어 있는데 대학구조조정을 철저히 기해 달라는 당부말씀과 아울러 경기도에 국립학교 신설용의는 있는지? 인천 사립대학을 국립대학으로 승격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 변)

○지방소재 국립대학중 시·도별로 2~3개 집중된 지역에 대하여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통·

- 폐합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경기도 국립대학 신설말씀을 하셨는데, 경기 안성에 국립안성산업대학교가 있음
  - 인천시립대를 국립대로 승격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정부재정형편상(년간 세수결합 5~6조원 규모) 어려운 실정임

(질 의)

○대학학과 신·증설시 현장(대학)에 맡겨서는 안되고, 또한 시장의 왜곡현상을 바로 잡아야 하고, 종합적인 인력수급계획 등을 수립하여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답 변)

- 정부가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수급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것이 외국의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음
- 따라서 사립대학은 사회수요에 따라 자율조정토록 대학에 정원조정권을 일임하고
- 국립대학은 국가발전 전략분야 및 기초학문분야 등 사립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책임 육성하고 있음
- 금년에 과학기술인력 장기 수급전망 등이 게재된 대학정원 자율조정 안내 자료집을 수집하여 각 대학에 배포하여 대학정원 관리업무에 참고토록 한 바 있으며
- 또한 『고등교육 분야별 인력수급 추정 및 추정모형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임
- 앞으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과 인력수급을 더욱 긴밀히 협의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수급을 맞출 수 있도록 학과신설·증원을 유도 조정해 나가겠음

(金顯焜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 영어전담교사는 줄고 학생은 늘고 있어 교육현장이 황폐화되고 있음.
- 영어교육과정개발비가 '96년도에는 5,500만원이었는데 '97, '98년도에는 한 건도 없음
- 이와 같이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여건이 불리한데도 영어교육을 계속 실시할 것인가?
- 초등영어 실시로 유치원부터 영어과외가 성행하여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 영어 전담교사 현황
  - '97년도에는 전담교사가 376명이었으나 '98년도에는 2,122명으로 증가하였음
- 초등영어 투자 현황
  - 초등영어 교육과정 개발비(5,500만원)는 교육과정은 3~6학년을 동시에 개발하였으므로 추가 예산 소요가 없음
- 영어는 세계어가 되어있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고자 함
-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하여
  - 유치원에서는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무분별한 학부모가 초등영어교육에 영향을 받아 학원 또는 학습지 등을 통해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우리 부에서는 유치원에서 무분별하게 실시하는 외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학부모에게 꾸준히 계도하고 있음.

(질 의)

○학교자치기구인 학운위 위원에 의하여 교육위원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 학운위 위원에 의하여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주민대표성 부족 및 학운위의 정치세력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98.8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 조창현 한양대 지방자치행정대학원장)에 연구를 의뢰하여 주민직선등 다양한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 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할 용의는?

(답 변)

- 학교운영위원회에 성격에 대하여 자문기구, 심의기구, 의결기구 등 입장에 따라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자문기구나 의결기구는 학운위제도 도입 취지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 학교교육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학교장에게 맡겨야 한다고 볼 때, 현행과 같이 심의기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제도의 정착과 구성원들의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

님의 지적을 참고하여 학운위가 자문·심의·의결 할 사항 등을 구분하여 방향에서 제도보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질 의)

○교직안정과 교원 사기양양 대책

(답 변)

-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미 '91년에 지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과 국무총리 지시사항인 “교원예우에관한지침”에 따라 교원에 대한 예우, 교원보수의 우대, 교원의 신분 보장 등의 입법취지 구현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교원의 정원확대는 정부의 공무원정원 동결방침에 의하여 필요한 만큼의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원의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능력과 업무량에 부합되는 보수체계를 정착시켜 교원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교원의 직무경감 교사의 연구실 및 휴게실의 확충, 학급당 인원감축, 교사 수업연구용 PC 보급 등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威鍾漢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교원의 양성과 연수 종합대책

(답 변)

- 교원양성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 '98년도부터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대학의 교사교육 자율개선을 유도
  -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며,
- 또한 교직유인체제 강화를 위해
  - 능력과 업무량에 부합되는 보수체제 확립
  - 아울러 교원의 직무경감, 교사의 연구실 및 휴게실의 확충, 학급당 인원감축 등 근무여건 개선
- 교원의 연수체제는 교육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교원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 연수교육과정의 합리성 제고
  - 엄정한 연수평가체제 확립
  - 연수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 제고와 특성발휘
  - 연수기회의 확대 등을 추진